제417회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기 금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제1장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1. 총괄 ····· 1

2. 통합 재무제표 ····· 5

3. 성과보고서 ····· 11

제2장 일반회계

Ⅰ. 개 요 ····· 18

1. 세입결산 ····· 18

2. 세출결산 ····· 20

Ⅱ. 검토의견 ····· 41

1. 핀테크 지원 사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출시 실적 저조 등 ··· 41

2.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주의 필요 ··· 50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과다 편성 ····· 55

4.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매칭방식 도입에 따른 문제 ····· 61

5.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책 수요와 소요 재원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 ····· 78

6.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목적에 충실한 정책모기지 운영 및
상품요건 변경 지양 필요 ····· 86

7.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 불용 과다 등 ····· 93

8. 정책연구개발: 수의계약 과다 및 수행기관 편중 ····· 104

9. 금융감독원 지도·감독 강화 ····· 108

제3장 공적자금상환기금

Ⅰ. 개 요 ····· 123

1. 수입·지출 결산 ····· 123

2. 재무제표 ····· 127

Ⅱ. 검토의견 ····· 130

1.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 예수금: 기금 청산 일정에 맞춘 안정적인 전입금 필요 등 ····· 130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 139

1. 수입·지출 결산 ····· 139

2. 재무제표 ····· 143

Ⅱ. 검토의견 ····· 146

1. 총괄: 기금 건전성 관리방안 마련 필요 ····· 146

2. 기타경상이전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계획안의 연례적 과다추계에 따른 징수실적 부진 시정 필요 ····· 155

3. 대위변제금: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 159

4. 인건비: 비효율적 인력구조 개선 필요 ····· 163

5. 기금관리비: 상용임금 계획액 과다편성에 따른 집행부진 ····· 167

제5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Ⅰ. 개 요 ····· 171

1. 수입·지출 결산 ····· 171

2. 재무제표 ····· 173

Ⅱ. 검토의견 ····· 176

1. 저축장려금: 일반회계 전환 등에 대한 조속한 결정 필요 ····· 176

제6장 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 183

1. 수입·지출 결산 ····· 183

2. 재무제표 ····· 186

3.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 ····· 189

Ⅱ. 검토의견 ····· 192

1. 기타경상이전수입: 팩토링 매출채권의 자금 회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연례적 과다계상 개선 필요 ····· 192

2. 이차보전지원: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실적 부진에 따른 과도한 사업개편 부적절 및 사후관리 필요 ····· 197

3. 경영지도: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의 사업수요 저조 ····· 209

4. 일반회계전입금: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실적 저조 ····· 214

제7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Ⅰ. 개 요 ····· 219

1. 수입·지출 결산 ····· 219

2. 재무제표 ····· 222

Ⅱ. 검토의견 ····· 225

1. 기타경상이전수입: 임차보증금 환입금 등
수입내역 적시 반영 필요 ····· 225

제8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 232

1. 수입·지출 결산 ····· 232

2. 재무제표 ····· 237

Ⅱ. 검토의견 ····· 240

1. 대위변제(주신보·주연보):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 강구 필요 ····· 240

제1장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1. 총괄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와 6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구성됨.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규모(세출예산현액 순계기준)는 2022회계연도 재정규모 30조 9,236억원 대비 4.2% 증가한 32조 2,172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5,982억 9,100만원, 기금 30조 6,190억 200만원임.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계기준으로 전년대비 54.2% 감소한 1조 9,021억 5,100만원 규모이고,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3,038억 6,000만원을 제외한 순계기준으로는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운용실적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30조 6,190억 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A)	2023년도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 일반회계	4,151,816	1,902,151	△2,249,665	△54.2
- 기금회계전출	2,600,000	303,860	△2,296,140	△88.3
- 순계예산(a)	1,551,816	1,598,291	46,475	3.0
○ 6개 기금(b)	29,371,784	30,619,002	1,247,218	4.2
- 공적자금상환기금	7,107,748	8,883,298	1,775,550	25.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3,260	54,198	938	1.8
- 신용보증기금	12,429,405	10,465,063	△1,964,342	△15.8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759,174	1,486,546	△272,628	△15.5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676,515	4,825,263	1,148,748	31.2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345,682	4,904,634	558,952	12.9
□ 총 재정규모(a+b)	30,923,600	32,217,293	1,293,693	4.2

주) 각 회계의 금액은 세출예산현액(기금은 운용실적)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총 수입 및 지출 실적은 연간 수입·지출계획 32조 492억 4,900만원의 95.5% 수준인 30조 6,190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총 수입 및 지출실적 29조 3,717억 8,500만원 대비 4.2% 증가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A)	2023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합 계	**29,371,785**	**34,053,249**	**32,049,249**	**30,619,002**	**95.5**	**4.2**
공적자금상환기금	7,107,748	11,019,312	9,015,312	8,883,298	98.5	25.0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53,260	54,153	54,153	54,198	100.1	1.8
신용보증기금	12,429,405	12,328,730	12,328,730	10,465,063	84.9	△15.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759,174	2,295,675	2,295,675	1,486,546	64.8	△15.5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3,676,515	4,892,360	4,892,360	4,825,263	98.6	31.2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4,345,682	3,463,019	3,463,019	4,904,634	141.6	12.9

(자료: 금융위원회)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결과 회계·기금 간 재원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3,039억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에서 1,107억원을 전입하였고,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70억원을 출연하였음.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반회계에서 837억원을 전입하였음.

□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 2조 6,000억원을 전입 받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기금예수금 4조 1,242억원을 받았으며, 예수금 원금 8조 3,456억원과 예수이자 5,377억원을 상환하였음. 신용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2,500억원의 예탁원금과 13억원의 예탁이자를 전입 받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5,300억원의 예탁원금과 30억원의 예탁이자를 전입 받았음.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결산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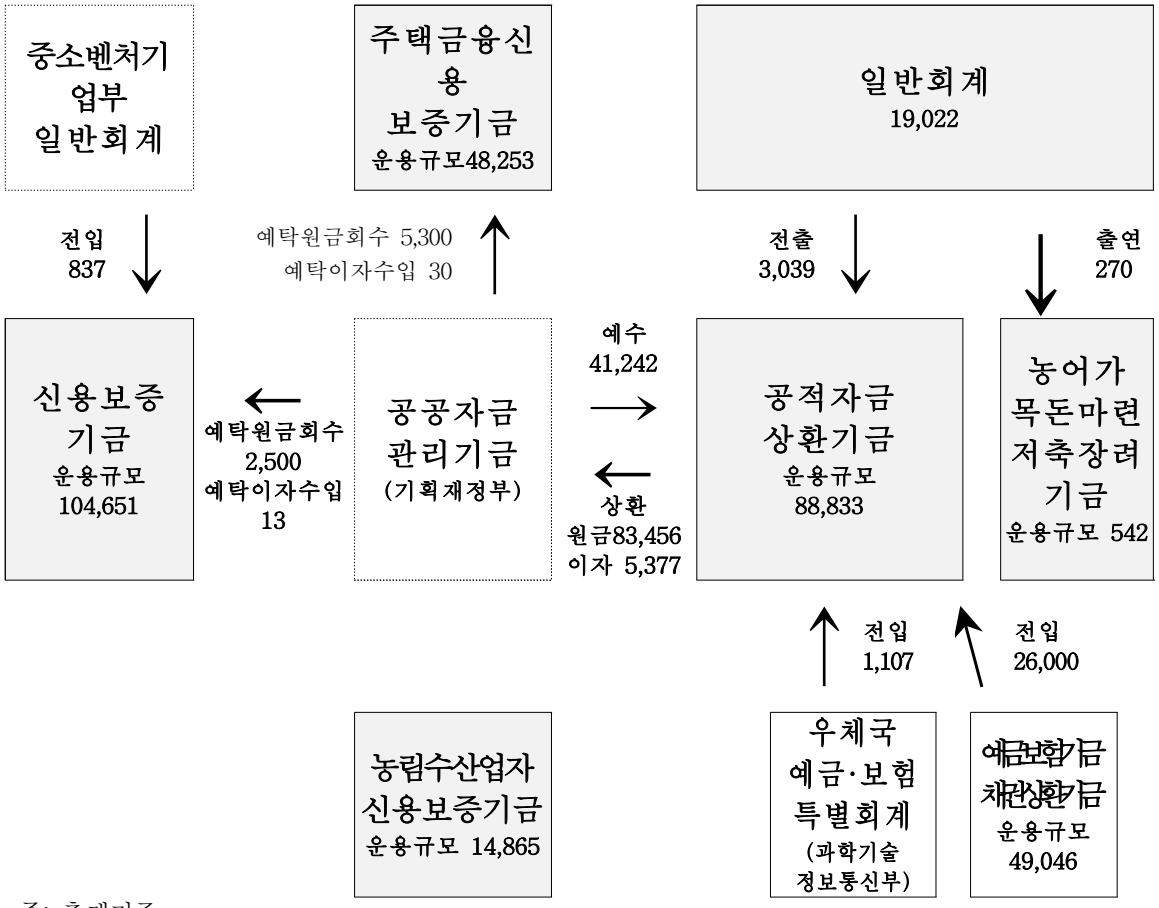

주: 총계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 통합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1)]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자산은 33조 4,472억 2,900만원이고, 부채는 33조 9,451억 100만원이며, 순자산은 △4,978억 7,100만원임.

<금융위원회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26,118,385	21,822,610	4,295,775	19.7
	투자자산	5,977,465	7,398,359	△1,420,894	△19.2
	일반유형자산	548,158	551,198	△3,040	△0.6
	무형자산	22,123	35,356	△13,233	△37.4
	기타비유동자산	781,098	662,946	118,152	17.8
	자산계	**33,447,229**	**30,470,468**	**2,976,761**	**9.8**
부 채	유동부채	8,459,661	9,259,992	△800,331	△8.6
	장기차입부채	20,420,276	23,887,410	△3,467,134	△14.5
	장기충당부채	4,917,385	4,567,453	349,932	7.7
	기타비유동부채	147,779	186,293	△38,514	△20.7
	부채계	**33,945,101**	**37,901,148**	**△3,956,047**	**△10.4**
순자산	기본순자산	76,948,724	76,948,724	-	-
	적립금 및 잉여금	△75,478,923	△81,296,291	5,817,368	7.2
	순자산조정	△1,967,672	△3,083,112	1,115,439	36.2
	순자산계	**△497,871**	**△7,430,680**	**6,932,809**	**93.3**

(자료: 금융위원회)

1)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 2023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 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2조 9,767억 6,1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단기투자증권의 증가 등으로 유동자산이 전기 대비 4조 2,957억 7,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3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 부채는 전년도 말 대비 3조 9,560억 4,7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장기예수금의 유동성대체 및 상환 등으로 장기차입부채가 전기 대비 3조 4,671억 3,4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3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 순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6조 9,328억 9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적립금 및 잉여금이 5조 8,173억 6,8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 재정운영표[2)]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운영결과는 △2조 8,498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재정운영결과 △3조 7,189억 9,300만원 대비 8,691억 8,900만원 증가함.

<금융위원회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프로그램 순원가	2,418,406	528,988	1,889,418	357.2
1. 프로그램 총원가	4,346,823	2,625,350	1,721,473	65.6
2. 프로그램 수익	1,928,417	2,096,361	△167,944	△8.0
Ⅱ. 관리운영비	225,460	204,619	20,841	10.2
Ⅲ. 비배분비용	586,842	812,425	△225,583	△27.8
Ⅳ. 비배분수익	743,926	362,603	381,323	105.2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2,486,782	1,183,429	1,303,353	110.1
Ⅵ. 비교환수익 등	5,336,586	4,902,422	434,164	8.9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2,849,804**	**△3,718,993**	**869,189**	**23.4**

(자료: 금융위원회)

□ 프로그램순원가는 금융소비자보호순원가 6,602억 1,700만원, 신용보증금융지원 순원가 6,271억 5,700만원 증가 등으로 전기 대비 1조 8,894억 1,800만원 증가함.

2) 재정운영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며,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냄.

□ 관리운영비[3]는 인건비가 3억 4,100만원 감소하였으나 경비가 211억 8,200만원 증가하여 전기 대비 208억 4,100만원 증가함.

□ 비배분비용[4]은 자산처분손실 등이 감소하여 전기 대비 2,255억 8,300만원 감소함.

□ 비배분수익[5]은 금융상품이자수익 등이 증가하여 전기 대비 3,813억 2,300만원 증가함.

□ 비교환수익[6] 등은 부담금수익이 3,320억 4,400만원 증가하고 정부외 기부금 등 기타재원조달및이전이 1,021억 2,000만원 증가하여 전기 대비 4,341억 6,400만원 증가함.

3)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관련 비용
4) 프로그램과 직접적 대응이 어려운 비용
5) 재화 및 용역 등 반대급부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중 프로그램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수익
6)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

3) 순자산변동표[7)]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기말순자산은 △4,978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기말순자산 △7조 4,306억 8,000만원 대비 6조 9,328억 900만원 증가함.

<금융위원회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기초순자산	△7,430,680	△16,257,222	8,826,542	54.3
Ⅱ. 재정운영결과	△2,849,804	△3,718,993	869,189	23.4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199,525	2,590,749	△1,391,224	△53.7
Ⅳ. 조정항목	2,883,479	2,516,800	366,679	14.6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497,871**	**△7,430,680**	**6,932,809**	**93.3**

(자료: 금융위원회)

□ 기초순자산은 △7조 4,306억 8,000만원으로 전기 대비 8조 8,265억 4,200만원 증가하였는데 주로 직전연도 재정운영결과와 재원의조달및이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순자산의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2조 8,498억 400만원으로 전기 재정운영결과 △3조 7,189억 9,300만원 대비 8,691억 8,900만원 증가함.

□ 순자산의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조 1,995억 2,5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조 3,912억 2,400만원 감소함.

7)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국가의 재정건전성 분석과 현황파악을 위해 순자산의 크기와 변동내역을 표시함.

○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은 2조 237억 600만원으로 국고수입의 감소 등으로 전기 대비 2조 2,425억 9,400만원 감소함.

○ 차감항목인 재원의 이전은 8,241억 8,100만원으로 출자금의 감소로 전기 대비 8,513억 7,000만원 감소함.

□ 순자산의 증감을 발생시키는 거래 중 비교환수익 또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하는 조정항목은 2조 8,834억 7,900만원으로 투자증권평가이익 등의 증가로 전기 대비 3,666억 7,900만원 증가함.

3. 성과보고서

□ 금융위원회는 “① 경제활력 뒷받침 ② 금융산업 혁신 ③ 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④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4대 임무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3년도 정책비전을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4대 전략목표를 설정·추진하였음.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도>

임무

① 경제활력 뒷받침 ② 금융산업혁신
③ 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④ 공정성·투명성 강화

비전 :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전략목표 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목표 Ⅰ-1**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
- **프로그램목표 Ⅰ-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프로그램목표 Ⅰ-3**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략목표 Ⅱ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목표 Ⅱ-1**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 **프로그램목표 Ⅱ-2**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 **프로그램목표 Ⅱ-3**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하여 주택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한다.
- **프로그램목표 Ⅱ-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지원한다.
- **프로그램목표 Ⅱ-5**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Ⅲ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 **프로그램목표 Ⅲ-1**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 **프로그램목표 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 **프로그램목표 Ⅲ-3**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략목표 Ⅳ
튼튼한 금융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 **프로그램목표 Ⅳ-1**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 금융위원회의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성과달성도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도는 총 32개 지표 중 26개를 달성하여 81.3%를 기록하였음.

<금융위원회 성과 달성도 현황>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도			
	성과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8	1	4	3
Ⅱ.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13	3	8	2
Ⅲ.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8	2	5	1
Ⅳ. 튼튼한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3	1	2	-
합 계	32	7	19	6

주: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 이상~130% 미만, 미달성 100% 미만

(자료: 금융위원회)

□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는 'Ⅰ-(1)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의 '넷제로 프로그램 자금 공급 규모', 'Ⅰ-(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의 '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보증 지원'과 '불건전보증비율', 'Ⅱ-(1)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의 '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 실적', 'Ⅱ-(3)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하여 주택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한다'의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안심전환대출 유동화실적 및 MBB발행 포함)', 'Ⅲ-(3)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의 '금융중심지정책 추진실적'임.

<프로그램목표별 성과 미달성 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Ⅰ-(1)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	넷제로 프로그램 자금공급 규모(억원)	넷제로 프로그램 자금공급 규모	1,200	1,100	91.7
Ⅰ-(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보증 지원(건)	귀농어창업 순신규보증 지원 건수	1,438	1,350	93.9
	불건전보증비율(%)	불건전보증잔액 / 보증잔액 * 100	0.39	0.60	46.2
Ⅱ-(1)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 실적(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건(건)	3,865	3,236	83.7
Ⅱ-(3)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하여 주택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한다.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조원) *안심전환대출 유동화실적 및 MBB발행 포함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 '23년부터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및 MBB 발행 포함 (~'22년까지는 제외)	46.0	37.0	80.4
Ⅲ-(3)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중심지정책 추진실적 (점수)	금융중심지추진 위원회 개최 횟수(20점),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누적 교육생 수(40점), 국내외 금융회사 진출입 건수(40점)	100	81	81.0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결산실적은 예산 대비 84.4%인 5조 7,411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 '산업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사업이 예산 3조 7,191억원 대비 72.3%인 2조 6,870억원에 그치는 등의 사유에 기인하고 있음.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3년 예산	'23년 결산	집행률
총 계					68,030	57,411	84.4
전략목표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48,319	37,935	78.5
프로그램목표Ⅰ- 1: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					6,604	6,604	100.0
Ⅰ-1-재정(1)	산업은행출자	일반회계	2400-2414		3,000	3,000	100.0
Ⅰ-1-재정(2)	혁신기업공시지원	일반회계	2400-2431		4	4	100.0
Ⅰ-1-재정(3)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일반회계	2400-2432		2,800	2,800	100.0
Ⅰ-1-재정(4)	녹색금융	기후대응기금	6200-6232	타부처소관	400	400	100.0
Ⅰ-1-재정(5)	녹색금융	기후대응기금	6200-6232	타부처소관	400	400	100.0
프로그램목표Ⅰ-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4,365	4,301	98.6
Ⅰ-2-재정(1)	농어민금융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400-2432		4,365	4,301	98.6

(단위: 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3년 예산	'23년 결산	집행률
프로그램목표Ⅰ- 3: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7,351	27,030	72.4
Ⅰ-3-재정(1)	산업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2400-2431		37,191	26,870	72.3
Ⅰ-3-정보화(1)	신보IT운영	신용보증기금	2400-2434		160	160	99.7
전략목표Ⅱ: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19,118**	**18,900**	**98.9**
프로그램목표Ⅱ- 1: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7,570	7,570	100.0
Ⅱ-1-재정(1)	금융소비자보호	일반회계	1800-1831		7,561	7,561	100.0
Ⅱ-1-재정(2)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일반회계	1800-1833		9	9	100.0
프로그램목표Ⅱ- 2: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541	541	100.0
Ⅱ-2-재정(1)	저축장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600-1631	조세지출병행	541	541	100.0
프로그램목표Ⅱ- 3: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하여 주택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한다.					1,668	1,668	100.0
Ⅱ-3-재정(1)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	일반회계	2600-2632		1,668	1,668	100.0
프로그램목표Ⅱ- 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지원한다.					7,213	6,996	97.0
Ⅱ-4-재정(1)	주신보운영(주신보계정)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600-2631		6,511	6,396	98.2
Ⅱ-4-재정(2)	주연보운영(주연보계정)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600-2631	조세지출병행	642	540	84.1

(단위: 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3년 예산	'23년 결산	집행률
Ⅱ-4-정보화(1)	주신보IT운영(주신보계정)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600-2632		41	41	99.3
Ⅱ-4-정보화(2)	주연보IT운영(주연보계정)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600-2632		19	19	99.2
프로그램목표Ⅱ- 5: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125	2,125	100.0
Ⅱ-5-재정(1)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복권기금	6300-6346	타부처소관	2,125	2,125	100.0
전략목표Ⅲ: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245**	**243**	**99.3**
프로그램목표Ⅲ- 1: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140	138	99.1
Ⅲ-1-재정(1)	핀테크 지원 사업	일반회계	1100-1134		140	138	99.1
프로그램목표Ⅲ- 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77	76	99.7
Ⅲ-2-재정(1)	자금세탁방지추진	일반회계	1300-1331		30	30	99.2
Ⅲ-2-정보화(1)	FIU전산망구축운영	일반회계	1300-1332		46	46	100.0
프로그램목표Ⅲ- 3: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9	28	99.0
Ⅲ-3-재정(1)	금융관련국제협력	일반회계	1400-1431		29	28	99.0
전략목표Ⅳ: 튼튼한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348**	**333**	**95.6**
프로그램목표Ⅳ- 1: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348	332	95.6
Ⅳ-1-재정(1)	금융행정지원	일반회계	7100-7135		305	297	97.2
Ⅳ-1-정보화(1)	행정정보화	일반회계	7100-7132		43	36	84.1

(자료: 금융위원회)

제2장 일반회계

Ⅰ. 개 요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3억 2,500만원이며, 1,489억 4,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2.0%인 773억 8,100만원(예산대비 107.0%)을 수납하고, 715억 6,900만원은 미수납됨.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A)	누적징수결정액(B)	2023년 징수결정액	수납액(C)	2023년 수납액	불납결손액(D)	미수납액(B-C-D)	2023년 미수납액
기타 재산수입	-	99	99	99	99	-	-	-
과태료	24,506	41,811	32,998	28,648	28,648	-	13,163	4,802
과징금	44,542	99,364	81,834	47,560	47,560	-	51,804	37,845
가산금	150	6,635	1,763	36	36	-	6,599	1,750
기타경상 이전수입	3,127	1,040	1,037	1,037	1,037	-	3	-
기타 잡수입	-	0.3	0.3	0.3	0.3	-	-	-
합 계	72,325	148,949	117,731	77,381	77,381	-	71,569	44,397

(자료: 금융위원회)

□ 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762억 800만원, 과징금 등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3,6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10억 3,700만원, 기타재산수입 9,900만원임.

□ 미수납액 715억 6,900만원은 납기 미도래(364억 1,600만원) 및 폐업·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납부능력 부족(344억 5,900만원), 납부기간 연장 등 징수유예(6억 9,400만원) 등에 따른 것임.

<최근 3년간 세입 미수납 사유 총괄표>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과징금			과태료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납기미도래	2,048	3,598	34,383	459	473	2,033	-	-	-	-	-	-
납부능력 부족	14,892	14,438	16,838	6,742	9,001	11,084	4,091	5,125	6,534	3	3	3
징수유예	525	76	584	237	40	45	7	9	65	-	-	-
합 계	17,465	18,113	51,804	7,438	9,514	13,163	4,098	5,134	6,599	3	3	3

(자료: 금융위원회)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7,637억 900만원이며, 이 가운데 50.5%에 해당하는 1조 9,021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8,610억 1,100만원을 불용처리함.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 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증감액	예비비				
합 계	3,763,619	90	±125	-	3,763,709	1,902,151	548	1,861,011
인건비	31,853	-	-	-	31,853	29,187	-	2,666
기본경비	8,414	-	±97	-	8,414	7,386	-	1,028
주요사업비	1,563,352	90	±28	-	1,563,442	1,561,718	548	1,177
내부거래 (회계기금간 거래)	2,160,000	-	-	-	2,160,000	303,860	-	1,856,140

(자료: 금융위원회)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291억 8,700만원, 기본경비 73억 8,600만원, 주요사업비 1조 5,617억 1,800만원임.

1) 인건비

□ 2023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18억 5,300만원에서 91.6%인 291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 6,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2023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예산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등				
합 계	31,853	-	-	-	31,853	29,187	-	2,666
본부 인건비	25,841	-	-	-	25,841	23,931	-	1,910
FIU 인건비	6,012	-	-	-	6,012	5,256	-	756

(자료: 금융위원회)

2) 기본경비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4억 1,400만원 중 87.8%인 73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2,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 목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목)	2023 예산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합 계	8,414	-	-	±97	8,414	7,386	-	1,028
인건비(110)	2,004	-	-	-	2,004	1,744	-	260
운영비(210)	3,854	-	-	31 △56	3,829	3,369	-	460
여비(220)	633	-	-	56 △28	661	566	-	95
업무추진비(240)	641	-	-	△3	638	609	-	29
직무수행경비(250)	729	-	-	-	729	661	-	68
보전금(310)	59	-	-	-	59	9	-	50
민간이전(320)	368	-	-	-	368	311	-	57
건설비(420)	16	-	-	10	26	26	-	-
유형자산(430)	110	-	-	△10	100	91	-	9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사업비

□ 2023회계연도 주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5,634억 4,200만원 중 99.9%인 1조 5,617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5억 4,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 7,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3회계연도 주요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	2023 예산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합 계	1,563,352	90	-	±28	1,563,442	1,561,718	548	1,177
핀테크 지원 사업	13,950	-	-	-	13,950	13,821	-	129
자금세탁방지추진	804	-	-	-	804	780	-	24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2,220	-	-	-	2,220	2,220	-	-
FIU전산망구축운영 (정보화)	4,641	-	-	-	4,641	4,640	-	1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1,029	-	-	-	1,029	1,001	-	28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1,830	-	-	-	1,830	1,829.6	-	0.4
금융소비자보호	101	-	-	-	101	98	-	3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38	-	-	-	38	37.3	-	0.7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360,168	-	-	-	360,168	360,168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28,000	-	-	-	28,000	28,000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67,801	-	-	-	367,801	367,794	-	7

주요사업	2023 예산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886	-	-	-	886	886	-	-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300,000	-	-	-	300,000	300,000	-	-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378	-	-	-	378	378	-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80,000	-	-	-	280,000	280,000	-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66,800	-	-	-	166,800	166,800	-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1,858	-	-	±28	1,858	1,360	493	5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 (정보화)	1,744	-	-	-	1,744	1,600	-	144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574	-	-	-	574	537	-	37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	117	-	-	-	117	115	-	2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81	-	-	-	181	178	-	3
정책연구개발	700	90	-	-	790	722	55	13
금융정책알리기	879	-	-	-	879	839	-	40
국제중재수행	640	-	-	-	640	62	-	578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07	-	-	-	407	251	-	156
회계의 날	68	-	-	-	68	64	-	4
금융의 날 행사	80	-	-	-	80	79	-	1
소송 수행 비용	425				425	424.8		0.2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출연	27,033	-	-	-	27,033	27,033	-	-

(자료: 금융위원회)

□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9억 5,000만원 중 138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자금세탁방지 추진 사업은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 국제기구 활동 등의 국제협력과 고액현금거래(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400만원 중 7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사업은 FATF 교육연구기구(TRAIN)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22억 2,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FIU전산망구축운영 사업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보호 및 보안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6억 4,100만원 중 46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사업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다양한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금융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금융중심지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추진과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치 및 필요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2,900만원 중 10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디지털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3,000만원 중 18억 2,960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소비자보호 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00만원 중 9,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사업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융그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그룹 감독제도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800만원 중 3,730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601억 6,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연체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8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678억 100만원 중 3,677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지원을 통해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 가혹한 채무독촉으로부터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8,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산업은행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은 뉴딜분야 중소벤처·중견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코넥스시장 상장 및 유지에 필요한 상장주선수수료, 지정자문인수수료, 외부감사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7,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코로나 피해 등으로 장기연체 또는 장기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8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 사업은 자본금 확충을 통해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용 절감 및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668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전자정부 구현 및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금융위원회 정보시스템을 개선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5,800만원 중 13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정보화 사업 계약일정에 따라 잔금 4억 9,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정보화) 사업은 개인사업자 정보 등 금융분야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금융혁신, 창업 및 데이터 기반 금융 산업 선진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 4,400만원 중 16억원을 집행하고 1억 4,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자본시장조사단운영(정보화) 사업은 2013년 4월 정부가 발표한「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13년 9월 신설된 '자본시장조사단'의 주가조작 등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7,400만원 중 5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사업은 금융위원회 국·영문 대표 홈페이지의 국민 이용 편의 향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으로 금융정책의 효과적 전달과 대국민 소통 활성화, 홍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700만원 중 1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은 조직의 비전 공유를 위한 다양한 창의혁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창의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행정효율성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8,100만원 중 1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정책연구개발 사업은 금융관련 주요 정책과제와 정책현안에 대한 용역 수행을 통하여 금융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9,000만원 중 7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연내 완료하지 못한 연구용역(1건)에 대한 대금 5,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정책알리기 사업은 금융시장 참여자·금융소비자·언론 등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등을 알기 쉽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7,900만원 중 8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국제중재수행 사업은 2015년 9월 이란의 다야니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 M&A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투자협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투자자-국가 중재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정부가 동 중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4,000만원 중 6,2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7,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사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시행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700만원 중 2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회계의 날 사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회계의날)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회계의 날'(매년 10월 31일)을 맞이하여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800만원 중 6,4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의 날 행사 사업은 2016.3.22.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기존 '저축의 날'이 '금융의 날'로 개편되어, 저축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과 자본시장 육성 등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0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소송 수행 비용 사업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2,500만원 중 4억 2,4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장려금의 지급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70억 3,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4)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 2023년도 회계기금간 거래(전출금)는 예산현액 2조 1,600억원 중 세수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3,038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1조 8,561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내부거래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	2023 예산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합 계	2,160,000	-	-	-	2,160,000	303,860	-	1,856,140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금	2,160,000	-	-	-	2,160,000	303,860	-	1,856,140

(자료: 금융위원회)

5) 프로그램별 지출내역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프로그램(항)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2023회계연도 프로그램(항)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항)별	2023 예산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합 계	3,763,619	90	-	±125	3,763,709	1,902,151	548	1,861,011
금융정책(1100)	13,950	-	-	-	13,950	13,821	-	129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선진화 (1300)	7,665	-	-	-	7,665	7,640	-	25
금융산업 글로벌화(1400)	2,859	-	-	-	2,859	2,831	-	28
금융소비자보호 (1800)	756,994	-	-	-	756,994	756,983	-	11
산업금융지원 (2400)	580,378	-	-	-	580,378	580,378	-	-
주택금융지원 (2600)	166,800	-	-	-	166,800	166,800	-	-
금융행정효율화 (7100)	74,973	90	-	±125	75,063	69,838	548	4,678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8400)	2,160,000	-	-	-	2,160,000	303,860	-	1,856,140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 사업(1100)은 세출예산현액 139억 5,000만원 중 99.1%인 138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0.9%인 1억 2,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1300)는 세출예산현액 76억 6,500만원 중 99.7%에 해당하는 76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0.3%인 2,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산업글로벌화(1400)는 세출예산현액 28억 5,900만원 중 99.0%인 28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1.0%인 2,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소비자보호(1800)는 세출예산현액 7,569억 9,400만원 중 99.999%인 7,569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0.001%인 1,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산업금융지원(2400)은 세출예산현액 5,803억 7,800만원 중 100.0%인 5,803억 7,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주택금융지원(2600)는 세출예산현액 1,668억원 중 100.0%인 1,668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금융행정효율화(7100)는 세출예산현액 750억 6,300만원 중 93.0%에 해당하는 698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0.7%인 5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3%인 46억 7,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8400)는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2조 1,600억원 중 14.1%인 3,038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85.9%인 1조 8,561억 4,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6) 이용 내역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액은 없음.

<2023회계연도 이용 내역>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	세목	금액	이용사유
해당사항 없음			

(자료: 금융위원회)

7) 전용 내역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1억 2,5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전용 증액			전용 감액			전용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비총액) (7111-251)	국외 교육여비 (220-03)	56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비총액) (7111-251)	일반수용비 (210-01)	56	국외 직무파견자 이전비, 교육훈련 국외여비 등 지급을 위한 국외교육여비 부족분 충당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7132-501)	일반 연구비 (260-01)	28	금융위정보 시스템운영 (정보화) (7132-501)	관리 용역비 (210-15)	28	「금융위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및 구축」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연구비 부족분 충당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비총액) (7111-251)	공사비 (420-03)	10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비총액) (7111-251)	자산 취득비 (430-01)	10	신규 회의실 설치를 위한 공사비 증액 필요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 (비총액) (7111-257)	임차료 (210-07)	2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 (비총액) (7111-257)	국내여비 (220-01)	2	복사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국내여비에서 임차료로 자체전용
금융정책국 기본경비 (비총액)	일반수용비 (210-01)	16	금융정책국 기본경비 (비총액)	국내여비 (220-01)	16	회의 참석수당 및 소모품 구입비 지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금융정책국 기본경비 (비총액)	일반수용비 (210-01)	3	금융정책국 기본경비 (비총액)	국외 업무여비 (220-02)	3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 (비총액) (7111-257)	일반수용비 (210-01)	3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 (비총액) (7111-257)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3	자본시장조사단 불공정거래시스템 유지보수 조달수수료, 감리위원회 지급수당 등 지급

전용 증액			전용 감액			전용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금융산업국 기본경비 (비총액)	일반수용비 (210-01)	7	금융산업국 기본경비 (비총액)	국외 업무여비 (220-02)	7	복합기 소모품 구입, 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 일반수용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자체전용

(자료: 금융위원회)

8) 이월 내역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5억 4,800만원이며, 잔금 지급 기일 미도래 정보화 사업과 연내 완료하지 못한 연구용역 대금 사고이월임.

<2023회계연도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세 목	이월액	이월 사유
금융위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일반연구비	198	정보화사업 계약 일정에 따른 잔금 지급 기일 미도래
	자산취득비	295	
정책연구개발	정책연구비	55	정책연구용역 1건(가상자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규제사항 검토) 계약기간 연장
합 계		548	

(자료: 금융위원회)

9) 불용 내역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1조 8,610억 1,100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집행잔액 26억 6,600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0억 2,800만원, 주요사업비 집행잔액 11억 7,700만원과 회계기금간 거래 불용인 공적자금상환금 전출금 잔액 1조 8,561억 4,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주요사업별 불용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ㅇ 인 건 비	31,853	2,666	8.4	집행잔액
ㅇ 기본경비	8,414	1,028	12.2	집행잔액
ㅇ 주요사업비	1,563,442	1,177	0.1	
핀테크 지원 사업	13,950	129	0.9	집행잔액
자금세탁방지추진	804	24	3.0	집행잔액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2,220	-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641	1	0.1	집행잔액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1,029	28	2.7	집행잔액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1,830	0.4	0.0	집행잔액
금융소비자보호	101	3	3.0	집행잔액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38	0.7	1.8	집행잔액
서민금융진흥원출연(청년희망적금)	360,168	-	-	
서민금융진흥원출연(최저신용자한시특례보증)	28,000	-	-	
서민금융진흥원출연(청년도약계좌)	367,801	7	0.0	낙찰차액, 집행잔액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886	-	-	
산업은행출자(혁신성장펀드)	300,000	-	-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378	-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280,000	-	-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	166,800	-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858	5	0.3	낙찰차액, 집행잔액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정보화)	1,744	144	8.3	낙찰차액, 집행잔액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574	37	6.4	낙찰차액, 집행잔액
금융위대표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117	2	1.7	낙찰차액, 집행잔액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81	3	1.7	집행잔액
정책연구개발	790	13	1.6	집행잔액
금융정책알리기	879	40	4.6	집행잔액
국제중재수행	640	578	90.3	소송종료로 인한 불용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07	156	38.3	포상금 지급요건 미발생
회계의 날	68	4	5.9	집행잔액
금융의 날 행사	80	1	1.5	집행잔액
소송수행비용	425	0.2	0.0	집행잔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27,033	-	-	
ㅇ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2,160,000	1,856,140	85.9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160,000	1,856,140	85.9	자금미배정(세수부족)
합 계	3,763,709	1,861,011	49.5	

(자료: 금융위원회)

Ⅱ. 검토의견

1. 핀테크 지원 사업[8]: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출시 실적 저조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하여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39억 5,000만원 중 138억 2,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1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핀테크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핀테크 지원 사업	13,950	-	-	13,950	13,821	-	129	12,330

(자료: 금융위원회)

8) 세부사업: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2) 검토의견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출시 실적 저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기산일이 기존 '지정일'에서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됨에 따라 2023년도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건수가 저조하므로,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점에 비해 서비스 출시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9] 금융위원회에 의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10] 동안 금융관련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규제특례)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게 됨.

○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 이후에 실제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가 그 효용을 누리지 못하므로, 제도의 효과성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실제 서비스로 출시되는 정도로 측정될 수 있음.

---

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10) 2년의 범위 내 지정, 2년 이내 1회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법 §4①, §10①)

○ 그러나 2023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출시 현황을 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56건으로 전년(52건) 대비 증가한 반면, 출시 건수는 15건으로 전년(46건) 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연도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출시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4.7월말	계
지정 건수	77	58	50	52	56	62	355
출시 건수	24	47	39	46	15	22	193

(자료: 금융위원회)

□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건수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의 권고(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회의, '21.10.14.)에 따라 2022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기산일을 기존 '지정일'에서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이 지정기간(2년+2년)의 기산점이 되므로 사업자가 서비스 개발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를 사전에 진행한 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했으나, 기산일 변경 이후부터는 일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한 후 서비스 개발 등을 시작하여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임.[11)]

□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점으로부터 서비스 출시 시점이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지정 시에는 심사

11) 이는 서비스 개발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해당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에 未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면서도 규제특례를 누릴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서비스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

기준에 부합했더라도 지정기간 개시일(서비스 출시일)에는 혁신성 등이 떨어질 수 있고,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서비스 출시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미출시 사유를 재점검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에 비해 서비스 출시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0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시 동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실제 서비스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이 의결된 바 있음.

(2) D-테스트베드 사업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 필요

D-테스트베드 사업은 정보화 사업임에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서 누락되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D-테스트베드" 사업은 핀테크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핀테크 관련 초기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효과성을 테스트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를 연계해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억 1,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시범사업, 2022년도 정규사업(예산액 4억 2,900만원) 편성에 이어 2023년도(예산액 10억 1,000만원)부터 D-테스트베드 사업의 상시운영을 목표로 기존 연 1회 운영하던 것을 상·하반기 2회로 늘리고, 오프라인 상시 분석환경을 제공하며, 금융데이터 이외에도 비금융업권(공공·유통) 데이터를 추가하는 등 D-테스트베드 사업을 확대하였음.

□ D-테스트베드 사업 예산액 대부분은 매년 'D-테스트베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해당 용역은 ① D-테스트베드 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② 전문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③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12)]

12) <'2023년도 D-테스트베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 제안요청서'상 요구사항 일부>

1. **D-테스트베드 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요구사항 일부

요구사항 분류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유지보수 관련 일반사항, 웹사이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사항, 웹사이트의 컨텐츠 추가 및 수정 사항, 그 외 유지보수 관련 기타사항 등
성능 요구사항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시스템(하드웨어)의 성능을 고려한 운영방안 제시),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 신뢰성 보장 관련 요구사항 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플랫폼 종속성 관련 요구사항(신규 개발 시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구축, IE(9·10·11), 엣지, 사파리, 크롬 등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표준화 적용 등), 이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관련 요구사항 등
보안 요구사항	보안 대책 제시 및 개발 보안 등

2. **전문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운영**

2-1. 참여팀 개인화 원격분석환경 구축: 본 제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참여자들이 편리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SSL VPN 및 DaaS(Desktop as a Service) 등을 활용한 원격분석시스템 제공

2-2. 원격분석환경 운영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정보화 사업을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일반사업 내에 포함된 정보화사업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D-테스트베드 사업은 정보화 사업에 해당함.

3.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요구 내역

구분	상세명세				수량 (식)
	항목	CPU(Core)	Memory(GB)	Disk(GB)	
서버	(운영) WEB	2	4	300	2
	(운영) WAS	2	8	300	2
	(운영) 포털 DB	2	4	100	2
	(운영) DaaS	4	8	100	40
	(운영) GPU 서버	8 1vGPU	40 16(vGPU)	500	40
	(운영) 관리 서버	8	16	500	3
	(개발) WEB/WAS	2	4	50	1
	(개발) DB	2	4	50	1
	합계				91
시스템 S/W	OS linux	상용 S/W일 경우 라이선스 비용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 (기술지원 포함)			28
	OS window				20
	MS Office(365)				20
	WEB				3
	DBMS				3
보안 시스템	방화벽(F/W), DB Secure Zone(DB 접근제어, 암호화)				1
	웹 방화벽(F/W), 침입방지시스템(IPS)				1
	보안관제 등 관리서비스 제공				제공
	SSL VPN				25
네트워크	공인 고정 IP				제공
	대용량 트래픽 부하분산 제공 (외부/내부)				제공
	트래픽 3TB 이상 무료 제공 보장				제공
스토리지	Object Storage	무제한			1
	NAS	1TB 이상			1

(자료: 2023년도 D-테스트베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정보화 사업 적용대상>

□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

○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

*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비 등으로 구성

○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 정보화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전파 관리, ICT산업 기반조성,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강화 등

(중 략)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보화 유형으로 등록된 세부사업.
다만, 일반사업 및 R&D사업(非정보화 유형) 내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도 본 지침을 준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에서 누락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13]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함.

○ 이는 정보화 사업이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지침 및 가이드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D-테스트베드 사업은 정보화 사업에 해당함에도 2023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없이 편성·운영되는 등 정보화 사업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 사업은 핀테크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의 아이디어 테스트 및 사업성 검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보화 사업과 관련성이 낮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미반영했다는 입장임.[14)]

- 그러나 동 사업은 D-테스트베드 포털 및 전문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등의 방식으로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안 편성지침은 일반사업 내에 포함된 정보화사업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타 부처의 경우 일반사업의 내역·내내역 사업의 경우에도 정보화사업으로 분류하여 매년 지능

14)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 사업은 연중 한정된 테스트기간 내에 아이디어의 테스트 및 검증을 지원하는 것이고, 범용 플랫폼이 아닌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사업이며, 공공정보가 아닌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등 민간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정보화 사업과 관련성이 낮다는 입장이나, 동 사업은 모집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운영기간이 연중 약 7개월인 단년도 계속사업이고, 정보화 사업의 요건으로 범용 플랫폼인지 여부, 공공정보만을 활용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는 점[15]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D-테스트베드는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다른 내역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연도 중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을 신설한 사업으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신설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보화 사업임에도 ISP를 수립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보다 엄격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 사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5) <2023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상 정보화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2022예산	2023예산안
산업부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중소기업FTA활용지원 (전주기 FTA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2,540 (400)	11,761 (100)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 고도화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 고도화)	1,370 (613)	1,026 (19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보화시스템	-	70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340	34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10	410
	소상공인성장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112,810	94,400
	마케팅지원	유통망진출지원 (우수제품 상세페이지 구축)	14,778 (800)	12,568 (1,200)
		공동A/S지원 (공동A/S운영)	6,230 (1,263)	6,230 (1,505)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벤처기업인프라지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운영)	2,624 (2,200)	2,224 (1,8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2.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16]: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주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6억 4,100만원 중 46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FIU 전산망 구축·운영 (정보화)	4,641	-	-	4,641	4,640	-	1	4,635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FIU 전산망 구축·운영 사업의 운영비 집행 시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6) 세부사업: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1332-501)

□ 관서운영경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1항은 그 성격상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7]

○ 관서운영경비는 관서 단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무관·지출관 간의 서류 송부, 계좌 이체 등 지출 절차를 간소화한 경비이며 일반적인 지출원칙의 예외이므로, 정부는 관서운영경비의 금액과 범위를 제한하여 과다 집행을 방지하고 있음.

-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법령,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 가능한 예산과목은 인건비(110목) 중 현역병사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건당 500만원 이하의 운영비(210목, 단 복리수행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시험연구비 중 연구용역비는 제외), 여비(220목), 직무수행경비(250목) 등임.

17)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인건비(110)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는 제외
여비(220)	전체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직무수행경비(250)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안보비(27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정보보안비(28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호 및 교정비
유형자산(430)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자료:「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 [별지 제1호])

○ 그중 운영비(210목)와 관련하여서는「국고금 관리법」제24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제20조제1항에서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이 건당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8] 이는 지출관의 승인 없는 지출을 최소화하여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운영비(일반수용비, 210-01목)로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 조달수수료 2,133만원, 정보보호필름 구입비용 585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여 관련 규정상 관서운영경비 지출한도를 초과하였음.

○ 특히 정보보호필름의 경우, 자금 부족을 사유로 10월 25일에 총 827만원의 구입비용 중 242만원은 "FIU 전산망 구축·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목)로, 585만원은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의 국

---

18)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 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외업무여비(220-02목)로 분할 집행한 후, 11월 9일에 국외업무여비로 집행한 585만원을 “FIU 전산망 구축·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정정하였음.

<2023년 운영비(210목)의 관서운영경비 지출한도(500만원) 초과 집행 사례>

(단위: 원)

세부사업명	비목	지급일	지급액	지급용도
FIU 전산망 구축·운영	일반수용비 (210-01)	2023.11.24.	21,332,340	22-24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장기계속 3차) 조달수수료
	일반수용비 (210-01)	2023.10.25.	2,416,800	전산소모품(정보보호필름) 구입
	일반수용비 (210-01)	2023.11.9.	5,853,000	FIU 전산망 구축운영 사업 내 수용비로 비목 정정
자금세탁 방지추진	국외업무여비 (220-02)	2023.10.25.	5,853,000	전산소모품(정보보호필름) 구입
	국외업무여비 (220-02)	2023.11.9.	-5,853,000	FIU 전산망 구축운영 사업 내 수용비로 비목 정정

(자료: 금융위원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국고금 관리법」 등의 지출한도를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9]: 기여금 예산 과다 편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하여 본인납입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비례한 기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3,678억 100만원 중 3,677억 9,400만원(100.0%)이 집행되고, 7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67,801	-	-	367,801	367,794	-	7	368,211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① 개인소득이 총 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② 취급은행 중 한 곳에서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본인납입금을 납입하면 ③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여 가입자의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3.0%~6.0%의 기여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임.

19)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총급여	종합소득	매칭비율	지급한도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3.7%	22,200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3.0%	21,000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만 제공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사업시행주체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인프라 구축비용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지급비용을 출연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은행을 통하여 매월 가입자에게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청년도약계좌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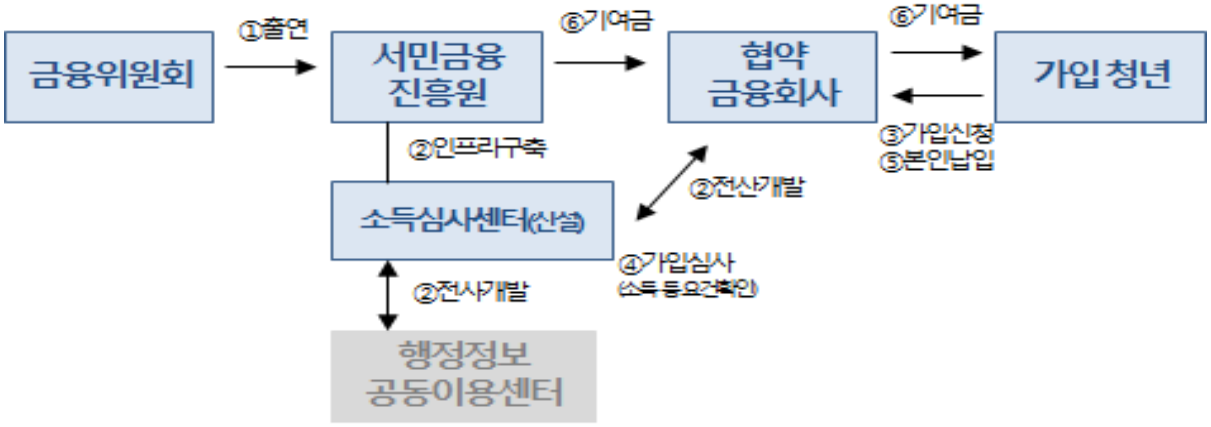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출연금 외에 금융위원회 예산에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정책연구비 등 청년도약계좌 운영비용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출시 준비와 출시 후 관리 등을 수행함.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기여금 예산의 약 90%가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수요를 보다 면밀히 예측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하여 2023년도 예산에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신설해 예산 3,67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하였음.

○ 구체적 예산편성내역은 ①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 3,440억 3,700만원 ② 소득심사센터 설립 등 서민금융진흥원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출연금 236억 1,000만원과 ③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비용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1억 5,400만원임.

□ 금융위원회는 예산 3,678억 100만원 중 운영비용 700만원(전액 정책연구비)을 제외한 3,677억 9,400만원(100.0%)을 집행하였으나, 이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예산을 출연하였음을 의미할 뿐, 서민금융진흥원이 실제 집행한 금액은 출연금 3,676억 4,700만원 중 642억 8,000만원(17.5%)에 그침.

○ 특히, 내역사업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지급은 출연금 3,440억 3,700만원 중 432억 2,100만원(12.6%)만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87.4%에 달하였음.

-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은 출연금 236억 1,000만원 중 210억 5,900만원(89.2%)을 집행하고 25억 5,100만원(10.8%)을 이월하였음.

<청년도약계좌 사업 내역사업별 실집행>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	결산	실집행
기여금 지원	344,037 (100%)	344,037	43,221 (12.6%)
인프라 구축	23,610 (100%)	23,610	21,059 (89.2%)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154 (100%)	147	147 (95.5%)
합계	367,801 (100%)	367,794	64,427 (17.5%)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했던 이유는 예산편성 시 306만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었으나, 16.7%인 51.1만명에 그쳤고, 가입자의 납입액도 기존 예상치에 비해 낮았기 때문으로 보임.

○ 정부는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약 470만 명 중 306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한도의 약 80%를 납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인당 월평균 1.87만원의 기여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2023년 말까지 51.1만명이 가입하였고 인당 월평균 1.46만원의 기여금이 지급되었음.[20]

20) 국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청년도약계좌의 대상범위, 만기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가입자 및 납입액이 목표치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 · 실집행 비교>

구분	예산(예측치)	실집행
가입자 수	306만명 (100%)	51.1만명 (16.7%)
총 기여금 지급액	3,440억 3,700만원 (100%)	432억 2,100만원 (12.6%)

(자료: 금융위원회)

○ 이같이 가입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을 통하여 고용한 민원상담인력 역시, 예산편성 당시 하루에 가입신청자 300만명 중 1%인 3만명이 문의한다고 가정하여 민원상담인력 1인당 일 응대가능건수(150건)을 기준으로 200명 고용에 필요한 용역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담건수가 일평균 1,900건, 민원상담인력 1인당 일 10건에 그쳤음.[21]

□ 이처럼, 예산편성 시 가입자 규모 등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하여 출연금이 과도하게 계상됨에 따라,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여금 예산이 불용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이월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구축한 인프라의 활용도도 낮게 나타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지난해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내역사업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지적[22]이 있었으며, 국회는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4,890억 4,300만원 중 1,300억원을 감액하였음.

21) 국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예상 문의건수를 고려할 때 필요한 민원상담인력의 규모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22) 제41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 제6차(2023.11.21.) 회의록

□ 한편, 정부는 '2024년도 예산 부대의견'[23]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2024.3.12.)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①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기존 중위소득 180% → 250% 이하)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②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급하는 등 상품구조를 일부 조정하는 것임.

○ 정부의 발표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기여금 지급규모도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되었으나, 2024년 6월말 기준 가입자 규모는 약 133만명[24]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추산한 규모[25]에도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 증가 추이를 고려해 수요를 보다 면밀히 예측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3)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정 예산 하에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24) 2024년 상반기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한 청년은 약 52만명 포함
25)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217만명 중 140만명 가량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해 총 200만명이 가입할 것을 예상함.(제4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 제6차회의 회의록)

4.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6]: 매칭방식 도입에 따른 문제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은 신산업·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재정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3,000억원은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300,000	-	-	300,000	300,000	-	-	240,000

(자료: 금융위원회)

□ ‘혁신성장펀드’는 매년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재정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의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의 매칭 출자를 통해 2023년부터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여 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업으로[27]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산업펀드’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성장지원펀드’로 구성됨.

26)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27) 2021년과 2022년 수행되었던 뉴딜펀드를 2023년부터 개편한 것으로, 혁신성장펀드는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뉴딜펀드와 기본적인 성격은 유사하나, 투자대상 선정방식이나 운영방식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 혁신성장펀드의 구성 >

구 분	목적 및 투자대상
혁신산업펀드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및 신성장 4.0 등 국가전략산업분야에 투자하여 성장동력 창출 *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선정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력산업·신산업 품목군 분야(9개 테마284개 품목)
성장지원펀드	민간자본 조성이 부진한 성장 중·후기 단계* 투자에 집중하여 글로벌 유니콘기업 창출 촉진 * 창업(최초 투자)-성장단계(후속투자)를 넘어 대규모 추가 후속투자가 필요한 단계

주: 2023년도 기준

(자료: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 2023년에는 ① 혁신산업 분야에 재정 2,000억원, 정책자금 3,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출자 1조원을 매칭하여 1조 5,000억원 규모의 혁신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② 성장지원 분야에 재정 1,000억원, 정책자금 3,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출자 1조 1,000억원을 매칭하여 1조 5,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총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결성할 계획이었음.

<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3조원) 세부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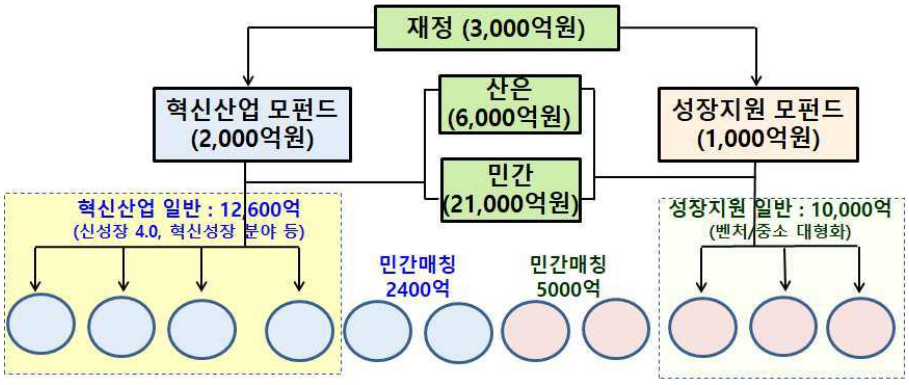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 2023년도「혁신성장펀드」조성계획, 2023.2.22.)

○ 2024년 5월말 현재 혁신산업펀드에 2조 827억원, 성장지원펀드에 1조 8,600억원 등 총 3조 9,427억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어 당초 계획을 초과달성하였음.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 출자 분야별 출자계획 및 실적>

(단위: 억원)

분야		출자 계획				실제 출자내역			
		정책자금 출자			총 조성목표	정책자금 출자			총 조성금액
		재정	산은	계		재정	산은	계	
혁신 산업	일반	1,536	3,000	4,536	12,600	1,536	3,000	4,536	18,557
	매칭	464	-	464	2,400	464	-	464	2,270
소 계		2,000	3,000	5,000	**15,000**	2,000	3,000	5,000	**20,827**
성장 지원	일반	300	2,900	3,200	10,000	300	2,900	3,200	13,600
	매칭	700	100	800	5,000	700	100	800	5,000
소 계		1,000	3,000	4,000	**15,000**	1,000	3,000	4,000	**18,600**
합 계		3,000	6,000	9,000	**30,000**	3,000	6,000	9,000	**39,427**

주: 2024.5월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 한편, 2023년에는 주목적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는 기존의 출자방식(이하 '일반방식')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여 이미 결성되었거나 결성 직전인 펀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재정과 정책자금을 매칭 출자하여 민간의 투자대상 선정 자율성을 높인 매칭출자 방식(이하 '매칭방식')[28]을 새롭게 도입해 병행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혁신산업펀드에 재정 464억원, 성장지원펀드에 재정 700억원과 정책자금 100억원을 배정하여 매칭방식으로 추진하였음.

28) 일반방식과 매칭방식 모두 재정, 정책자금과 민간 투자액을 매칭하여 자펀드를 조성하므로 새롭게 도입된 방식을 매칭방식으로 지칭하는 것이 용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나, 정부가 기존의 방식을 일반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된 방식을 매칭방식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름.

2) 검토의견

(1) 사업추진방식 일부 변경(매칭방식 도입)

2023년에만 도입했던 매칭방식은 기(旣)결성된 펀드[29]나 결성이 거의 완료된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모험자본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방식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산 확정 후 사업 추진방식을 일부 변경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 확정 후인 2023년 2월,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서 주목적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는 기존의 일반방식 외에 2023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2023년 혁신성장펀드 조성방안」(2022년 10월)에 포함되지 않았던 매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였음.[30]

○ 매칭방식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펀드가 혁신산업펀드 또는 성장지원펀드의 출자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모펀드 및 한국산업은행에서 매칭 출자하는 방식임.

○ 금융위원회는 기존 정책펀드가 주목적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여 출자분야를 공고하고 이에 응모한 운용사에만 출자하는 구조이기

29) 투자미집행 한정
30) 기존의 출자방식도 민간과 매칭하여 출자하나, 해당 계획에서는 기존의 방식은 “일반출자방식”으로, 출자 확약되거나 기결성된 펀드에 모펀드가 출자하는 경우를 “매칭출자방식”으로 명명함.

때문에 민간 운용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다양한 투자대상 발굴 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매칭방식을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정부의 출자공고 내용에 제약받지 않고 운용사가 투자대상 및 운용전략을 폭넓게 정할 수 있어 민간의 창의성 발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31]

○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으로 2,270억원 규모의 혁신산업펀드(매칭)와 5,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매칭) 등 총 7,270억원의 매칭펀드가 결성되었고, 2024년 5월말 현재 각각 486억원(투자집행률 21%)과 665억원(투자집행률 13%)의 투자를 집행하여, 대체로 양호한 초기 투자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매칭펀드 결성 및 투자 실적(2023년도) >

(단위: 억원)

구 분	자펀드 결성액				투자 집행액 (B)	투자 집행률 (B/A)	미투자액 (A-B)
	재정	정책자금	민간	계(A)			
혁신산업펀드 (매칭)	464	-	1,806	2,270	486	21%	1,784
성장지원펀드 (매칭)	700	100	4,200	5,000	665	13%	4,335
계	1,164	100	6,006	7,270	1,151	16%	6,119

주: 2024.5월 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 첫째, 혁신성장펀드는 대규모 정책마중물 자금 공급을 통해 민간자금

31)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2023.2.22.,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 계획

의 매칭 출자를 유도하여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것인데, 신규로 도입된 매칭방식은 기(旣)결성된 펀드나 결성이 거의 완료된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모험자본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타 출자자 출자확약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할 것[32]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매칭방식은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였으나 일부 자금 부족으로 아직 결성이 완료되지 않은 펀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분야 펀드 결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모험자본 공급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정책펀드로 인한 민간펀드의 구축효과를 감쇄하는 효과도 있으며, 펀드가 막 결성된 시기(1년차)에 민간출자자금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성장지원펀드(매칭)의 경우, 출자확약 금액이 정책 출자금액(건당 400억원)의 400% 이상인 경우 선정우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출자확약 금액이 1,600억원 이상인 중대형 운용사가 대상이 되며, 실제로 선정 지원한 3개 운용사 중 2개 운용사가 확보한 출자확약 금액이 이미 목표결성금액인 2,5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자금 부족으로 미결성된 펀드의 결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컸다고 보기 어려움.

32) 혁신산업펀드: 제안서 접수일 현재 타 출자자 출자확약액 360억원 이상 또는 기 결성된 펀드의 약정 총액 600억원 이상
성장지원펀드: 제안서 접수일 현재 타 출자자 출자확약 750억원 이상 보유(출자확약 금액이 정책 출자금액의 400% 이상인 경우 우대 기준 적용)

○ 또한, 매칭방식 펀드 운용사 선정시 경쟁률이 높지 않아[33] 시장의 수요가 큰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先)출자 확약한 민간 출자자 및 추가 펀딩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매칭방식의 경우 주목적 투자비율 등 일부 조건을 완화[34]하고 있어서 매칭방식이 혁신성장펀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주목적 투자분야 실적에 따라 운용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목적 달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임.[35]

□ 둘째, 매칭방식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이 예산 확정 후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업 추진방식 등을 고려하여 예산 사업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하므로 주요한 사업 내용 및 추진방식 등은 예산안 심사시 미리 제시되어야 함.

---

33) 혁신산업펀드(매칭)와 성장지원펀드(매칭) 각각 2개사를 선정하는데, 3개사씩 지원하여 경쟁률은 1:1.5임.

34) 일반 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은 대체로 정책출자비율의 2배 수준인 60%로 설정되어 있고, 매칭 펀드도 정책출자금의 2배를 주목적투자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비례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출자비율이 (32.0%~37.5%) 수준 에서 (19.3%, 16%)로 낮아졌기 때문에 약정총액 대비 주목적투자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최소결성액 기준)은 낮게 나타남(38.6%, 32%).

35) 이와 관련하여 운용사 인센티브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후술함.

○ 예산안 심사 후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 등을 일부 변경할 수는 있을 것이나, 동 사업은 예산 확정 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주요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되었는 바, 금융위원회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매칭방식 운용보수 변경

성장지원펀드(매칭)은 지원한 운용사가 당초 운용보수 조건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타당한 사유 없이 자펀드운용사에게 지급하는 운용보수 조건을 관리보수율은 0.15%p 이상 더 높게 설정하고, 성과보수는 초과수익 전액을 우선적으로 자펀드운용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다른 자펀드운용사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여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회수될 재정·정책자금의 누수 우려가 있음.

□ 혁신성장펀드 자펀드 운용사에게는 ① 운용보수와 ②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① 운용보수는 ⅰ) 관리보수와 ⅱ) 성과보수로 구성됨.

< 자펀드 운용사 보수 >

자펀드 운용사 보수		내 용
운용보수	관리보수	펀드 운용사가 펀드를 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 일반적으로 총 자산가치 또는 약정된 자본의 일정 비율로 계산 (대체로 연 1.5%에서 2.5% 수준)
	성과보수	펀드의 성과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받는 보수. 일반적으로 특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로 계산 (예: 8%의 기준수익률 초과시 초과분의 20%)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펀드가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된 경우 추가로 받는 보수 (예: 특정 분야 투자비율 초과달성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의 5% 이내에서 달성률에 따라 지급)

○ 일반방식의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ⅰ) 관리보수는 약정총액 및 투자잔액, 운용기간 등에 따라 연 0.5%~1.6% 범위의 관리보수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ⅱ)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36]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로 지급하거나 운용사 제안하는 방식 중 협의를 거쳐 확정함.

□ 매칭방식의 혁신성장펀드의 운용보수를 살펴보면, 혁신산업펀드(매칭)은 자펀드 운용사에게 일반방식의 혁신성장펀드와 동일한 운용보수 기준을 적용하였고, 성장지원펀드(매칭)도 당초에는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용보수 기준을 변경하였음.

○ 성장지원펀드(매칭)의 모펀드 운용사(신한자산운용)는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지원한 모든 운용사(3개사)가 최초 공고문[37]에서 제시한

36) 혁신산업펀드는 내부수익률 7% 이상, 성장지원펀드는 내부수익률 8% 이상

당초 운용보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격 지원자 미달로 정상적인 운용사 선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산업은행에 운용보수 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고, 이후 한국산업은행과 모펀드 운용사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운용보수 조건으로 변경하고[38] 재공고 및 추가 접수기간[39]을 부여하여 운용사 선정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함.[40]

- 운용사가 "기모집된 출자확약서(LOC) 등 대비 운용보수가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운용보수를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사학연금기금 등 국내 연기금[41], 공제회 등에서 매칭 방식의 출자사업을 진행할 때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 변경[42]한 것이라고 설명함.

- 이에 따라 성장지원펀드(매칭)에 지원한 모든 운용사(3개사)가 변경된 공고문상의 운용보수 조건을 충족하여[43] 그 중 2개 운용사를 선정하였음.

---

37)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펀드) 2023년 2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 공고일: 2023년 9월 12일, 접수일: 2023년 9월 25일
38) 혁신성장펀드운영위원회(2023년 제3차, 2023.10.16.)의 승인을 거쳐 성장지원사업(매칭)의 운용보수를 변경하였음.
39) 운용보수 조건 변경에 따라 최초 공고문상의 보수 조건에서 지원하지 않은 잠재 운용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공고함.
40) 참고로, 혁신사업펀드(매칭)은 공고문상 보수조건을 충족하여 재공고 없었음.
41)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42) 일반방식의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동일 펀드 내 출자자가 운용사에게 지급하는 운용보수 조건은 통상 동일함. 다만, 원활한 펀드조성의 지원을 위해 최다출자자에 한해서 운용보수 등 일부 출자조건의 우대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님.
43) 기모집된 출자확약서에 따른 운용보수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운용보수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성장지원펀드(매칭) 운용보수 변경 내역 >

<table>
<tr><td>변경전</td><td>

○ **관리보수** : ① 또는 ② 중 택일
-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시 아래 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이내에서 협의 가능
① 2년간 약정총액 및 투자잔액 기준, 이후 투자잔액 기준

<table>
<tr><th>구 분</th><th>≤1,000억원</th><th>≤2,000억원</th><th>≤3,000억원</th><th>3,000억원<</th></tr>
<tr><td>투자잔액</td><td>연1.6% 이내</td><td>연1.1% 이내</td><td rowspan="2">연0.6% 이내</td><td rowspan="2">연0.5%이내</td></tr>
<tr><td>(약정총액 -투자잔액)</td><td>연1.4% 이내</td><td>연0.9% 이내</td></tr>
</table>

* 성립일~2년 : 투자잔액 및 (약정총액 - 투자잔액) 기준, 2년~만기 : 투자잔액 기준

② 2년간 약정총액, 이후 투자잔액 기준

<table>
<tr><th>구 분</th><th>≤1,000억원</th><th>≤2,000억원</th><th>≤3,000억원</th><th>3,000억원<</th></tr>
<tr><td>성립일 ~ 2년</td><td rowspan="2">연1.5% 이내</td><td rowspan="2">연1.0% 이내</td><td rowspan="2">연0.6% 이내</td><td rowspan="2">연0.5%이내</td></tr>
<tr><td>2년 ~ 만기</td></tr>
</table>

* 성립일~2년 : 약정총액 기준, 2년~만기 : 투자잔액 기준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이내
○ 기준수익률 : 내부수익률(IRR) 8% 이상
* 정책출자금액(산업은행, 정부재정 합산) 우대조치 제안 가능
○ 상기 보수 체계를 기본으로 성과 중심의 관리·성과보수를 연계 구성하여 제안 가능(사전 협의 요망)하며, 펀드별 보수체계는 선정시 개별 협의를 거쳐 확정

</td></tr>
<tr><td>변경후</td><td><u>기모집된 출자확약서(LOC) 등 대비 운용보수가 불리하지 않은 수준</u>으로 제안</td></tr>
</table>

(자료: 각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문)

□ 적격지원자 미달로 인해 운용보수를 변경함에 따라 성장지원펀드(매칭)의 운용보수는 결과적으로 일반방식이나 혁신산업펀드(매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음.

○ 성장지원펀드(매칭) 관리보수 산정에 실제 적용되는 관리보수율(1.0%~1.75%)은 일반방식의 혁신성장펀드의 관리보수율(0.5%~1.6%)보다 0.15%p에서 0.5%p 더 높게 설정되었음.

○ 성장지원펀드(매칭)의 성과보수를 살펴보면, B펀드의 경우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누적적으로 총수익의 20%에 이를 때까지는 자펀드 운용사에게 초과수익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초과수익의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방식에 비해 자펀드 운용사에게 유리한 구조로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출자자에게 배분될 수익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향후 펀드 청산 등으로 회수될 재정·정책 자금의 누수 우려가 있음.

<혁신성장펀드 자펀드 운용보수>

운용보수	일반방식의 혁신성장펀드, 혁신산업펀드(매칭)	성장지원펀드(매칭)
관리보수	약정총액 및 투자잔액, 기간 등에 따라 연 0.5%~1.6% 범위의 관리보수율 적용	사원별 출자금, 기간, 투자잔액 등에 따라 1.0%~1.75% 범위의 관리보수율 적용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초과시> 초과수익의 20% *예외적으로, 1개 펀드만 초과수익의 40% (누적적으로 총수익의 20% 한도)	<기준수익률 초과시> A펀드: 초과수익의 40% (누적적으로 총수익의 20% 한도) B펀드: 초과수익의 100% (누적적으로 총수익의 20% 한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이상을 종합하면, 동 사업은 2023년도에 신규로 매칭방식을 도입하면서 시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세부 사업조건을 운용사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에는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책펀드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매칭방식 자펀드 운용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44]

혁신산업펀드(매칭)와 성장지원펀드(매칭) 간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조건의 차이가 지나치게 클 뿐 아니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운용사)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인센티브 조건 설정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정책펀드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성과보수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펀드의 정책목적 달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혁신성장펀드도 자펀드 위탁운용사에게 운용보수의 일환인 성과보수 외에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혁신성장펀드(일반)의 자펀드 운용사에게는 중소기업 신주 투자실적 또는 민간 모험자본 및 해외자본 모집 실적에 따라 정책출자자 앞에 배분될 초과수익의 5% 이내에서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혁신성장펀드(매칭)의 자펀드 운용사에게는 기존의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변경하여 주목적 투자분야에 대한 투자실적에 따라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매칭방식 펀드 운용사의 운용 자율성을 활용하면서도 정책목적의 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구조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함.

44)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2024년도에는 내용 일부 변경되었음.

<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

<table>
<tr><th>구 분</th><th>운용사 추가 인센티브</th></tr>
<tr><td>혁신성장펀드
(일반)</td><td>○ 인센티브 조건 충족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의 5% 이내에서 달성률에 따라 운용사 앞 지급 (①, ② 중 택일, 미선택 가능)
① 중소기업 신주 투자실적(중소기업 신규발행주식 투자금액 합계/약정총액)
<table>
<tr><td>중소기업 신주투자 비율</td><td>60% 이상</td><td>70% 이상</td><td>80% 이상</td></tr>
<tr><td>인센티브 지급비율</td><td>2% 이상</td><td>3% 이상</td><td></td></tr>
</table>
② 민간 모험자본 및 해외자본 모집실적
(민간 모험자본(해외자본 포함) 약정액/약정총액)
<table>
<tr><td>민간모험자본 모집비율</td><td>30% 이상</td><td>40% 이상</td><td>50% 이상</td></tr>
<tr><td>인센티브 지급비율</td><td>2% 이상</td><td>3% 이상</td><td>5%</td></tr>
</table></td></tr>
<tr><td>혁신성장펀드
(매칭)</td><td>○ 인센티브 조건 충족 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의 5% 이내에서 기준에 따라 운용사 앞 지급 (미선택 가능)
- 주목적투자분야 의무투자금액 초과 달성 실적
<혁신산업>
<table>
<tr><td>주목적투자실적</td><td>580억 이상</td><td>696억 이상</td><td>812억 이상</td></tr>
<tr><td>인센티브 지급 비율</td><td>2% 이상</td><td>3% 이상</td><td>5%</td></tr>
</table>
<성장지원>
<table>
<tr><td>의무투자금액 초과
투자실적*</td><td>250% 이상 ~
300% 미만</td><td>300% 이상 ~
350% 미만</td><td>350% 이상</td></tr>
<tr><td>인센티브 지급비율</td><td>2% 이상</td><td>3% 이상</td><td>5%</td></tr>
</table>
* 주목적투자분야에 대한 투자금액/의무투자금액</td></tr>
</table>

○ 매칭방식은 일반방식과 달리 일정 규모의 출자확약이나 기결성을 전제로 하므로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른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성이 적고, 주목적 투자분야에 대한 투자 조건을 일반방식에 비해 다소 완화[45]하고 있어서, 주목적 투자분야에 대한 투자 실적에 따라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목적 달성을 도모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45) 일반 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은 대체로 정책출자비율의 2배 수준인 60%로 설정되어 있고, 매칭 펀드도 정책출자금의 2배를 주목적투자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비례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정책출자비율이 (32.0%~37.5%) 수준에서 (19.3%, 16%)로 낮아졌기 때문에 약정총액 대비 주목적투자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최소결성액 기준)은 낮게 나타남(38.6%, 32%).

< 주목적 투자분야 의무 투자 비율 >

	주목적 투자분야	의무 투자 비율	
		일반	매칭
혁신 산업	▸다음에 모두 해당 ①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해당 기업에 투자 ② '新성장 4.0', '글로벌 초격차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분야 ③ 중소·중견기업	-약정총액의 60% -정책출자금 -약정총액의 60% (정책출자비율은 규모에 따라 33.8% ~ 37.5%)	정책출자금 2배 (정책출자비율: 19.3%)
성장 지원	▸다음에 모두 해당 ①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중소·중견기업 ② 투자 전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약정총액의 60% (정책출자비율 32%)	정책출자금 2배 (정책출자비율: 16%)

(자료: 각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문)

□ 매칭방식 펀드의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보면, 혁신산업펀드(매칭)와 성장지원펀드(매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의 표는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약정총액(최소결성액 기준) 대비 주목적 투자분야 비율로 나타낸 것임.

<주목적 투자 분야 비율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비율(매칭)>

인센티브 지급비율	인센티브 지급 조건	
	혁신산업(매칭)	성장지원(매칭)
2% 이상	최소결성액의 48.3%	최소결성액의 80.0%
3% 이상	최소결성액의 58.0%	최소결성액의 96.0%
5%	최소결성액의 67.7%	최소결성액의 112.0%
※ 의무비율 (최소결성액 대비)	최소결성액의 38.6%	최소결성액의 32.0%

주1) 인센티브 지급비율: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의 5% 이내에서 운용사 앞 지급
주2)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최소결성액(약정총액)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나타냄
주3) 약정총액=최소결성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결성액이 최소결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조건 비율이 하락할 수 있음.

(자료: 각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문을 토대로 작성)

○ 혁신산업펀드(매칭)과 성장지원펀드(매칭)을 비교해보면, 혁신산업펀드(매칭)의 주목적 분야 투자 의무비율은 최소결성액 대비 38.6%이고, 약 10%p씩 추가 달성할 때마다 운용사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 성장지원펀드(매칭)은 주목적 분야 투자 의무비율이 최소결정액 대비 32.0%로 혁신산업펀드에 비해 더 낮은데도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결성액의 80.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5%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정총액이 반드시 최소결성액을 초과해야 하는 구조임.

○ 이를 혁신성장펀드(일반)의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약정 총액의 60%)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성장지원펀드(매칭)의 인센티브는 성장지원펀드(일반)의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약정 총액의 60%) 보다 20%p 높은 수준에서 지급하는 반면, 혁신산업펀드(매칭)는 혁신산업(일반)의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약정 총액의 60%) 보다 낮은 수준에서도 3%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임.

□ 펀드별 특성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는 있으나, 펀드간 주목적 투자 분야 및 지원비율의 차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두 펀드의 인센티브 지급 조건 차이가 과대함.

○ 또한, 각 펀드의 인센티브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적정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방식과 비교할 때 혁신산업펀드(매칭)

은 인센티브 지급조건의 달성이 다소 수월하고 성장지원펀드(매칭)은 상당히 어려워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자펀드 운용사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혁신성장펀드 운용사 인센티브 조건 설정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46]: 정책 수요와 소요 재원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부실(우려)차주[47] 관련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8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80,000	280,000	-	-	280,000	280,000	-	-	330,000

(자료: 금융위원회)

□ ‘채무조정’이란 채무의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의 연장 및 분할상환 등을 통하여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동 프로그램은 ① 협약 가입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채권 중 ② 90일 이상 장기

46)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432-303)

47) 부실차주: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대상차주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1개 이상의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채무자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채권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상 ‘요주의’이하로 평가하는 채권의 채무자 등 장기연체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대상차주 중 부실차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곧 발생할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최대 30조원 규모로 매입한 후, ③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순부채의 60~80%(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90%까지)를 감면하고,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및 장기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임.

□ 또한, 채무자 및 대출 유형에 따라, ①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권은 '매입형'(한국자산관리공사) 방식으로, ② 부실차주의 담보채권 및 부실우려차주는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 방식으로 지원함. 매입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신청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치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새출발기금'이 이를 매입하여 채권자로 참여하게 됨.

<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요>

□ (개요)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출범('22.10.4일)**

□ (지원대상) **'20.4월~'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24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지원요건 완화) 등에 따라 기존 코로나피해 요건을 폐지하고 '20.4월~'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24.2시행)

□ (방식)

매입형(한국자산관리공사)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신용·보증채권)	부실차주(담보채권), 부실우려차주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비동의 시 기금 매입)

□ 2024년 6월 기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매입형의 경우 원금은 약 70%, 이자는 100% 감면되며, 중개형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약 5%p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입형 및 중개형 지원현황 >

(2024년 6월 기준)

구 분		매입형			중개형			
		부실차주(신용·보증채권)			부실차주(담보채권)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율	이자 감면율	평균 분할 년수	이자율 인하 (%p)	평균 분할 년수	이자율 인하 (%p)	평균 분할 년수
2022년 4/4분기		69.8%	100%	8.7	5.3%	15.3	5.2%	9.8
2023년	1/4분기	70.0%	100%	9.1	5.8%	13.8	4.3%	10.2
	2/4분기	69.9%	100%	9.4	6.2%	15.9	4.7%	10.2
	3/4분기	70.2%	100%	9.4	6.4%	15.8	4.5%	10.3
	4/4분기	71.3%	100%	9.5	5.6%	15.3	4.4%	10.3
2024년	1/4분기	70.4%	100%	9.5	5.2%	16.9	4.2%	10.2
	2/4분기	70.6%	100%	9.6	5.9%	15.4	5.0%	10.2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정책 수요와 소요 재원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

금융위원회는 정부 재정 출자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책 수요와 재원 산정 기준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새출발기금을 위해 정부 재정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권매입 실적 및 매입가율, 공사채 발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자 규모를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 등의 업무를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용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새출발기금'을 2022년 10월 신설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하여 2022년 10월부터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총 30조원의 채권매입을 계획하고, 채권 매입 가율 60%를 적용하여 18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 총 소요재원 18조원 중 14조 4,000억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예상 부도발생률 20%를 적용하여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3조 6,000억원은 정부가 자본금 출자를 통해 보충한다는 계획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산출 내역 >

■ 정부의 자본금 출자규모 3조 6,000억원 = ① 30조원(채권매입규모) × ② 60%(예상채권매입가율)× ③ 20%(예상부도율)	
세부 산출 근거	① 채권 매입규모는 한국은행 추정 잠재부실 규모(72조원)의 약 40%로 정함
	② 담보·보증부 채권액은 채권원금의 약 85%, 신용대출(무담보)은 채권원금의 35% 수준으로 매입할 예정으로, 개인사업자 보유 대출채권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균 매입가율을 채권원금의 60%로 설정
	③ 통상적으로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폐업기업에 대한 보증배수 5배를 원용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해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 6,000억원과 현물 출자 5,000억원 등 1조 1,000억원을 출자하였고, 2023년도 예산 2,800억원, 2024년도 예산 3,3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2024년 6월 기준 동 사업을 위한 정부의 자본금 출자규모는 총 1조 7,100억원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공사채 발행을 통해 2023년도에 3,600억원, 2024년도에 4,900억원을 확보하였는데, 2024년 6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사업 운용을 위해 투입된 자본금 출자 및 공사채 발행의 총 규모는 2조 5,600억원임.

< 새출발기금을 위한 자본금 출자 및 공사채 발행 규모>

(단위: 억원, 2024년 6월 기준)

	총계획	'22년	'23년	'24년	투입 합계	계획 대비 투입
자본금출자(예산)	36,000	11,000*	2,800	3,300	17,100	47.5%
공사채발행	144,000	-	3,600	4,900	8,500	5.9%
합 계	180,000	11,000	6,400	8,200	25,600	14.2%

주: 현물출자 5,00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자료 재구성)

□ 또한, 2023년 1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종전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정의 주된 이유는 정부가 공사에 새출발기금 운용을 위해 3조 6,0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하는데, 법정자본금이 3조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음.[48)]

□ 그러나 새출발기금의 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6월말 기준 채권 매입규모는 4조 7,932억원으로, 총 계획규모 30조원의 15.9%를, 채권매입 소요금액은 2조 687억원으로, 총 계획규모 18조원의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계획 및 실적 >

(단위: 억원, 2024년 6월 기준)

구분	총 계획규모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채권매입 규모	300,000	47,932	15.9%
채권매입 소요금액	180,000	20,687	11.5%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총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었는데, 총 사업기간 3년 중 1년 9개월(2024.6.기준)이 경과한 시점의 계획 대비 실적이 20% 이하라는 현 추세를 고려한다면 사업기간 내에 당초 계획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또한, 채권매입 규모와 그 매입 소요금액을 살펴보면, 평균 채권 매입가율이 43.2%로 나타나, 정부가 소요금액 산정 시 적용한 평균 매입가율 60%와는 큰 차이가 나타남.

48) 종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고, 2022년 11월 초 기준 공사의 납입 자본금은 2조 7,119억원이었음.

<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세부 현황 >

(단위: 억원, 2024년 6월 기준)

구 분	채권매입 규모	매입 소요금액	평균 매입가율	계획상 매입가율
무담보	25,906	9.747	37.6%	35%
보증부대출	16,806	6.586	39.2%	85%
담보	5,125	4,318	84.3%	
합 계	47,838	20,651	43.2%	60%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자료 재구성)

○ 2024년 6월 기준의 평균 채권 매입가율 43.2%를 소요재원 산정 시에 적용했다면,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한다는 당초 계획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에도 채권매입에 소요되는 총 금액은 12조 9,600억원으로 계획상 금액 18조원 보다 5조 400억원이 적고, 정부 재원으로 부담하는 자본금 출자 금액도 계획상 금액 3조 6,000억원 보다 1조 80억원 적은 2조 5,920억원이 됨.

< 채권 매입가율에 따른 소요재원 추정 >

(단위: 억원)

구 분	계획상 매입가율 60% 적용	평균 매입가율 43.2% 적용	차이
채권매입 규모	300,000	300,000	-
채권매입 소요금액	180,000	129,600	50,400
- 정부 자본금 출자(20%)	36,000	25,920	10,080
- 공사채 발행(80%)	144,000	103,680	40,320

□ 새출발기금의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책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재정 지원 등 소요재원 산정 시에 채권 매입가율 등 산정 기준값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임.

□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 대상의 수요 및 재정 지원 등 소요재원의 산정이 부정확한 경우, 국회의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 노력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 향후, 금융위원회는 정부 재정 출자 기반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책 수요와 재원 산정 기준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새출발기금을 위해 정부 재정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권매입 실적 및 매입가율, 공사채 발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자 규모를 조정하여야 할 것임.

6.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49]: 사업 목적에 충실한 정책모기지 운영 및 상품요건 변경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68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66,800	-	-	166,800	166,800	-	-	-

(자료: 금융위원회)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정책모기지 공급 포함),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 이 중 정책모기지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대출을 공급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

49) 세부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2632-301)

하고, 이를 담보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Mortgage Backed Bond, 커버드본드(Covered Bond, CB)라고도 함)을 직접 발행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을 자기신탁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로부터 발행대금을 받아 금융회사에 주택저당채권 양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MBS 상환의 안정성을 담보함으로써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사업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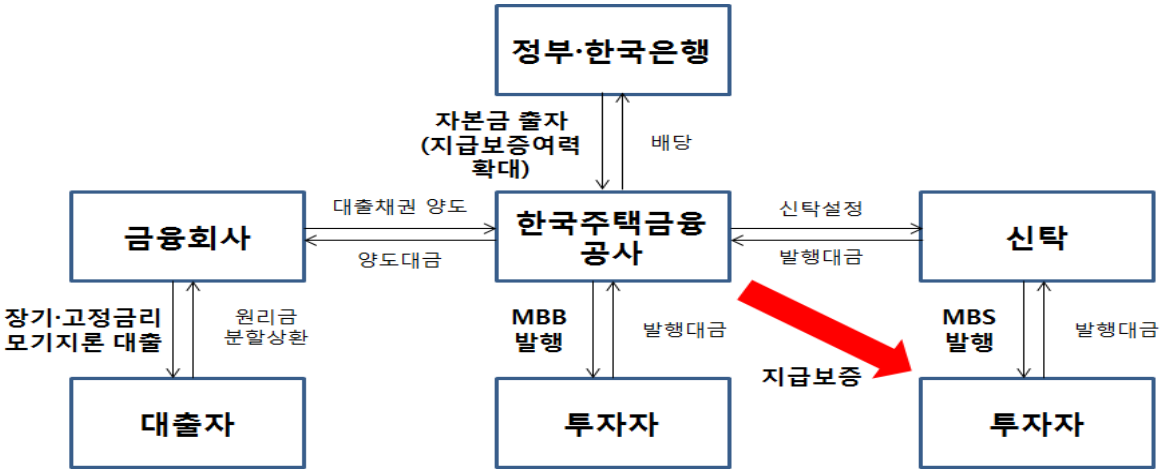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MBS 지급보증잔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지급보증배수"라 하는데, 지급보증배수가 적정 지급보증배수를 초과하면 투자자가 MBS의 리스크를 크게 인식하여 MBS 발행이 어려워지거나 발행금리가 상승하여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 상품의 대출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50]를 통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함으로써 지급보증배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51]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정을 통하여 2004년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MBS 405조 1,050억원, CB 17조 2,509원 등 422조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2024년 5월말 기준 지급보증배수는 34.9배 수준임.

○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5조에 따라 한국은행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이후 2004년, 2012년, 2015년, 2022년, 2023년[52]까지 총 5회에 걸쳐 9,950억원을 출자하였음.

2) 검토의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게 그 대상을 고소득자까지 확대하고, 신규주택 구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도록 운영함에 따라 가계부채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5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5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34조에 따른 법정 지급보증배수는 50배이나, 23년말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지급보증배수를 38.6배 이내로 재설정하고, 미유동화자산을 고려한 실질 지급보증배수를 도입하여 40.8배 이내로 관리하고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4조(지급보증) ①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52) 2004년 3월 1일(3,100억원), 2012년 7월 31일(1,350억원), 2015년 6월 5일(2,000억원), 2022년 8월 30일(1,200억원), 2023년 6월 23일(2,300억원) 출자가 이루어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출범한 이래 정책모기지 사업을 통하여 2024년 5월말까지 363만건, 443조원의 대출을 공급하여 무주택자 등의 주택구입을 지원하였음.

○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었고, 이러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하여 ①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53] ②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여력 확충을 통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였으며[54] ③ 변동(혼합)금리·원금일시상환 대출로 이루어진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초)장기·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55] 대출을 유도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하였음.

□ 반면, 저리의 정책모기지 공급이 주택담보대출 확대 유인을 제공하여 우리사회의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의 심화에 기여하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규모는 2023년말 기준 1,886조 3,647억원이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064조 3,391억원으로 56.4%를 차지함.[56]

○ 2023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전년대비 10.1조원 증가하였고, 그

53) 일반적으로 정책모기지 상품의 대출금리는 일반상품의 대출금리보다 낮으며, 상품에 따라 취약계층 등에게는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54)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함으로써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위험가중치가 낮은 MBS를 보유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음.
55)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가계가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을 상환하면 되므로 가계가 적정 수준 이상의 차입을 할 가능성이 있고, 대출기간 동안 실질적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기 시 큰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여 상환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56)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년 4.4분기 가계신용(잠정)”, 2024.2.20.

중 주택담보대출은 45.1조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51.6조원 증가하였는데, 은행자체대출은 4.2조원 감소한 반면, 정책모기지가 29.4조원, 주택도시기금이 26.4조원 증가[57]하여 정책금융상품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24년 5월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71조원인데, 그 중 정책모기지는 178조 4,000억원으로 20.5%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23년 1월 출시되어 1년간 공급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당초 글로벌 통화긴축[58]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증가한 서민·실수요자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1년간 41조 8,000억원이 공급되어[이 중 신규주택 구입목적 대출은 27.1조원(65%)으로, 기존대출 상환조건부 13.7조원, 순수 신규대출 13.4조원으로 구성],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음.[59]

○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모기지와 달리 소득기준을 없애고, 대상주택가격도 기존의 6억원보다 높은 9억원까지 확대하였는데, 2023.9.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보증금을 상환한 금액비중은 37.3%에 불과한 반면 신규주택 구입비중은 62.7%를 차지하고,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거나

5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024.1.11.
58)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8. 기존 0.5%에서 0.75%로 인상한 것을 포함해 총 10차례에 걸쳐 2023.1.까지 3.5%로 인상 / 미국도 2022.3.부터 금리를 인사하여 2023.7.부터 5.5%로 유지 중
59) 한국은행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후인 2023년 2월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대환대출 비중이 높아 전체 가계대출 순증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나[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3년도 제4차)], 2023년 9월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지원 등으로 인하여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부부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금액비중이 42.9%를 차지하였음.

○ 이와 같이 신규주택 구입 용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기존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기준(6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고가주택에 상당부분의 자금이 공급[60]된 것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통해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23.9.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별/유형별 유효신청 현황>

(단위: 억원)

자금용도별		유형별	
구분	금액(비중)	구분	
기존대출 상환 / 임차보증금 반환	140,303(37.3%)	우대형	214,965(57.1%)
신규주택 구입	236,139(62.7%)	일반형	161,517(42.9%)
합계	376,482(100%)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2023년 2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9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을 축소[61]하였음.

60) 정책모기지 상품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적격대출 상품이 과거에도 있었으나, 금융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의 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하여 운영해왔음.
61)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축소한 것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관이 주택금융공사의 한정된 지원 여력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임.

○ 당초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계획 발표 당시(2023.1.)에는 우대형·일반형 모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2023년 9월부터 소득기준 제한이 없었던 일반형 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대출만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음.

□ 국민의 주거안정은 중요한 정책목표이고, 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식 대출 유도를 통하여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식 대출 위주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 2023년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여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며, 기존 발표와 달리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 등 상품요건을 중도에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향후 정책모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기존 발표내용과 다르게 상품요건 등이 변경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7.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62]: 불용 과다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의 운용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비(非)인건비성 기본경비를 지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3억 5,600만원 중 19억 4,900만원(82.7%)이 집행되고, 4억 600만원(16.8%)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회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2,416	-	△61	2,356	1,949	-	406	2,935

(자료: 금융위원회)

62) 세부사업: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1-251)

2) 검토의견

(1) 증액 편성 이후 불용 과다 부적절

금융위원회는 연례적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3년 집행실적이 오히려 예년보다 부진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사업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집행 부진의 사유를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기획조정관실의 일반수용비가 연례적으로 부족하여 다른 부서 기본경비의 내역변경[63] 등을 통해 기획조정관실의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회의수당 등으로 집행해왔고, 2022년 추경 당시 금융위원회 각 실국을 대표하여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를 감액했던 점 등을 반영하여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 예산을 2022년(추경) 대비 약 4억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음.[64]

63) 단위사업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64)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5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3년도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 예산 편성 내역>

○ **일반수용비(210-01) : 822백만원 → 1,154백만원(+331백만원, +40.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78백만원 → 79백만원(+1백만원, +1.3%)
○ **임차료(210-07) : 404백만원 → 448백만원(+44백만원, +10.9%)**
○ 유류비(210-08) : 17백만원 → 17백만원(+0.2백만원, +1.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7백만원 → 17백만원(+0.09백만원, +0.6%)
○ 일반용역비(210-14) : 17백만원 → 19백만원(2백만원, +11.8%)
○ 관리용역비(210-15) : 40백만원 → 40백만원(전년동)
○ 국내여비(220-01) : 88백만원 → 88백만원(전년동)
○ 국외업무여비(220-02) : 14백만원 → 14백만원(전년동)
○ **국외교육여비(220-03) : 32백만원 → 48백만원(+16백만원, +50.1%)**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97백만원 → 336백만원(+39백만원, +13.0%)**
○ 배상금(310-02) : 27백만원 → 25백만원(△2백만원, △7.4%)
○ 포상금(310-03) : 2백만원 → 2백만원(전년동)
○ 기타보전금(310-04) : 28백만원 → 33백만원(+5백만원, +18.1%)
○ 공사비(420-03) : 18백만원 → 16백만원(△2백만원, △11.1%)
○ **자산취득비(430-01) : 65백만원 → 81백만원(+16백만원, +24.4%)**

□ 그런데 동 사업은 매년 집행률 95%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여왔던 것과 달리, 2023년에는 실제 집행액이 예년보다 적어 집행률이 예산현액 대비 82.7%에 불과하였으며, 6,100만원을 감액하는 내역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기회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최근 결산 내역 및 2024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0	2,053	2,030	-	224	2,254	2,140	105.4	94.9	-	114
2021	2,043	2,043	-	89	2,132	2,030	99.4	95.2	-	102
2022	2,094	1,966	-	117	2,083	2,031	103.3	97.5	-	52
2023	2,416	2,416	-	△61	2,356	1,949	80.7	82.7	-	406
2024	2,935	2,935	-	-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세부적으로, 2023년 증액편성된 주요 비목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도 집행액이 증액편성되기 전인 2022년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증액 편성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일반수용비(210-01)는 전년도 대비 3억 3,100만원(40.3%)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액 11억 5,400만원 중 1억 1,900만원을 자체전용 또는 내역변경하여 감액하였는데도 1억 9,4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73.0%에 불과하며,

- 임차료(210-07) 또한 전년도 대비 4,400만원(10.9%)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300만원을 불용하여 불용액이 증액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증액 비목의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비목	2022 추경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수용비	822	1,154	-	△119	1,036	842	-	194	1,422
임차료	404	448	-	-	448	385	-	63	519
국외교육여비	32	48	-	71	119	111	-	7	48
관서업무추진비	297	336	-	-	336	333	-	3	356
기타보전금	28	33	-	-	29	8	-	25	38
자산취득비	65	81	-	△10	71	67	-	4	163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2023년 주요 증액 비목의 집행실적 부진이 확인되었는 바,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집행부진의 사유를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관례적인 국외업무여비(220-02) 편성 지양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 중 국외업무여비는 이전의 사업추진 경과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관례적인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 매년 집행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그 중 일부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다른 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세부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하여 향후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에 매년 ① 우수공무원 금융정책 역량강화 해외우수기관 시찰, ② 법제업무담당자 법제역량 강화, ③ 성과관리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조사를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국외업무여비(220-02)를 편성·집행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국외업무여비[65]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예

65) 국외업무여비의 내역(세목)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 체결 등)

산액 1,400만원 중 약 500만원이 집행되어 약 35.7%의 집행률을 나타내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웠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2015~2023년 국외업무여비(220-02)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예산액(A)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15	89	△63	26	26	-	29.0
2016	91	△40	51	44	7	48.6
2017	32	-	32	9	23	28.8
2018	32	-	32	9	23	28.1
2019	29	△13	16	13	3	44.8
2020	19	△19	0	0	-	0.0
2021	14	△14	0	0	-	0.0
2022	14	△7	7	4	3	28.6
2023	14	-	14	5	9	35.7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해외연수에 약 500만원을 집행한 것 외에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2022년에도 동일하였음[66].

-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참석
-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 자료수집 등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외출장여비
3.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66)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동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2022년 및 2023년 국외업무여비 편성내역 대비 집행실적 등>

(단위: 천원)

구분	편성내역	예산액	집행실적	집행액
2022년	우수공무원 금융정책 역량강화 해외우수기관 시찰 (싱가폴 4박 5일, 5급 1명, 6.7급 2명)	8,962	-	-
	법제업무담당자 법제역량 강화 (제네바, 6박 8일, 4급 1명)	2,500	2022년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3,811
	성과관리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조사 (런던, 3박5일, 5급 2명)	5,206	-	-
	조정	-2,515		
	2022 소계	14,153		3,811
2023년	우수공무원 금융정책 역량강화 해외우수기관 시찰 (싱가폴 4박 5일, 5급 1명, 6.7급 2명)	8,996	-	-
	법제업무담당자 법제역량 강화 (제네바, 6박 8일, 4급 1명)	2,500	2023년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5,136
	성과관리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조사 (런던, 3박5일, 5급 2명)	5,223	-	-
	조정	-2,566		
	2023 소계	14,153		5,136
2024년	우수공무원 금융정책 역량강화 해외우수기관 시찰 (싱가폴 4박 5일, 5급 1명, 6.7급 2명)	8,996		
	법제업무담당자 법제역량 강화 (제네바, 6박 8일, 4급 1명)	2,500		
	성과관리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조사 (런던, 3박5일, 5급 2명)	5,223		
	조정	-2,566		
	2024 소계	14,153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17년 및 2018년 결산 심사에서도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국외업무여비가 과도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받았음.[67]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2018년 이후 해외 우수기관 시찰 예정지 변경(미국 워싱턴→싱가폴)에 따라 예산 단가를 감액편성한 것 외에는 매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고, 해외우수기관 시찰, 선진국 사례조사 등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관련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금융위원회의 다른 세부사업인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7135-301)[68]에서 금융혁신 전문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직원의 해외 우수기관 방문[69]이 시행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해외 시찰을 위한 두 사업간에 큰 차이가 없고,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로 실시하는 사업은 최근 진행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도 해당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의 해외우수기관 시찰은 특정 업무와 관련한 타부처 주관 국외출장[70]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음.

□ 향후 금융위원회는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의 국외업무여비 예산 편성시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67) 당시 금융위원회는 당초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융정책 수립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기관 시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현안 업무수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불용되었다고 설명하였음.
68) 조직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업무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의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① 직무수행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② 금융혁신 전문역량강화, ③ 워크숍, ④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⑤ 업무우수부서·직원 포상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69) 2023예산으로 국외업무여비(220-02)가 2,522만원 편성되어 2,200만원 집행되었음.
70) 국가정보원 보안업무, 인사혁신처 인사업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권익위 청렴업무 등

한편, 실현가능한 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국외 업무여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3) 편성 및 집행 지침을 위반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개선

금융위원회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을 위반하여 잘못된 비목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를 지침에 부합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상용임금(110-03)은 「병역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보수로,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교통비, 급식비는 상용임금(110-03)에 포함될 수 없고 별도 비목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상용임금(110-03) 비목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71]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병역법」 제31조 제5항[7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기본급, 교통비, 급식비 등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간 상용임금에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를 함께 편성·집행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예산 관련 지침에 맞추어 각각을 별도

71)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111-201)
72)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 ④ (생략)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의 비목[73]으로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급여의 형태로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침 위반의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74]

○ 또한, 피복비, 교통비, 급식비는 총액인건비 비대상인데도, 이를 상용임금 비목에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총액인건비 비대상 항목이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어 지출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음.

- 금융위원회는 총액인건비[75] 적용 대상기관으로, 총액인건비(인건비·운영경비)간에는 자체 전용을 허용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대신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과 비대상 사업간 이·전용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76]

-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는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나뉘며[77], 총액인건비 대상이 되는 운영경비에는 1) 비정규직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 각 중앙관서 등의 조직과 인력 규모에 따라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가 있음.

---

7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피복비는 피복비 세목(210-03목), 급식비는 급식비 세목(210-04목), 교통비는 국내여비 세목(220-01)로 편성해야 함.
74) 인사혁신처 등은 지침에 맞추어 보수, 피복비, 교통비, 급식비 등을 별도 비목으로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급여의 형태로 일괄하여 집행하고 있음.
75)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시행기관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총액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정원, 보수・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임.
76)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은 비대상 사업에 비해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대상과 비대상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큼.
77) 인건비: 공무원 및 개별법령에 채용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타직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
운영경비: 기본경비에 편성된 경비 중 정원 및 인력운영과 관련 있는 일부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중앙행정기관 기준)>

구 분	세 부 내 역
인건비	인건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보수(110-01목), 기타직 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
운영경비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숙직비(210-06목), 복리후생비(210-12목), 기타운영비(210-16목), 교수보직경비(250-01목), 직책수행경비(250-02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 고용부담금(320-09)

- 이에 따라 피복비, 교통비, 급식비는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가 아니므로,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총액)의 상용임금(110-03) 비목으로 편성 및 집행되어 총액인건비제도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됨.

8. 정책연구개발[78]: 수의계약 과다 및 수행기관 편중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책연구개발” 사업은 정책연구과제를 심의·선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위탁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7억 9,000만원 중 7억 2,200만원(91.4%)이 집행되고, 5,500만원(7.0%)은 이월되었으며, 1,300만원(1.6%)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정책연구개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정책연구개발	700	90	-	790	722	55	13	665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 및 특정 수행기관 편중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23년 정책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25개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6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2023년에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4년에 종료)하였음.

78) 세부사업: 정책연구개발(7135-302)

□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5건의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23건(92.0%)은 계약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2건(8.0%)은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79]을 두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총 25건 중 19건에 대해 제안요청서상의 발주금액을 2천만원 내외로 설정하여 이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살펴보면, 25건의 계약 중 특정 4개 수행기관이 전체 계약의 60%인 15건을 수행하였고, 최근 5개년(2019년~2023년)간 수행한 실적[80] 중에서도 위와 동일한 특정 4개 수행기관이 전체의 54.4%를 수행하였음.

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80) 정책연구개발 사업을 포함한 모든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업의 정책연구비를 사용한 용역 대상

<2023회계연도 정책연구개발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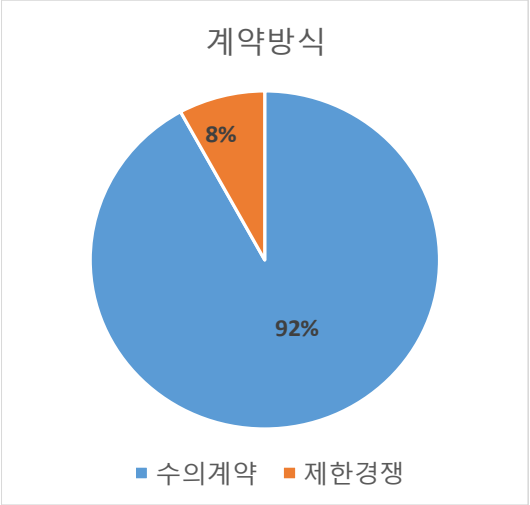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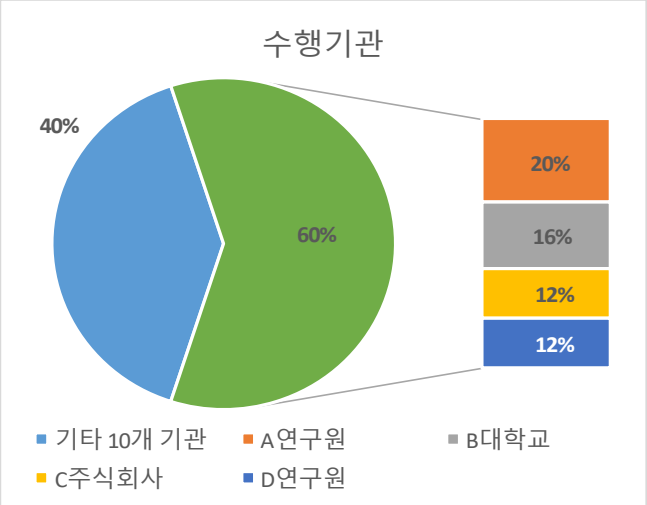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를 재구성)

○ 이와 같은 집행실적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특성상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고도의 사전 지식·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수의계약과 수행기관 편중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러한 연구용역은 일반경쟁을 원칙[81][82]으로 하고 있다는 점, 금융위원회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중에는 연례적인 만족도조사, 경영평가, 기초통계분석, 실태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특정 기관이 다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정책연구용역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82)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연구용역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 및 특정 수행기관 편중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9. 금융감독원 지도 · 감독 강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됨.[83)]

○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고,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하며, 금융감독원은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84)85)]

○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는 「금융위원회법」[86)] 및 「자본시장 및 금

---

8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8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5)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은 2018년 2월 21일 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으며, 이에 따라 매년 국회 정무위원회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고 있음.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87]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88],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수입은 4,275억으로 예산(3,969억원) 대비 306억원 초과되었으며, 총지출은 3,868억원(97.5%)으로 예산(3,969억원) 대비 101억원 불용되었음.

○ 초과수입은 회사채 등 발행분담금 수입(+277억원)과 이자수익 등 운영외 수입(+29억원)에서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인건비 등 초과지출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17) 및 운영외비용등(△198억원)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음.

○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인 수지차익 407억원은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납부기관별 수납비율에 따라 반환함.

---

8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분담금) 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 (감독분담금)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총부채, 영업수익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분담
(발행분담금) 주식, 채권 등 증권 발행시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부담

<2023회계연도 금융감독원 수입 · 지출 결산 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a)	결산액(b)	(b-a)	예산
Ⅰ. 총수입(A)	3,969	4,275	306	4,159
운영수입	3,930	4,207	277	4,097
감독분담금	2,980	2,980	0	3,030
발행분담금	895	1,172	277	1,012
한은출연금	50	50	0	50
기타수입수수료	5	5	0	5
운영외수입	39	68	29	62
Ⅱ. 총지출(B)	3,969	3,868	-101	4,159
일반관리비	3,533	3,630	97	3,766
인건비	2,343	2,433	90	2,467
경비	860	884	24	944
퇴직급여	330	313	-17	354
운영외비용등	436	238	-198	393
Ⅲ. 수지차익(A-B)	0	407	407	0

(자료: 금융감독원)

2) 검토의견

(1) 민간인력 파견 및 타 기관 파견 관리 필요

금융감독원의 민간인력 파견 활용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감독원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타 기관 파견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말 금융감독원의 정원은 2,105명이며, 현원은 2,069명으로 인력 충원률은 93.8%임. 이 중 금융감독원에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파견한 인력은 67명이며, 그 외에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은 36명임.

<금융감독원 인력 운용 현황(2023년말 기준)>

(단위 : 명, %)

구분	정원[1] (A)	현원 (B)	충원율 (B/A)	파견	
				금감원→타기관	타기관→금감원
임원	15	15	100.0	-	-
직원	2,190	2,054	93.8	67	36[2),3)]
계	2,205	2,069	93.8		

주1) 임금피크제 별도정원(59명) 포함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에 따라 감소하는 퇴직자 수를 매년 별도정원에 반영)
2) 인사교류 목적 상호파견(한은, 권익위, 검찰 등 6명), 자문관(3명)은 제외
3) 검사대상 기관 및 금융 관련 협회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파견인력 2인(우체국 금융개발원, 신용회복위원회)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의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금융감독원이 업무 공조 등을 위해 민간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 대상 기관에

과도한 인건비 등의 부담을 전가할 수 있고 이해충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인력 활용 규모의 적정성을 상시 점검하고, 민간인력 활용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동안 이에 근거한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다수의 인력이 금융감독원에 파견되어 근무해 왔으며[89], 2024년 1월 현재는 총 36명의 타 기관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에 파견되어 근무 중임.

89) 검사대상 기관 및 금융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누계
인원	57	62	50	44	34	160

주. 인사교류 목적 상호파견, 자문관은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 타 기관 소속 직원 금융감독원 파견 현황 >

(단위: 명)

부 서	담당업무	금융 기관	공공·유관기관	합계
보험사기대응단	● 보험사기 공동조사 ● 수사의뢰 사건 관련 수사기관 출석 및 조사자료 설명	16	1	17
민생금융국	● 불법금융 연루 전화번호, 사이트 차단	3	2	5
포용금융실	●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및 은행별 지원제도 안내 등)	4	-	4
금융사기전담대응단	●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 지급 등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업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3	-	3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금융현장소통반 운영 (금융회사·소비자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1	2	3
국제업무국 (금융중심지지원센터)	●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자료 발간	3	-	3
공매도특별조사단	● 불법공매도 관련 예탁원과 조사 협업 지원	-	1	1
합 계		30	6	36

주 1. 2024.1.4. 기준
2. 인사교류 목적의 상호파견(한국은행, 권익위, 검찰 등 6명), 자문관(3명) 등은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 이는 금융감독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공조가 필요하거나(보험사기 대응),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보이스피싱 피해구제)에는 민간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임.

○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등에게 인력파견 등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파견인력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감독 대상 기관의 직원이 감독기구에 근무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우려와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민간 파견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상시 점검하고, 민간인력 활용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금융감독원의 인력 부족, 민간 인력의 과도한 활용에 따른 문제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타 기관에 파견하는 인력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3.24. 제정), 가산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7.18. 제정[90]) 등 제정으로 인해 업무부담은 늘고 있는 반면, 민간과의 임금 격차 및 승진적체 등을 이유로 퇴직 및 민간으로의 이직이 증가하고[91] 있어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정기검사 등 금융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경력 수시채용을 재개하여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도모하는 한편,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업무 협조 및 타 기관 등의 요

90) 금융감독원 내 가산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등 신설
91) 2021년 퇴직자 25명, 2022년 퇴직자 39명, 2023년 퇴직자 43명(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무기계약직 직원 퇴직을 제외한 의원면직자 기준)

청에 따라 타 기관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23년 말 현재 67인에 이름.

< 타기관 파견 현황 ('23년말 기준) >

(단위: 명, 년)

기관	인원	기간주)	파견사유(담당업무)
대통령비서실	5	0.9~2.9	· 대통령비서실 업무 지원
법무부	2	1.2~1.9	· 인사정보 관련 업무 지원
국무총리실	4	0.9~1.9	· 정책 관련 내용 제언, 청취 등
금융위	8	0.9~1.9	· 주요 부서(과) 업무 지원(민원처리, 법령해석 등)
기재부	1	0.9	· 국제금융 현안(금융규제 등) 관련 업무지원 등
행안부	1	1.5	· 새마을금고 감독, 검사 지원 등
권익위	2	0.9	· 금융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민원상담 등
감사원	2	0.9	· 감사대상 기관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업무 등
검찰	18	0.1~1.9	· 불공정거래 등 금융 범죄, 기타사건 수사지원 등
경찰	2	0.9~1.9	· 금융수사 사건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
국토부	1	0.9	·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수사업무 지원 등
지자체	7	0.8~0.9	· 금융 관련 자문, 금융민원 상담, 대부업 감독지원 업무 등
한은	1	0.9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금융시장 안정화 관련)
예보	1	0.9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공동검사, 부실저축은행 업무처리 관련)
한국거래소	1	0.9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불공정거래 시장감시, 심리·조사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	1	1.9	·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 및 중소기업대출 불공정행위 접수 등
서민금융진흥원	1	3.9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불법사금융 대응 관련)
국제금융센터	1	0.1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국제금융시장 동향 분석 관련)
보험개발원	1	0.9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보험산업 주요 현안 관련)
숭실대학교	1	2.9	· 금융감독 관련 강의 실시 등
코스닥협회	1	1.9	· 업무 관련 자문(회계 및 공시 관련)
공인회계사회	1	0.9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감사인 감리업무 관련)

기관	인원	기간주)	파견사유(담당업무)
금융연수원	1	1.9	· 금융감독 업무 관련 자문 및 강의 실시 등
금투협회	1	0.9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 (자율규제, 위탁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2	0.4~0.5	· 새마을금고 감독, 검사 지원 등
합계	67		

주) 파견 시작일부터 파견종료일(예정일)까지 기간(단위 : 년)

○ 업무협조 및 기관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에 일부 인력을 파견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본질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타 기관에 대한 인력파견 필요성[92] 및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금융기관분담금 반환 관련 규정 정비 필요

금융기관 분담금 반환 규정의 하위법령 형식이 부적절하고,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반환 근거 및 세부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등으로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분담금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92) 특히, 금융감독업무 관련 강의 실시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숭실대학교, 금융연수원 파견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금융기관 분담금의 분담 요율 및 반환 관련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법규성이 없는 금융위원회 공고로 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금융위원회법」 제47조와 「자본시장법」 제442조는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납부 근거를 마련하면서,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 이에 따라 각 시행령은 분담금의 분담요율과 한도 및 반환을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하였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금융위원회 공고의 형식으로 마련하였음.[93]

- 당초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법규성이 있는 금융위원회 고시였으나, 2019년 1월 31일부터 해당 고시를 대신하여 금융위원회 공고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담은 법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행정규칙은 범규범을 보충하기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어 발령하는 고시 형식으로 발령해야 할 것임.[94][95]

93)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 2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매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매년 공고하고 있음.

94)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고시 등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인정되며, 고시와 유사한 용어로 공고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95)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어떤 사항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규범성을 갖거나 구속적 성격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계속적·장기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규정되는 것이 적절한 반면, 공고는 법령이 정하는 바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실

○ 따라서 금융기관 분담금의 분담 요율 및 반환 관련 사항을 정하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공고의 형식이 아닌 고시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 둘째,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 근거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분담금은 「금융위원회법」에 따른 감독분담금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발행분담금으로 구분되며,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분담금(감독+발행)은 금융감독원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에서 금융감독원 운영경비 용도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총분담금액이 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수입초과액 전액과 지출불용액 중 일부[96]를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97]

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내용도 규범성이 없거나 단순 사실을 알리는 비구속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시적 또는 단기간 동안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적절함 (법제처, 고시 및 공고의 구별 기준에 관한 검토, 2014)

96) 지출불용액× 감독분담금/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

97)「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분담금)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검사대상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합계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이 총자산금액에 1만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만분의 3으로 한다) 범위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영역별로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재원,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해당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 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2. 법 제38조제2호의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3. 법 제38조제3호의 검사대상기관과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관

○ 그러나,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반환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98]에서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반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와 달리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납부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초과분담금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분담금(감독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담금 분담요율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과 합산하여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7. 29.>

1.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
2.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금융감독원 운영경비 용도의 출연금에 한한다)
3. 법 제46조제5호에 따른 수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제외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총분담금액”이라 한다)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

1. 총분담금액에 제3항제2호·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 -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 제1호의 금액) ÷ (총분담금액 - 제1호의 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와 반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3. 15.>

9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등) ①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 수리 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2
2. 제1호 외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천분의 1(일괄신고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

②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발행) 납부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시행령과 차이가 있음.

○ 실제 반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는 수입초과액과 지출불용액을 분담금 납부기관의 납부비율에 따라 반환하였으나, 2023년부터 수입초과액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게만 반환하고 지출불용액은 분담금(감독+발행) 납부기관에게 납부비율에 따라 반환하는 것으로 제도개선하였음.

○ 이와 같이 시행령에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분담금 반환 규정이 없고, 금융위원회 고시와 실제 분담금 반환제도가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분담금 반환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된 '공공기관 공시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금융위원회 고시)을 개정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세부항목을 개선하는 등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99]은 금융감독원에 대

9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①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예산 및 결산 등의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공시사항을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100](금융위원회 고시)을 마련하였음. 금융위원회는 당시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하 '공공기관 공시기준')'에 따라 세부 공시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별표1]의 경영공시 세부항목 및 공시주기도 이에 따른 것임.

○ 이는 금융감독원에게 공공기관에 준하는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공시를 통해 효율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101][102].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항목을 공시하고 있음.

□ 그런데 그 이후 '공공기관 공시기준'은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되었음. 2021년 이후 기획재정부[103]는 공공기관 공시

---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0) [시행 2018. 11.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31호, 2018. 11. 22., 제정]

1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경영공시를 해야 함(법 제11조)

102) 2021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나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금융감독원의 지정을 유보하였음.

10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C(사회, 환경, 지배구조) 대폭 확대한다.」, 2021.3.4.

항목에 ESG,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항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① 안전 및 환경 항목, ② 사회공헌활동, ③ 상생협력, ④ 일가정양립 등 관련 항목을 대폭 신설·보완하였음[104].

□ 그러나 금융위원회 고시는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아 공시항목이 변화하지 않으면서,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과 달리 ESG,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를 하지 않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현행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공시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금융감독원 공시항목을 규정할 당시에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변화된 공공기관 공시항목을 금융감독원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고시를 개정하여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항목을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의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하는 등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104) 공시항목은 사회적 요구의 변화를 반영하여 노동조합('09년), 일가정양립('15년), 안전('19년) 등이 추가되었음.

제3장 공적자금상환기금

Ⅰ. 개 요

1. 수입 · 지출 결산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및 부실채권정리기금[105](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해당 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목적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법」[106]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3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음. 한시법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107] 공적자금상환기금 역시 이 효력 만료일까지 유효함.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한 채무 상환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발행자금 49조원을 예수받아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5.7조원)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3.3조원)에 각각 출연하였음. 이후 동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받은 49조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105)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12.11.22일 운용을 종료하고, 2013.2.22일 잔여재산을 반환함.

10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07)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참고 : 2002년 공적자금 상환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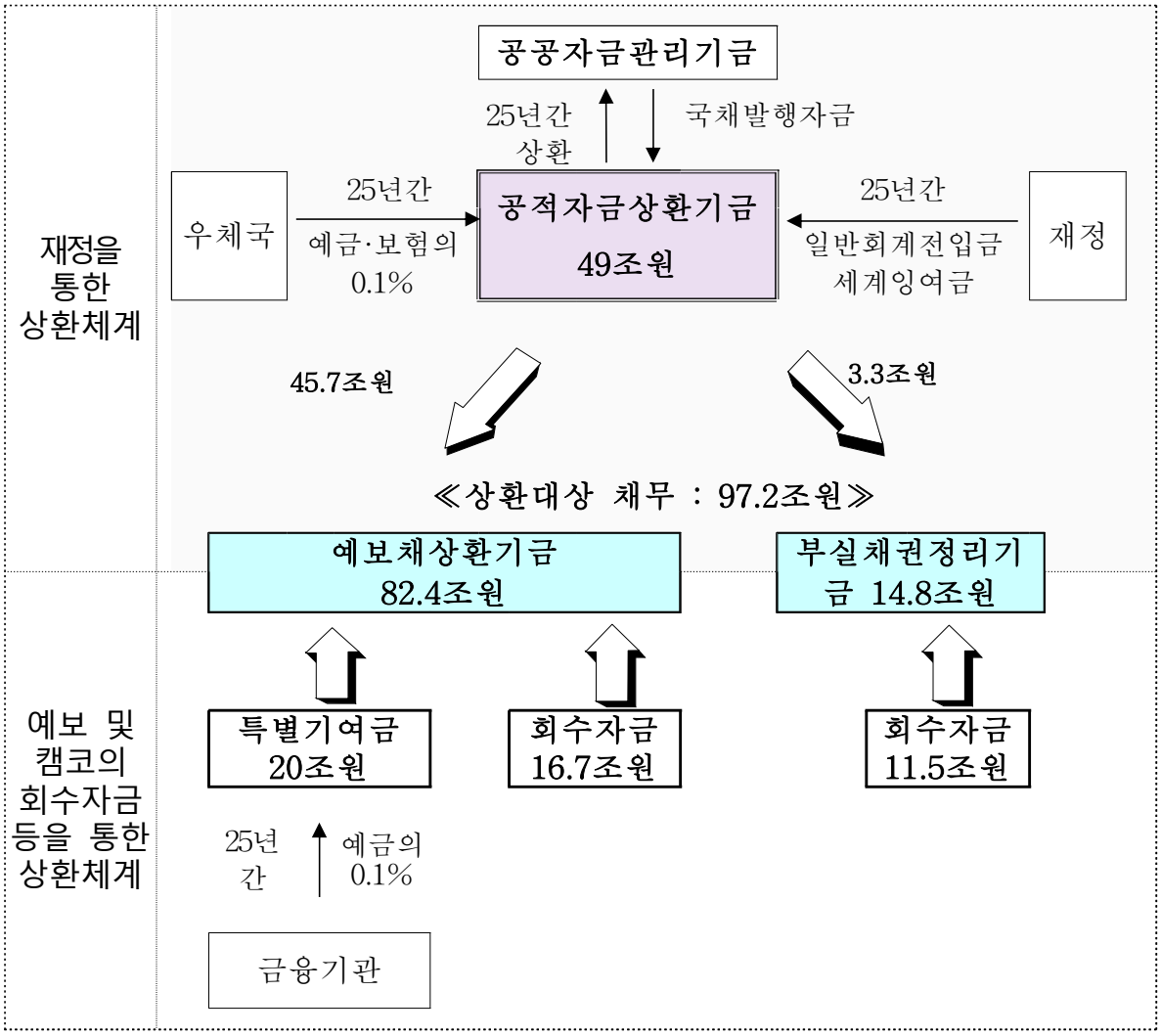

주 1)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투입한 자금 중, 2002년 말 기준 69조원(상환대상 채무 97.2조원 - 회수자금 28.2조원)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고, 총 69조원 중 20조원은 금융회사가, 나머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수립함.

2) 2003년~2027년까지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매년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 정부 부담분 49조원은 재정에서 매년 2조원씩 출연하여 상환하도록 하였음.

3)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 부담분(49조원)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및 부실채권정리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시 지원한 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국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움.

□ 202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각각 8조 8,833억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음.

○ 수입실적은 경상이전수입(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출연금 반환) 2조 6,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 6,843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039억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전입금 1,107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조 1,242억원 등임.

<2023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A)	2023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자체수입	2,403,233	2,618,351	2,618,351	2,601,997	99.4	8.3
- 재산수입	3,233	323	323	1,463	452.9	△54.7
- 재고자산매각대	-	18,028	18,028	534	3.0	순증
- 경상이전수입	2,4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100.0	8.3
정부내부수입	4,704,514	8,400,961	6,396,961	6,223,109	97.3	32.3
- 일반회계전입금	2,600,000	2,160,000	2,160,000	303,860	14.1	△88.3
- 세계잉여금	1,997,028	-	-	1,684,340	-	△15.7
- 특별회계전입금	107,486	112,757	112,757	110,705	98.2	3.0
- 공자기금예수금	-	6,128,204	4,124,204	4,124,204	100.0	순증
여유자금회수	1	-	-	58,193	-	5,819,200.0
합 계	**7,107,748**	**11,019,312**	**9,015,312**	**8,883,298**	**98.5**	**25.0**

(자료: 금융위원회)

○ 지출실적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 8조 3,456억원, 그 예수이자 상환 5,377억원 등임.

<2023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A)	2023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금융정책(전입금환급)	79	-	-	-	-	순감
정부내부지출	7,049,474	11,001,030	8,997,030	8,883,281	98.7	26.0
- 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6,402,465	10,342,600	8,345,572	8,345,572	100.0	30.3
-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647,009	658,430	651,458	537,709	82.5	△16.9
기금운영비	2	80	80	5	6.3	150.0
여유자금운용	58,193	18,202	18,202	12	0.1	△100.0
합 계	7,107,748	11,019,312	9,015,312	8,883,298	98.5	25.0

(자료: 금융위원회)

2. 재무제표

□ 2023년 자산은 2022년에 비하여 441억원이 감소한 584억원이며,

○ 부채는 유동부채(7조 7,061억원) 및 장기차입부채(20조 4,203억원)로 구성됨.

○ 순자산은 △28조 680억원으로 2022년 말 △32조 2,391억원 대비 4조 1,711억원 증가함.

<공적자금상환기금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12	58,374	△58,362	△100.0
	투자자산[108]	58,372	44,070	14,302	32.5
	자산계	**58,384**	**102,444**	**△44,060**	**△43.0**
부 채	유동부채	7,706,080	8,454,150	△748,071	△8.8
	장기차입부채	20,420,276	23,887,410	△3,467,134	△14.5
	장기충당부채	-	-	-	-
	부채계	**28,126,356**	**32,341,560**	**△4,215,205**	**△13.0**
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28,067,971	△32,239,116	4,171,145	12.9
	순자산계	**△28,067,971**	**△32,239,116**	**4,171,145**	**12.9**

(자료: 금융위원회)

108) 부실채권정리기금(2013.2.22. 청산)으로부터 반환받은 현물잔여재산(대우조선해양 주식)으로 2013년 중 9,569,838주를 매각함에 따라 보유중인 잔여 주식 2,325,577주에 해당하는 자산

□ 2023년도 중 재정운영결과는 △2조 1,829억원으로, 전년 대비 3,102억원 감소함.

○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대비 238억원 감소한 △143억원임. 비배분비용[109]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비용 등 5,439억원으로 전년대비 847억원 감소하였고, 비배분수익[110]은 여유자금운용수익 등 18억원으로 전년대비 16억원 감소함. 또한, 비교환수익[111]은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 1,107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잉여금 전입 2조 6천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2,033억원 증가함.

<공적자금상환기금 재정운영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A)	2022(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프로그램순원가	△14,302	9,535	△23,837	△250.0
Ⅱ.관리운영비	5	2	3	150.0
Ⅲ.비배분비용	543,872	628,569	△84,697	△13.5
Ⅳ.비배분수익	1,815	3,415	△1,600	△46.9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527,760	634,691	△106,931	△16.8
Ⅵ.비교환수익 등	2,710,705	2,507,407	203,298	8.1
Ⅶ.재정운영결과(Ⅴ-Ⅵ)	**△2,182,945**	**△1,872,716**	**△310,229**	**△16.6**

(자료: 금융위원회)

109) 비배분비용이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을 말함.

110) 비배분수익이란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말함.

111)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함.

□ 2023년도 순자산은 △28조 68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1,711억원 (12.9%) 증가함.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A)	2022(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기초순자산	△32,239,116	△38,708,860	6,469,744	16.7
Ⅱ.재정운영결과	△2,182,945	△1,872,716	△310,229	△16.6
Ⅲ.조정항목	1,988,200	4,597,028	△2,608,828	△56.8
Ⅳ.기말순자산 (Ⅰ-Ⅱ+Ⅲ)	**△28,067,971**	**△32,239,116**	**4,171,145**	**12.9**

(자료: 금융위원회)

Ⅱ. 검토의견

1.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 예수금[112]: 기금 청산 일정에 맞춘 안정적인 전입금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일반회계전입금”은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원금기준)을 일반회계로부터 25년간 지원받아, 공적자금상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계획현액은 2조 1,600억원이었으나, 수납액은 3,039억원에 불과하여 계획현액 대비 수납률은 14.1%에 불과함.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전입금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목명·세목명	2023						2024
	계획액		계획현액(B)	징수결정액(C)	수납액(D)	수납률	계획액
	당초	수정(A)					
일반회계전입금	2,160,000	2,160,000	2,160,000	303,860	303,860	14.1	2,500,000

(자료: 금융위원회)

□ “기금 예수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 원리금 상환재원 중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 재원을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으로 조달하는 사업임.

112) 세부사업명: 일반회계전입금(91-911)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94-943)

□ 2023년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조 1,242억원을 조달받음.

<2023회계연도 기금 예수금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목명·세목명	2023					2024
	계획액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계획액
	당초	수정(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6,128,204	4,124,204	4,124,204	4,124,204	4,124,204	3,992,611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기금 청산 일정에 맞춘 안정적인 전입금 필요

2023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금 상환을 위해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았는데, 이 경우 이자 등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향후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으로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를 유지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03년 설치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9조원을 예수받아, 공적자금 중 회수가 어려운 정부보증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와 부실채권정리기금채) 69조원 중 정부부담금 49조원을 국채로 전환[113]하여 상환하였고, 이후 일반회계전입금 등 재정을 통해 매년 2조원씩(2002년 현가 기준) 2003년부터 2027년

113) 국채전환 : ('03년) 13조원, ('04년) 12조원, ('05년) 12조원, ('06년) 12조원

까지 25년간 동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현세대 내에 공적자금의 부채 상환을 완료하기로 계획하였음.

□ 그런데,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2조원대의 금액이 계획현액 대비 100% 수납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3,039억원만 수납되어 계획현액 대비 수납률이 14.1%에 그침.

< 일반회계전입금 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당초	수정(A)				
'19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00.0
'2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00.0
'21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100.0
'22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100.0
'23	2,160,000	2,160,000	2,160,000	303,860	303,860	14.1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 원리금 상환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은 최근 5년간 2022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4조 1,242억원을 조달받았음.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납 연혁 >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당초	수정(A)				
’19	6,495,616	6,495,616	6,495,616	6,179,500	6,179,500	95.1
’20	8,197,270	8,197,270	8,197,270	8,019,320	8,019,320	97.8
’21	2,161,062	2,161,062	2,161,062	2,097,252	2,097,252	97.0
’22	-	-	-	-	-	-
‘23	6,128,204	4,124,204	4,124,204	4,124,204	4,124,204	100.0

(자료: 금융위원회)

□ 결국,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 원리금 상환을 위해 다시 동 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는 상황임. 이는 재정활동의 실체 없이 재정 규모만 부풀려 보이는 부작용이 있으며 이자 등 불필요한 거래비용 역시 발생함.

□ 2023년도 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약 28조원(원금)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효력 만료일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114] 정부는 이 기한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약 28조원(원금)을 상환 완료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2024년에 10.3조원, 2025년 8.4조원, 2026년 9조원, 2027년 5.4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할 계획이며, ① 보유 자산(한화오션) 매각[115], ② 신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최소화를 통한 신규 부채 및 이자 부담 최소화, ③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027

114)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15) 기금이 보유한 한화오션 주식의 2023년 평가액은 약 584억원임.

년 말까지 안정적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청산하겠다는 입장임.

< 향후 연도별 상환 계획(안)>

(단위 : 조원)

구 분	2024년(예산)	2025년(계획)	2026년(계획)	2027년(계획)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계획	10.3	8.4	9.0	5.4
잔액(원금)	21.9(추정)	13.9	5.2	-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부채 상환을 위한 최근 5년간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수입액이 4조 2,485억으로 나타나, 청산까지 남은 4년 간 채무잔액 약 28조원(연평균 7조원)의 상환 완료를 낙관하기 어려움.

< 부채 상환을 위한 수입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회계전입금	21,000	21,000	26,000	26,000	3,039
세계잉여금	385	-	10,362	19,970	16,843
우체국특별회계 전입금	961	1,034	1,067	1,075	1,10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출연금 반환	-	-	12,580	24,000	26,000
합 계	22,346	22,034	50,009	71,045	46,989
평균 수입	42,485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상환의 주요 재원[116]은 ① 일반

11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3. 제6조에 따른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회계전입금 외에 ② 세계잉여금, ③ 우체금 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 및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정산하여 돌려받는 자금인데,

○ 세계잉여금은 지방 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우선 사용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117]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므로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118]은 2023년 기준 1,107억원 수준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함.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반환받는 자금은 「예금자보호법」[119]에 따라 해당 기금의 추정 잔여재산 중 '일부'를 공적자

---

5.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7. 제9조에 따른 일시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동 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반환받은 자금

117)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18)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④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함

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년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함.

119)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어, 그 규모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차질없는 부채 상환 및 기금 청산을 위하여 향후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재계산 결과에 따른 주체별 상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 재원을 확보할 필요

재계산 결과에 따른 총 상환부담액이 2002년 상환대책 시의 부담액보다 감소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재계산 결과에 따른 주체별 상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자금 상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 중 2002년 말 기준 69조원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고, 총 69조원 중 20조원은 금융회사가, 나머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수립함.

○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2003년~2027년까지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매년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120], 정부 부담분 49조원은 재정에서 매년 2조원씩 출연하여 상환하는 계획임.

120)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0.1%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2년에 마련한 상환대책이 원활히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매 5년마다 정기 재계산을 실시하고, 재계산 시 필요한 경우 주체별 상환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21]

○ 재계산 제도는 2002년 상환대책 수립 이후 재정 및 금융권의 상환 이행실적과 재계산 시점에서의 회수예상금액 등을 감안하여 총 상환부담과 재정 및 금융권의 부담분 등을 다시 추정하는 것을 말함.

○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4차례[122]의 재계산을 실시했지만, 주체별 상환부담을 조정한 사례는 없음.

□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재정과 금융권의 총 상환부담이 2018년 재계산에서는 58.1조원(2002년 현가), 2023년 재계산에서는 58.8조원(2002년 현가)으로 나타나, 두 차례 재계산 결과 모두 당초 상환부담(69조원) 보다 감소한 수치를 나타냄.

○ 상환부담액의 감소는 회수 증가,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 저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감소 등에 기인함.

---

12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재계산제도)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으로 조성하는 자금 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2) 재계산 결과 총부담액 : 제1차('08년) 49.9조원, 제2차('13년) 55.7조원, 제3차('18년) 58.1조원, 제4차('23년) 58.8조원

< 재계산에 따른 총 상환부담액 추이 >

(단위: 조원, 02년 현재가)

구분	2002년 상환대책	2008년 재계산	2013년 재계산	2018년 재계산	2023년 재계산
기부담	-	9.2	21.9	31.1	46.2
향후부담	69.0	40.7	33.8	27.0	12.6
총부담	69.0	49.9	55.7	58.1	58.8

(자료: 금융위원회)

□ 재계산 결과에 따른 총 상환부담액(2018년 재계산: 58.1조원, 2023년 재계산: 58.8조원)이 2002년 상환대책 시의 부담액 69조원보다 감소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재계산 결과에 따른 주체별 상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자금의 상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1. 수입 · 지출 결산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정부와 금융기관[123]의 출연금, 신용보증료, 구상권회수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신규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에 대한 대위변제 등에 운용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운용주체는 농협중앙회이고, 관리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출연금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임.

□ 2023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수입실적은 1조 4,865억 4,600만원으로 당초 계획금액 2조 2,956억 7,500만원 대비 35.2% 감소하였음.

○ 동 기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으며, 2023년에는 2,117억 5,1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23년에는 351억 4,000만원을 수납하였고, 구상채권회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2조[124]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금이 법 제13조[125]에 따

123)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회원인 조합으로서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 등으로 2023년에는 835억 2,100만원을 수납하였음.

○ 보증료 수입은 기금의 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보증료로 2023년에는 636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위약금은 보증기일이 경과한 피보증채무 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인에게 기금이 보증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2023년에는 1억 3,600만원을 수납하고, 기타수입은 45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23회계연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A)	2023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자체수입	384,874	504,175	504,175	398,765	79.1	3.6
- 금융기관 출연금	197,104	203,916	203,916	211,751	103.8	7.4
- 이자수입	20,377	35,391	35,391	35,140	99.3	72.5
- 구상채권회수 등	96,761	171,802	171,802	83,521	48.6	△13.7
- 보증료수입	66,400	92,437	92,437	63,644	68.9	△4.2
- 위약금	106	174	174	136	78.2	28.3
- 기타수입	4,126	455	455	4,573	1,005.1	10.8
정부내부수입	130,000	-	-	-	-	순감
여유자금회수	1,244,299	1,791,500	1,791,500	1,087,781	60.7	△12.6
합계	**1,759,174**	**2,295,675**	**2,295,675**	**1,486,546**	**64.8**	**△15.5**

(자료: 금융위원회)

12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액의 대손(貸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12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구상권의 행사) ①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보내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023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지출실적은 사업비 4,301억 3,800만원, 기금운영비 534억 9,500만원, 여유자금운용 1조 29억 1,300만원 등 총 1조 4,865억 4,6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대비 15.5% 감소하였음.

○ 2023년 동 기금의 사업비는 보증부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4,074억 3,700만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관리비용 113억 7,100만원 등 총 4,301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음.

○ 2023년 동 기금의 기금운영비는 인건비 477억 2,900만원, 기금관리비 55억 5,000만원, 선급법인세 2억 1,600만원 등 총 534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23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A)	2023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사업비	315,865	346,030	436,461	430,138	98.6	36.2
대위변제	290,375	319,604	409,604	407,437	99.5	40.3
구상권관리비	13,828	15,182	15,182	11,371	74.9	△17.8
보증료환급	5,268	5,053	5,484	5,409	98.6	2.7
위탁사업비	3,555	3,653	3,653	3,439	94.1	△3.3
농신보IT유지비	2,839	2,538	2,538	2,482	97.8	△12.6
소송및법적절차	-	-	-	-	-	-
기금운영비	53,537	54,844	54,844	53,495	97.5	△0.1
인건비	46,949	47,770	47,770	47,729	99.9	1.7
기금관리비	6,291	6,166	6,166	5,550	90.0	△11.8
선급법인세	297	908	908	216	23.8	△27.3
회계기금간거래	-	-	-	-	-	-
기금간거래	-	-	-	-	-	-
여유자금운용	1,389,772	1,894,801	1,804,370	1,002,913	55.6	△27.8
합계	**1,759,174**	**2,295,675**	**2,295,675**	**1,486,546**	**64.7**	**△15.5**

(자료: 금융위원회)

2. 재무제표

□ 2023년 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은 2조 2,050억 7,800만원이고, 부채는 1조 1,573억 7,700만원이며, 순자산은 1조 477억 100만원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1,790,384	1,317,304	473,080	35.9
	투자자산	125,242	618,267	△493,025	△79.7
	일반유형자산	713	898	△185	△20.6
	무형자산	992	1,552	△560	△36.1
	기타비유동자산	287,747	266,798	20,948	7.9
	자산계	**2,205,078**	**2,204,820**	**258**	**0.01**
부 채	유동부채	39,720	40,396	△676	△1.7
	장기충당부채	1,111,084	983,499	127,585	13.0
	기타비유동부채	6,573	6,876	△303	△4.4
	부채계	**1,157,377**	**1,030,772**	**126,605**	**12.3**
순자산	기본순자산	5,012,047	5,012,047	-	-
	적립금 및 잉여금	△3,977,957	△3,821,452	△156,505	△4.1
	순자산조정	13,611	△16,547	30,158	182.3
	순자산계	**1,047,701**	**1,174,048**	**△126,347**	**△10.8**

(자료: 금융위원회)

○ 2023년 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2억 5,8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단기금융상품 등) 증가에 기인함.

○ 2023회계연도 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부채는 1조 1,573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66억 5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장기충당부채 1,275억 8,500만원 증가에 기인함.

○ 2023회계연도 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순자산은 1조 477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63억 4,7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증보조비용 증가 등 손익저하에 따른 순자산 감소에 기인함.

□ 2023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 결과는 1,565억 500만원 적자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 152억 7,100만원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1,412억 3,400만원 증가한 것임.

○ 2023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 결과 적자규모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전년대비 프로그램순원가 1,957억 9,200만원 증가 때문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프로그램 순원가	429,833	234,041	195,792	83.7
1. 프로그램 총원가	491,492	295,898	195,594	66.1
2. 프로그램 수익	△61,659	△61,857	198	0.3
Ⅱ. 관리운영비	7,116	8,135	△1,019	△12.5
Ⅲ. 비배분비용	695	3,865	△3,170	△82.0
Ⅳ. 비배분수익	69,388	33,665	35,723	106.1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368,256	212,375	155,881	73.4
Ⅵ. 비교환수익 등	211,751	197,104	14,647	7.4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56,505**	**15,271**	**141,234**	**924.9**

(자료: 금융위원회)

□ 2023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말 순자산은 1조 477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기말 순자산 1조 1,740억 4,800만원 대비 1,263억 4,700만원 감소하였음.

○ 동 기금의 기말 순자산의 증감액이 1,263억 4,700만원 감소한 것은 재정운영표 상 재정운영결과 증가가 주요 요인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기초순자산	1,174,048	1,079,165	94,883	8.8
1. 기본순자산	5,012,047	5,012,047	-	-
2. 적립금 및 잉여금	△3,821,452	△3,936,181	114,729	2.9
3. 순자산조정	△16,547	3,299	△19,846	△601.6
Ⅱ. 재정운영결과	156,505	15,271	141,234	924.9
Ⅲ. 조정항목	30,158	110,154	△79,996	△72.6
Ⅴ. 기말순자산(Ⅰ-Ⅱ+Ⅲ)	**1,047,701**	**1,174,048**	**△126,347**	**△10.8**

(자료: 금융위원회)

Ⅱ. 검토의견

1. 총괄: 기금 건전성 관리방안 마련 필요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결산 개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2023년도 기본재산은 전년 대비 1,264억원 감소(△10.8%)한 1조 477억원, 보증잔액은 전년 대비 4,568억원이 증가(2.7%)한 17조 6,420억원으로, 이에 따른 운용배수[126]는 전년 14.6배에서 16.8배로 증가하였음.

<2023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22(A)	2023(B)	증감 (B-A)	증감율(%)
기본재산(A)	11,741	10,477	△1,264	△10.8
보증잔액(B)	171,852	176,420	4,568	2.7
운용배수(B/A)	14.6	16.8	2.2	15.1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금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26) 보증 규모 대비 기본재산. 보증기금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운용배수가 낮을수록 기금이 건전하고 보증 여력이 큰 것으로 해석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은 기금의 운용배수 상한을 20배로 규정하고 있으며,[127] 「신용보증규정」은 추가적 보증여력 확보, 기본재산 가치변동 대응 필요성 등[128]에 따라 법정운용배수 외에 적정운용배수를 12.5배로 설정·운용하고 있음.[129]

○ 현행 적정운용배수는 바젤Ⅱ 기준 BIS비율의 규제 수준이 8%임에 착안하여 BIS비율의 역수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운용배수를 8%의 역수인 12.5배로 설정한 것임.[130]

○ 현재 보증의 한도를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 각각 15억원, 20억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나,[131] 적정운용배수 내에서는 보증한도를 개인

12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8) 적정운용배수 관리의 필요성(자료: KFR 한국펀드평가, 「적정운용배수 산정 컨설팅 연구용역」, 2020.8.)

구 분	내 용
추가적 보증여력 확보	○ 보증 상품의 다양화, 보증 수요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보증자산규모가 증가될 수 있음 ○ 계획보다 보증 자산의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운용배수를 법정수준 이하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기본재산 가치변동에 대응	○ 기본 재산은 경기 변동,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평가금액이 변동할 수 있음 ○ 극단적으로 기본 재산의 평가금액이 하락하더라도 보증 배수가 법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법정 수준 이하의 보증 배수 유지 * 이러한 필요성은 Basel III에서 자본보전완충자본 2.5%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임
보증자산의 질적변화에 대응	○ 기본 재산은 대위변제의 재원으로서 보증 자산의 사고율 증가, 대위변제 증가시 기본 재산의 유출 및 감소가 불가피함 ○ 운용배수의 분모항에 해당하는 기본 재산의 감소는 운용배수를 급격히 증가시킴 ○ 이러한 보증 자산의 부실화 상황에서도 법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법정 수준 이하로 관리되어야 함

129) 「신용보증규정」
제12조(보증총한도)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증총액 한도의 적정한 수준을 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증총액한도의 적정한 수준은 12.5배로 한다.

130) 농신보가 의뢰하여 KFR 한국펀드평가가 수행한 「적정운용배수 산정 컨설팅 연구용역」(2020.8.)에서는 산정방법과 시나리오에 따라 11.41배~16.81배의 적정운용배수를 소개하고 있음.

13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과 법인 각각 30억원, 70억원까지 확대하는 예외보증을 운용하고 있음.

□ 한편, 농신보 운용배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금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1조 6천억원 반환 등에 따른 기본재산[132]의 감소 및 보증사업 활성화에 따른 보증잔액의 증가로 2019년부터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2023년 운용배수는 16.8배, 2024년 6월말 기준 운용배수는 17.3배 수준으로 적정운용배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수입	정부출연금	△3,000	△2,000	△2,000	1,000	1,300	1,300	0	300
	금융기관출연금	1,222	1,240	1,269	1,386	1,833	1,971	2,118	1,069
	보증료,이자수입등	1,114	1,085	1,042	957	810	756	1,610	593
	계	△664	325	311	3,343	3,943	4,027	3,728	1,962
지출	보증보조비용	746	1,585	1,910	1,182	468	571	1,263	116
	구상채권상각비	1,466	2,125	2,668	2,197	1,896	1,849	3,104	1,543
	관리업무비 등	741	666	590	566	633	660	626	292
	계	2,953	4,376	5,168	3,945	2,998	3,078	4,993	1,941
기본재산(A)		19,357	15,306	10,449	9,847	10,792	11,741	10,477	10,497
보증잔액(B)		133,968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182,089
운용배수(B/A)		6.9	9.7	15.4	16.7	15.2	14.6	16.8	17.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업자등이 개인인 경우: 15억원 2. 농림수산업자등이 법인인 경우: 20억원

132) 기본재산은 전년도 기본재산과 당기순익금,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됨.

□ 이와 같이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를 초과하여 법정 운용배수에 근접함에 따라 향후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 기능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 확보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증잔액 관리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2024년 5월 전국 농신보 여신 담당을 대상으로 공문[133]을 발송하여 향후 갱신보증 시 모든 법인에 대하여 보증잔액을 10% 이상 해지(감액)한다는 신용보증업무방법 개정사항을 안내[134]하였으나, 7월에 영세한 중소기업의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인지하여 개정된 규정을 다시 당초의 규정으로 환원하는 등 보증업무에 혼선이 있었음.

○ 한편,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을 넘어선 2019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예외보증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금융위원회는 매년「신용보증규정」[135]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외보증 운용기한을 연장

133)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업무방법 개정 알림(법인 갱신보증심사)」, 2024.5.29.)

134)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갱신보증 시점에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잔액의 10% 이상 해지(감액)	○ 갱신보증 시 모든 법인에 대하여 10% 이상 해지(감액) 원칙 (예외: 재해피해)

주: 2024년 6월 3일부터 시행.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갱신보증심사 건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10% 이상 해지(감액)을 유예할 수 있음.

(자료: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업무방법 개정 알림(법인 갱신보증심사)」, 2024.5.29.)

135) 「신용보증규정」

제15조(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피보증인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 이내로 한다.

1.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보증총한도의 적정한 수준이내에서 심의회가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한 보증

② 제1항에 의해 승인된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 중,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하고 있는 실정이며, 예외보증의 운용기한이 만료되는 2024년 8월 말 이후 이를 재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13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외보증 운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보증 한도	2022		2023		2024.6.	
		순신규	잔액	순신규	잔액	순신규	잔액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30	9	105	5	88	-	87
②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30	55	226	26	206	14	179
③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30	86	476	113	404	38	361
④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	개인 30 법인 50	178	322	148	205	24	202
⑤ 양식시설현대화 사업자	개인 30 법인 50	20	40	16	54	-	37
⑥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자	개인 30 법인 70	-	319	-	306	-	302
⑦ 안전복지형 연근해 어선 기반 구축 사업	개인 30 법인 70	-	54	49	42	20	47
⑧ 원양어업경영자금	30	-	-	-	-	-	-
⑨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자	개인 30 법인 50	-	-	-	-	-	-
⑩ 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개인 30 법인 50	27	422	-	353	-	331
⑪ 스마트팜지원사업	개인 30 법인 70	413	1,064	579	1,102	351	1,259
⑫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자	개인 30 법인 70	-	-	-	-	-	-
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자	개인 30 법인 70	-	-	-	-	-	-
⑭ 농수산식품 우수 기술 사업자	30	-	-	-	-	-	-
합 계		788	3,028	936	2,760	448	2,80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총액한도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보증총액의 한도 이내로 한다. (이하 생략)

136) 2024년 6월말 기준 예외보증 잔액은 약 2,804억원 수준임.

□ 농신보의 건전성 악화는 운용배수가 낮게 유지되었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농신보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1조 6천억원이 반환됨에 따른 기본재산 감소에 기인한 측면도 있겠으나, 기본재산 확보방안 및 보증공급 규모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를 확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농신보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출연금 반환에 따라 기본재산이 감소했던 기간(2014년~2019년) 보증잔액 증가율은 그 전후 시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재산과 보증공급 규모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농신보 운용배수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2019년 이후에도 보증대상자 및 한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자금 확대에 있어 농신보의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증잔액	192,241	178,088	151,703	129,241	119,553	105,031	91,446	85,615	86,895	94,275
증가율	0.6	△7.4	△14.8	△14.8	△7.5	△12.1	△12.9	△6.4	1.5	8.5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증잔액	101,471	110,122	121,804	133,968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증가율	7.6	5.0	6.6	10.0	11.1	8.2	2.0	△0.5	5.1	2.7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11년 이후 보증대상자 및 한도 확대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대상자 및 대상자금	천일염제조업자, 어업회사법인 보증대상자 추가	2011.09.
	농기계 임차료 보증제도 도입	2014.02.
	도시지역 가공업자 보증대상자 추가	2014.07.
	조합공동사업법인 보증대상자 추가	2014.11.
	예비농어업인 보증대상자 추가	2015.07.
	중도매인 및 산지중도매인 보증대상자 추가	2018.10.
	농촌융복합센터 사업자 보증대상자 추가	2019.07.
예외보증 및 특례·우대 보증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외보증 한도상향(개인30 / 법인50억원)	2012.04.
	농어가특별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 상향(1→2억원)	2013.08.
	선도농어업인 우대보증 확대(1→2억원)	2014.02.
	양식시설현대화, 첨단온실지원 예외보증(개인30 / 법인50억원)	2014.02.
	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보증 도입	2014.03.
	농식품 우수기술사업자 우대보증 도입	2014.03.
	농어업 전문교육이수자 우대보증 도입	2014.03.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예외보증 도입(개인30 / 법인50억원)	2015.03.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예외보증 도입(개인30 / 법인50억원)	2015.08.
	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 예외보증 한도상향(개인30 / 법인50억원)	2015.10.
	스마트팜 사업자 예외보증 한도상향(개인30 / 법인50억원)	2017.02.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 예외보증 한도상향(법인50→70억원)	2018.04.
	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1.5→3억원), 청·장년귀농창업(1→3억원), 후계농림어업인(2→3억원) 우대보증 한도 상향	2018.04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우대보증 신설	2018.04
	무허가축사 적법화, 강원 산불 간접 피해자 특례보증 신설	2019.04.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예외보증 한도상향(법인 70억원)	2019.06.
	농식품 우수기술사업자 우대보증 한도 상향(30억원)	2019.09.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우대보증 신설	2021.10.
	사료구매자금특례보증 한도 상향(2→3억원)	2022.06.
	재해대책특례보증 한도 상향(3→5억원)	2022.06.
	선도농어업인 우대보증 창업5년 이내 후계농림어업인 한도 상향(3→5억원)	2023.1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2024년도에 정부의 농신보에 대한 출연금 300억원 출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 이하로 회복되기 위해서 장기간 재정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운용배수 진입시기는 더욱 지연될 우려가 있음.

○ 농신보의 추계에 따르면, 매년 정부로부터 300억원의 출연을 받을 경우 2041년에 적정운용배수 이하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이후의 경기침체로 부실 채무자가 급증한 가운데, 최근 고금리에 따른 불건전보증[137]과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어 기금의 정상화를 위한 기간이 더욱 길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투입 예산별 농신보 운용배수 시나리오>

(단위: 억원, %)

투입예산액	'25	'26	'27	'28	'29	'30	'31	…	'34	'35	…	'41	…	'74
100억원	18.9	18.7	18.5	18.3	18.1	17.9	17.8	…	17.2	17.1	…	16.2	…	12.5
300억원	18.5	17.9	17.4	16.9	16.5	16.0	15.6	…	14.5	14.1	…	12.4		
500억원	18.1	17.2	16.5	15.7	15.1	14.5	13.9	…	12.5					
1,000억원	17.2	15.7	14.5	13.4	12.5									

주: 2025년 말 기준 농신보 전망 보증잔액(18조 1,480억원), 기본재산(9,498억원) 유지 가정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7) 불건전보증이란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등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보증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보증사고 사유로는 ①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② 채권자가 보증부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③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의한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④ 채무자에 대한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⑤ 채무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결정, 경매신청 또는 채무자의 폐업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을 들 수 있음.

<2018~2023년 불건전보증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불건전보증	331	457	807	526	789	1,053
대위변제	2,776	3,265	3,073	3,021	2,904	4,07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기금 건전성 제고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사업부처 및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신보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증공급의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특회계로부터 정부출연금 전입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기금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농신보의 운영 구조를 고려할 때, 기금 운용배수 안정화는 부처 간의 면밀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농신보 운용배수가 단기간에 안정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편성 등 기본재산의 확충방안과 보증총량 및 보증관리 강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기타경상이전수입[138] · 면허료 및 수수료[139]: 수입계획안의 연례적 과다추계에 따른 징수실적 부진 시정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구상채권 원금 및 손해금 회수, 특수채권 회수, 임차보증금 회수, 소송 및 법적절차 비용 및 공탁금 회수, 선급법인세 회수 등에 따른 수입으로, 2023년 계획현액 1,718억 200만원 중 835억 2,100만원(48.6%)이 수납되었음.

□ "면허료 및 수수료"는 보증서 발급 후 보증기간에 대해서 수취하는 수수료인 신용보증료와 보증료 납입기간 지연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인 연체보증료 수취에 따른 수입으로, 2023년 계획현액 924억 3,700만원 중 636억 4,400만원(68.9%)이 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기타경상이전수입	171,802	-	171,802	2,329,797	83,521	2,199,159	47,117	171,802
면허료 및 수수료	92437	-	92,437	63,644	63,644	-	-	92,437

(자료: 금융위원회)

138)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139) 세부사업: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연례적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계획액 산출 시 의지지표와 가중치의 적용으로 인하여 수입계획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으므로, 향후 의지지표와 가중치의 사용을 지양하여 적정 수준의 계획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수입 중 기타경상이전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는 연례적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였으며, 2023회계연도 역시 수납률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여 각각 48.6%와 68.9%에 그쳤음.

<2020~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0	127,870	2,147,975	101,367	79.3	4.7	2,002,623	43,985
2021	140,211	2,171,353	119,022	84.9	5.5	2,006,414	45,917
2022	155,205	2,202,301	96,761	62.3	4.4	2,050,350	55,190
2023	171,802	2,329,797	83,521	48.6	3.6	2,199,159	47,117

(자료: 금융위원회)

<2020~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0	77,623	64,340	64,340	82.9	100.0	-	-
2021	83,578	62,975	62,975	75.4	100.0	-	-
2022	87,986	66,400	66,400	75.5	100.0	-	-
2023	92,437	63,644	63,644	68.9	1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은 수납실적 부진은 계획액 과다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계획액 규모(1,718억 200만원)의 경우 구상채권 회수금(1,602억 6,700만원)과 기타 수입(115억 3,500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구상채권 회수금은 구상채권을 구성하는 구상채권 원금, 손해금, 특수채권의 예상 회수액에 회수 실적 제고 노력 반영을 위한 '의지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였음.

<2023년도 구상채권 회수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산출내역
구상채권 원금 회수	○ ('22말 구상채권 추정잔액 + '23년 대위변제 예상액) × ('23년 예상 회수율*) = (14,729억원 + 3,169억원) × 5.37% = 96,192백만원 * 최근 3년 평균 회수율(4.0%) + **의지지표(1.37%)**
손해금 회수	○ '23년 구상채권 원금 회수액 × '23년 구상채권 원금 대비 예상 손해금회수율*) = '23년 구상채권 원금회수(96,192백만원) × 6.76% = 6,500백만원 * 최근 3년 평균 회수율(5.4%) + **의지지표(1.36%)**
특수채권 회수	○ ('22년말 특수채권 잔액 × '23년 예상 특수채권 회수율*) + 매각이익회수액(예상매각금액 × '23년 예상매각율**) = (8,922억원 × 6.31%) + (1,309억원 × 1%) = 57,575백만원 * 최근 3년 평균 회수율(2.6%) + **의지지표(3.71%)** ** 회수실익이 낮은 법인채권 포함으로 1%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 면허료 및 수수료는 신용보증료(기중 수입보증료)[140]와 연체보증료[141] 등으로 구성되는데, 신용보증료 중 순수입보증료[142]는 보증평잔 추정액에 기금 수입제고 가중치(1.4)를 곱한 평균 수입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 최근 수납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함에도 이와 같은

140) 보증서 발급 후 보증기간에 대해서 수취하는 수수료
141) 보증료 납입기간 지연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142) 신용보증료에서 기중 환출보증료를 제외한 보증료

가중치를 매년 적용하여 수입 계획액이 과다계상되고 있음.[143]

<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산출내역
신용 보증료	ㅇ순수입보증료 + 보증료 환급(기중 환출보증료) = 87,319백만원 + 5,053백만원 = 92,372백만원 - 순수입보증료: '23년 보증평잔 추정액 × 예상 수입보증료율* = 168,000억원 × (0.37% × 1.4) = 87,319백만원 * 최근 3년 평균 수입보증료율(0.37%) × 기금 수입제고 가중치(1.4)
연체 보증료	ㅇ'23년 수입보증료 × 최근 3년 연체보증료 비율 = 92,372백만원 × 0.07% = 65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 구상채권 회수금과 면허료 및 수수료에서 각각 적용되는 의지지표와 가중치는 기금의 수입을 제고하여 기금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금융위원회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상된 수입계획에 기반한 계획액의 산출은 추후 수입결손으로 귀결되어 오히려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농신보 운용배수가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여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낙관적 수입전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구상채권 회수금과 면허료 및 수수료 계획액 산정 시 의지지표와 가중치의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수입 계획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43) 연도별 가중치: ('19)0.0 → ('20)0.51배 → ('21)0.51배 → ('22)1.2배 → ('23)1.4배 → ('24)1.32배

3. 대위변제금[144]: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대위변제금”은 피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계획액 4,096억 400만원 중 4,074억 3,700만원(99.5%)이 집행되고, 21억 6,700만원(0.5%)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위변제금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위변제금	319,604	409,604	-	409,604	407,437	-	2,167	330,30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대위변제 소요 증가에 따라 2023회계연도에 대위변제금 계획액을 변경하여 집행하였는바, 향후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44) 세부사업: 대위변제금(2432-680)

□ 대위변제금의 2023년도 계획액의 편성근거를 살펴보면, 2023년 추정 보증잔액에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 대위변제율[145]을 적용함.

<2023년도 대위변제율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2023년도 계획안 산출근거
○ 대위변제금 = '23년 보증잔액 추정 × '23년 대위변제율 = 170,591억 × 1.87% = 319,604백만원
* 보증별 최근 3년('19~21년) 평균 대위변제율(1.93%)에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의지목표 반영하여 1.87% 적용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 및 추정>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추정
보증잔액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64,995
대위변제액	2,776	3,265	3,073	3,021	3,199
대위변제율	1.86	2.03	1.87	1.85	1.94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및 유류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불건전보증과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23년도 대위변제액은 4,074억원 수준으로, 대위변제율이 2.31%까지 증가하여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18~2023년도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증잔액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대위변제액	2,776	3,265	3,073	3,021	2,904	4,074
대위변제율	**1.86**	**2.03**	**1.87**	**1.85**	**1.69**	**2.31**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5)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액

□ 이에 당초 대위변제금 계획액 3,196억원 대비 대위변제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계획액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계획액을 900억원 증액변경(+28.2%)하였음.

□ 한편, 2024년도 대위변제금 계획액은 3,30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6월까지 집행된 대위변제금이 2,044억원으로 상반기에만 이미 계획액 전체의 61.9%가 집행되었으며, 불건전보증 규모가 연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에도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증액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경기침체 및 농어업분야 매출 대비 수익성의 감소로 2023년 불건전보증 규모는 전년 대비 33.5% 증가한 1,053억원, 불건전보증 비율은 전년 대비 0.14%p 증가한 0.6%로 나타났음.[146]

- 2024년에도 불건전보증 규모와 비율이 모두 증가하여 6월말 현재 각각 1,164억원, 0.6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불건전보증[147]의 증가는 추가적인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로 이어져 기금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

146) 참고로,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른 불건전비율 성과목표는 0.39%임.

147) 불건전보증이란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등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보증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보증사고 사유로는 ①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② 채권자가 보증부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③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의한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④ 채무자에 대한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⑤ 채무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결정, 경매신청 또는 채무자의 폐업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을 들 수 있음.

가 필요할 것임.

<2018~2024년도 불건전보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보증잔액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8,018	182,089
불건전보증	368	457	807	526	789	1,053	1,164
불건전보증비율	**0.25**	**0.28**	**0.49**	**0.32**	**0.46**	**0.60**	**0.6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따라서, 농신보는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하여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인건비[148]: 비효율적 인력구조 개선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인건비”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액 477억 7,000만원 중 477억 2,900만원(99.90%)이 집행되고, 4,100만원(0.1%)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인건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인건비	47,770	47,770	-	47,770	47,729	-	41	48,965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고직급·고호봉 위주의 농신보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2019년도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는 2019년 감사원 감사 시 고직급·고호봉 위주 인력구조에 따른 과다한 인건비로 효율적 인력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구체적으로,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비율이 높고 실무자 비율이 적은 인력구성의 불균형 문제, 농협중앙회 대비 높은 농신보 직원 평균

148) 세부사업: 인건비(3277-101)

호봉 등에 따라 제한된 인건비 상황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신보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으로 직급별 인력비율을 맞추고 현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 농협중앙회장에게 농신보의 정원 기준에 맞추어 직급별 인력비율 및 현원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음.

□ 그런데, 2023년말 기준 농신보의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실무자급(5급 이하) 이상의 비율은 2019년 37.2% 대비 3.0%p 감소한 34.2%로 나타나는 반면, 중간관리자급 이상(4급 이상)의 비율은 2019년 62.8% 대비 3.0%p 증가한 65.8%로 나타나 인력구성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었음.

<2019년~2023년 농신보 인력 직급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원	비중	현원	비중	현원	비중	현원	비중	현원	비중
관리자급 (M급·3급)	54	17.1	55	18.6	50	16.5	62	21.3	71	23.6
중간관리자급 (4급)	144	45.7	140	47.5	144	47.5	135	46.4	127	42.2
소계 (4급 이상)	198	62.8	195	66.1	194	64.0	197	67.7	198	65.8
실무자급 (5급 이하)	117	37.2	100	33.9	109	36.0	94	32.3	103	34.2
계	315	100.0	295	100.0	303	100.0	291	100.0	301	100.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또한, 농협중앙회 직원과 농신보의 평균호봉을 비교해 보면, 2023년말 기준 농신보가 농협중앙회 대비 0.7호봉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9년과 비교할 때 고호봉 위주의 인력운용이 더욱 심화되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고호봉 위주의 인력운용은 중간관리자급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무자급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 비해 농신보 직원 평균호봉이 0.5호봉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신보 및 농협중앙회 직원 평균 호봉 현황>

(단위: 호봉)

구분	2019년 기준 평균호봉			2023년 12월말 기준 평균호봉		
	농신보 (A)	농협중앙회 (B)	차이 (A-B)	농신보 (C)	농협중앙회 (D)	차이 (C-D)
M급	41.9	42.0	△0.1	43.3	42.2	1.1
3급	40.3	38.0	2.3	40.4	37.6	2.8
4급	34.3	30.5	3.8	33.0	28.5	4.5
5급 이하	15.2	12.1	3.1	15.8	16.3	△0.5
가중평균	29.1	29.0	0.1	29.6	28.9	0.7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고직급·고호봉 구조의 인력으로 2023년 현원은 정원 381명 대비 80명이 부족한 301명 수준임.

□ 한편, 농신보는 2019년 이후 5급 이하 신규직원 채용으로 평균호봉을 하향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만 농협중앙회는 직원 본인의 이동희망에 기초하여 인사를 실시하고 있어 임의로 저직급·저호봉자

를 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그러나, 농신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달리 국가의 재정을 재원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신보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농신보는 인력의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기금관리비[149]: 상용임금 계획액 과다편성에 따른 집행부진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금관리비”는 농신보의 기금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액 61억 6,600만원 중 55억 5,000만원(90.0%)이 집행되고, 6억 1,600만원(10.0%)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금관리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기금관리비	6,166	6,166	-	6,166	5,550	-	616	5,736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농신보 상용임금이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농신보는 향후 기금관리비 상용임금을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는 정규직 인력 대체 등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계약직 및 전문인력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상용임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전문계약직 2명, 일반계약직 29명 등 31명[150]을 기준으로 계획액

149) 세부사업: 기금관리비(3277-201)
150) 본부 2명, 센터 27개×1명

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런데, 농신보는 2023년 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63.1% 수준인 5억 8,20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신보는 고직급·고호봉 인력구조 개선을 위하여 2019년부터 5급 이하 신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 2020년~2023년 상용직 인력을 감축운용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151]

○ 실제로, 최근 5년간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운용인력은 편성 기준 3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0명 미만(연말 기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상용임금의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매년 80% 미만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52]

<최근 5년 전문계약직 및 일반계약직 운용현황(연말 기준)>

(단위: 명)

연도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합계
	본부	센터	본부	센터	
2019	1	-	1	12	14
2020	2	-	1	-	3
2021	3	-	1	14	18
2022	2	-	2	15	19
2023	2	-	2	12	16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51) 5급 이하 신규채용 현황(명): ('19)20 → ('20)6 → ('21)5 → ('22)2 → ('23)30 → ('24 예정)20

152) 이에 대해 농신보는 2023년부터 운영 중인 퇴직자 재채용 제도로 2024년부터 집행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5년 기금관리비 상용임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당초(A)	수정			C/A	C/B
2019	860	861	861	860	100.0	99.9
2020	885	585	585	289	32.7	49.4
2021	893	893	893	501	56.1	56.1
2022	906	906	906	722	79.7	79.7
2023	922	922	922	582	63.1	63.1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농신보는 매년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31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건비에 처우개선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획액을 산출하고 있음.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예산상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행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 기금관리비 사용임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산출근거
2019	860	ㅇ2018년 상용임금(846백만원) + 처우개선분(1.8%)
2020	885	ㅇ2019년 상용임금(860백만원) + 처우개선분(2.8%)
2021	893	ㅇ2020년 상용임금(885백만원) + 처우개선분(0.9%)
2022	906	ㅇ2021년 상용임금(893백만원) + 처우개선분(1.5%)
2023	922	ㅇ2022년 상용임금(906백만원) + 처우개선분(1.8%)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따라서, 농신보는 향후 기금관리비 상용임금 편성시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추가인력은 면밀한 계획을 통해 적정한 인력 및 인건비 규모를 계상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5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Ⅰ. 개 요

1. 수입 · 지출 결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6년 1월에 설치되었음.

□ 2023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수입실적은 541억 9,800만원임.

○ 동 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153]에 따라 저축장려금 지급예정액의 1/2 이상을 정부로부터 출연받고,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출연받고 있는데, 2023년에는 각각 270억 3,300만원을 출연받았음.

15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023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A)	2023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자체수입	26,638	27,113	27,113	27,165	100.2	2.0
- 한국은행 출연금	26,615	27,033	27,033	27,033	100.0	1.6
- 이자수입	23	80	80	132	165.0	473.9
정부내부수입 (일반회계전입금)	26,615	27,033	27,033	27,033	100.0	1.6
여유자금회수	7	7	7	0	0.0	△100.0
합계	**53,260**	**54,153**	**54,153**	**54,198**	**100.1**	**1.8**

(자료: 금융위원회)

□ 2023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지출실적은 541억 9,800만원임.

○ 동 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법정장려금 지급으로, 2023년도에 541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23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A)	2023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사업비(저축장려금)	53,260	53,082	54,135	54,135	100.0	1.6
기금운영비	0	1	1	0	0.0	-
여유자금운용	0	1,070	17	63	370.6	-
합계	**53,260**	**54,153**	**54,153**	**54,198**	**100.1**	**1.8**

(자료: 금융위원회)

2. 재무제표

□ 2023년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자산총액은 6,300만원으로, 2022년말 0원 대비 6,300만원(순증) 증가함.

○ 2023년 유동자산은 6,300만원으로 이는 2023년 말 한국은행 예치금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임.

□ 2023년말 기금의 부채 14억 2,300만원은 저축기관(농·수협 및 산림조합)에 대한 2023년 12월 기준 저축장려금 정산액 미지급액(2024년 1월 정산 지급)으로, 2022년말 44억 3,500만원 대비 30억 1,200만원(67.9%) 감소함

○ 2023년 유동부채는 14억 2,300만원으로 이는 저축장려금의 미정산액인 미지급금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 것임.

□ 이에 따라 2023년말 기금의 순자산은 △13억 6,000만원으로 2022년말 △44억 3,500만원 대비 30억 7,500만원(69.3%) 증가하였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023년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63	-	63	순증
	자산계	**63**	**-**	**63**	**순증**
부 채	유동부채	1,423	4,435	△3,012	△67.9
	부채계	**1,423**	**4,435**	**△3,012**	**△67.9**
순자산	기본순자산	4,068	4,068	-	-
	적립금 및 잉여금	△5,428	△8,503	3,075	36.2
	순자산계	**△1,360**	**△4,435**	**3,075**	**69.3**

(자료: 금융위원회)

□ 2023년 중 기금의 재정운영순원가는 509억 9,100만원으로, 2022년 542억 5,500만원 대비 32억 6,400만원(6.0%) 감소함.

○ 프로그램 순원가 511억 2,300만원은 2023년 중 저축장려금 지급액 541억 3,500만원 및 2023년말 저축장려금 미정산액 14억 2,300만원에서 2022년말 저축장려금 미정산액 44억 3,500만원을 차감한 것임.

○ 2023년 여유자금운용수익인 비배분수익은 1억 3,200만원으로 2022년(2,300만원)에 비하여 1억 900만원(473.9%) 증가하였음.

□ 비교환수익 등은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540억 6,600만원)으로, 전년(532억 3,000만원) 대비 8억 3,600만원(1.6%) 증가하였음.

□ 2023년중 재정운영결과는 △30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억원 감소하였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프로그램 순원가	51,123	54,277	△3,154	△5.8
Ⅱ. 관리운영비	-	-	-	-
Ⅲ. 비배분비용	-	-	-	-
Ⅳ. 비배분수익	132	23	109	473.9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50,991	54,255	△3,264	△6.0
Ⅵ. 비교환수익 등	54,066	53,230	836	1.6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3,075**	**1,025**	**△4,100**	**△400.0**

(자료: 금융위원회)

□ 2023년말 현재 기금의 순자산은 △13억 6,000만원으로 2022년말(△44억 3,500만원)대비 30억 7,500만원(69.3%) 증가하였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기초순자산	△4,435	△3,410	△1,025	△30.0
1. 기본순자산	4,068	4,068	-	-
2. 적립금 및 잉여금	△8,503	△7,478	△1,025	△13.7
3. 순자산조정	-	-	-	-
Ⅱ. 재정운영결과	△3,075	1,025	△4,100	△400.0
Ⅲ. 조정항목	-	-	-	-
Ⅳ. 기말순자산(Ⅰ-Ⅱ+Ⅲ)	**△1,360**	**△4,435**	**3,075**	**69.3**

(자료: 금융위원회)

Ⅱ. 검토의견

1. 저축장려금[154]: 일반회계 전환 등에 대한 조속한 결정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저축장려금”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 시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541억 3,5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저축장려금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저축장려금	53,082	54,135	-	54,135	54,135	-	-	61,806

(자료: 금융위원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3년·5년 만기의 정기적금 형태로, 가입한도는 연 240만원임.

○ 저축 가입자는 만기도래 시에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2024년 1월 기준, 연 4.04%) 외에 가입대상 및 저축기간에 따른 저축장려금(연 0.9% ~ 4.8%)을 추가로 지급받게 됨.

154) 세부사업: 저축장려금(1631-30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구 분	일반농어민	저소득농어민
가입대상 (법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24년 기준 월 295,19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24년 기준 월 217,980원이하)
가입제한	타 분야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농어업 외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	
저축형태	정기적금(3년·5년 만기, 월·분기·반기 적립 방식)	
저축기관 지급금리	연 4.04% (2024년 1월기준)	

저축장려금	계약기간	이자율(%)	
		일반	저소득
	3년 만기	연 0.9	연 3.0
	5년 만기	연 1.5	연 4.8
	* 저축기간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장려금재원	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
가입한도	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
취급기관	단위농협·수협, 산림조합

(자료: 금융위원회)

□ 2023년 말 기준 총 가입계좌 수는 22만 2천계좌이며, 총 불입액은 1조 2,869억원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 >

(단위 : 계좌,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가입 계좌수	276,621	267,416	253,570	234,776	221,934
불입액(누적)	10,319	11,588	12,949	13,196	12,869
신규가입 계좌수	70,830	56,110	51,968	44,420	45,084
중도해지 계좌수	10,687	8,871	8,204	9,458	10,546

(자료: 금융위원회)

□ 동 기금은 정부 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을 재원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2023년도에는 총 541억 3,500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정부 출연금 및 한국은행 출연금 각각 270억 3,300만원, 기금운용수익금 6,900만원이 재원으로 활용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155]는 정부가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고, 한국은행이 그 나머지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1의 비율로 출연하고 있음.

< 저축장려금 재원 및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원	정부 출연금	35,395	33,872	34,112	26,615	27,033
	한국은행 출연금	35,395	33,872	34,112	26,615	27,033
	기금운용 수익	25	13	9	30	69
저축장려금 지급액		70,815	67,757	68,233	53,260	54,135

(자료: 금융위원회)

15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일반회계 전환 등에 대한 조속한 결정 필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회계 사업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예·결산심사 및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므로,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등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2023년도 수입 총액 중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이 99.8%를 차지하고,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 총액의 99.9%가 2023년도 저축장려금으로 집행되었음. 2022년도 수입·지출 실적 역시 유사한 수치를 나타냄.

○ 즉, 매년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그 재원의 대부분을 해당 연도의 저축장려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결산	비중	결산	비중
수입	이자수입	23	0.04	132	0.2
	한국은행 출연금	26,615	49.97	27,033	49.9
	정부 출연금	26,615	49.97	27,033	49.9
	정부예금회수	7	0.01	-	-
총 계		53,260	100	54,198	100
지출	저축장려금	53,260	100	54,135	99.9
	기금운영비	-	-	-	-
	여유자금운용	-	-	63	0.1

(자료: 금융위원회)

□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의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의 엄격성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됨.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한다는 점에서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와 구분됨. 또한, 기금은 예산과 달리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며, 쓰고 남은 재원을 보유하여 미래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년도 원칙 하의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이러한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예·결산심사 및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2022년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자체수입재원(한국은행 출연)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1/2 이상을 정부가 출연하여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재원과 목적사업과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단년도 예산으로 단년도 지출을 하는 기금으로 중기가용자산이 없어 기금으로서의 존치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5조[156]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외적 재정제도인 기금이 방만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였음.

□ 따라서, 동 기금과 같이 기금으로서의 존치실익이 부족한 경우 일반예산 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역시 해당 기금을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관계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157]

<2024.1. 제도개편 회의 기관별 의견>

ㅇ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및 금융위 존치 등 현행 유지가 적합하며, 일반회계 이관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및 위탁기관에 대한 검토 필요 ㅇ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전환, 소관부처 이관 등에 기본적으로 동의 ㅇ **(기획재정부)** 소관 이관은 농림부-금융위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ㅇ **(한국은행)** 재정의 화폐화[158] 우려 등 감안 시 한은 출연은 부적절 ㅇ **(국무조정실)** 국회 등은 농림부 이관, 일반회계 전환 등을 오랫동안 언급하였으며 제도개편 관련 전향적인 검토 필요

(자료: 금융위원회)

156)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157) 금융위원회는 2021년 11월, 2022년 9월, 2024년 1월에 농림부, 해수부, 한국은행 등과 제도개편회의를 하였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함.

158) 통화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을 정부의 재정 운영에 동원하는 것을 말함.

□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6장 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1. 수입 · 지출 결산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76년 6월에 설치되었으며,[159]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신용보증료, 구상권회수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신용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구상권관리, 경영지도 등에 지출함.

○ 동 기금의 운용주체는 신용보증기금이고, 감독 및 검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출연금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2023년 정부출연금 수입은 837억원임.[160]

□ 2023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의 수입실적은 10조 4,650억 6,300만원으로 계획금액 대비 84.9%를 수납하였음.

○ 금융기관 출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수입으로,[161] 2023년에는 1조 1,679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음.

---

159)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60) 본예산 837억원

16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기준대출금(은행계정 대출채권 중 가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을 제외한 금액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요율(기준요율은 22.5bp이며, 직전반기 출연금액 대비 대위변제금액에 따라 ±1~2bp 차등요율이 가감됨)을 곱하여 산출된 출연료를 수납하고 있음.

○ 구상권회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162]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금이 동 법 제30조[163]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징수하는 수입으로 2023년에는 2,541억 3,300만원을 수납하였고, 신용보증료는 기금의 보증을 받는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보증료 수입으로 2023년에는 8,588억 7,400만원을 수납하였음.

<신용보증기금 2023회계연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A)	2023년도 최초계획 (B)	2023년도 변경계획 (C)	2023년도 결 산 (D)	2023년도 수납률 (D/C)	전년대비 증감률
자체수입	2,704,957	2,808,365	2,808,365	3,158,517	112.5	16.8
- 금융기관 출연금	1,048,440	1,009,431	1,009,431	1,167,910	115.7	11.4
- 구상권회수	324,186	366,159	366,159	254,133	69.4	△21.6
- 신용보증료	854,529	929,738	929,738	858,874	92.4	0.5
- 이자수입	109,038	121,071	121,071	193,844	160.1	77.8
- 기타수입	368,764	381,966	381,966	683,756	179.0	85.4
정부내부수입	1,067,025	374,998	374,998	334,998	89.3	△68.6
- 정부출연금	1,065,000	123,700	123,700	83,700	67.7	△92.1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	250,000	250,000	250,000	100.0	순증
- 공자기금예탁이자	2,025	1,298	1,298	1,298	100.0	△35.9
여유자금회수	8,657,423	9,145,367	9,145,367	6,971,548	76.2	△19.5
합 계	**12,429,405**	**12,328,730**	**12,328,730**	**10,465,063**	**84.9**	**△15.8**

(자료: 금융위원회)

162)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 없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023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의 지출실적은 10조 4,650억 6,300만원으로 계획금액 대비 84.9%를 지출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사업비로 보증부실에 따른 대위변제금 2조 2,872억 5,500만원, 구상권관리와 보증료환급 등 기타사업비 4,157억 6,900만원 등 총 2조 7,030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로 4,078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음.

<신용보증기금 2023회계연도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A)	2023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사업비	1,725,983	3,693,515	3,735,088	2,703,024	72.4	56.6
- 대위변제	1,383,045	3,267,278	3,267,278	2,287,255	70.0	65.4
- 기타사업비	342,938	426,237	467,810	415,769	88.9	21.2
기금운영비	368,852	369,969	413,436	407,820	98.6	10.6
- 인건비	260,009	267,905	267,905	265,840	99.2	2.2
- 기타운영비	108,843	102,064	145,531	141,980	97.6	30.4
여유자금운용	10,334,570	8,265,246	8,180,206	7,354,219	89.9	△28.8
합 계	12,429,405	12,328,730	12,328,730	10,465,063	84.9	△15.8

(자료: 금융위원회)

2. 재무제표

□ 2023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은 15조 2,750억 7,800만원이고, 부채는 3조 5,362억 8,400만원이며, 순자산은 11조 7,387억 9,400만원임.

○ 2023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은 15조 2,750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15억 7,300만원(5.9%) 증가하였는데, 투자증권평가이익 증가 등으로 금융성자산이 늘고, 구상채권이 확대된 것에 주로 기인함.

○ 2023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부채는 3조 5,362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34억 9,400만원(8.4%)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화회사보증 대손율 감소 등으로 보증충당부채가 줄고, 보증료 선수수익이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함.

○ 2023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순자산은 11조 7,387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750억 6,700만원(11.1%)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 운영결과 6,711억 2,600만원 흑자와 투자증권 평가손익 4,212억 7,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함.

<신용보증기금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12,185,559	9,837,818	2,347,741	23.9
	투자자산	2,425,635	3,913,112	△1,487,477	△38.0
	일반유형자산	545,685	548,434	△2,749	△0.5
	무형자산	7,034	14,584	△7,550	△51.8
	기타비유동자산	111,165	109,557	1,608	1.5
	자산계	15,275,078	14,423,505	851,573	5.9
부 채	유동부채	619,185	680,199	△61,014	△9.0
	장기충당부채	2,850,544	3,041,313	△190,769	△6.3
	기타비유동부채	66,555	138,266	△71,711	△51.9
	부채계	3,536,284	3,859,778	△323,494	△8.4
순자산	기본순자산	16,472,650	16,472,650	-	-
	적립금 및 잉여금	△5,280,516	△6,035,342	754,826	12.5
	순자산조정	546,660	126,419	420,241	332.4
	순자산계	11,738,794	10,563,727	1,175,067	11.1

(자료: 금융위원회)

□ 2023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6,711억 2,600만원 흑자로 전년 대비 1,118억 800만원(14.3%) 감소함.

○ 2023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결과 흑자 규모가 감소한 것은, 대손상각비 증가로 인한 프로그램총원가가 확대됨에 기인함.

<신용보증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프로그램 순원가	876,028	248,871	627,157	252.0
1. 프로그램 총원가	2,150,408	1,399,153	751,255	53.7
2. 프로그램 수익	1,274,380	1,150,282	124,098	10.8
Ⅱ. 관리운영비	142,330	119,157	23,173	19.4
Ⅲ. 비배분비용	30,918	142,441	△111,523	△78.3
Ⅳ. 비배분수익	387,752	181,845	205,907	113.2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661,524	328,624	332,900	101.3
Ⅵ. 비교환수익 등	1,332,650	1,111,558	221,092	19.9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671,126**	**△782,934**	**111,808**	**△14.3**

(자료: 금융위원회)

□ 2023년 신용보증기금의 기말 순자산은 11조 7,387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기말 순자산 10조 5,637억 2,700만원 대비 1조 1,750억 6,700만원(11.1%) 증가하였음.

<신용보증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기초순자산	10,563,727	8,889,221	1,674,506	18.8
1. 기본순자산	16,472,650	16,472,650	-	-
2. 적립금 및 잉여금	△6,035,342	△7,783,276	1,747,934	22.5
3. 순자산조정	126,419	199,847	△73,428	△36.7
Ⅱ. 재정운영결과	△671,126	△782,934	111,808	14.3
Ⅲ. 조정항목	503,941	891,572	△387,631	△43.5
Ⅳ. 기말순자산(Ⅰ-Ⅱ+Ⅲ)	**11,738,794**	**10,563,727**	**1,175,067**	**11.1**

(자료: 금융위원회)

3.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

□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금융기관의 출연금과 보증료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되는데, 2023년 정부·금융기관 출연금은 1조 4,151억원으로 전년도 정부·금융기관 출연금 2조 1,763억원 대비 7,612억원 감소하였음.

○ 2023년말 기준 기금조성현황은 63조 1,713억원으로, 정부출연금(26.5%)과 금융기관출연금(35.5%)이 전체의 62.0%를 차지하고, 보증료 등 수입은 25.8%를 차지함.

<신용보증기금의 조성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이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누계(구성비)
출연금	정부	118,316	33,266	4,406	10,650	837	167,475(26.5)
	금융기관등	178,396	10,709	10,415	11,113	13,314	223,947(35.5)
	소계	296,712	43,975	14,821	21,763	14,151	391,422(62.0)
보증료[1]		131,425	6,674	7,813	8,515	8,448	162,875(25.8)
기 타[2]		62,644	3,139	2,409	2,906	6,318	77,416(12.2)
합 계		490,781	53,788	25,043	33,184	28,917	631,713(100.0)

주1) 보증수익, 사용료·수수료 수익 등
주2) 이자수입, 자산처분이익, 기타수익 등

(자료: 신용보증기금)

□ 최근 6년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1조 7,772억원 규모였던 신규보증은 2023년 15조 7,64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보증잔액은 50조 5,317억원에서 81조 6,227억원으로 61.5% 상승하였음.

○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2018년 5조 909억원 규모였으나, 2023년에는 11조 7,22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기금의 운용배수는 9.9배에서 7.0배로 감소하였음.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규보증	117,772	127,184	264,977	220,199	167,470	157,640
보증잔액(A)	505,317	522,161	671,531	785,888	833,689	816,227
기본재산(B)	50,909	53,377	81,922	88,791주)	105,482주)	117,227주)
운용배수(A/B)	9.9	9.8	8.2	8.9	7.9	7.0

주1) 총보증 기준
주2) 기본재산에서 팩토링은 제외('21년 101억원, '22년 155억원, '23년 161억원)

(자료: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규모는 2019년 1조 5,703억원에서 2023년 1조 7,20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기준 대위변제 누계액은 46조 7,210억원임.

○ 2023년도의 구상권 발생액은 대위변제 규모와 동일한 1조 7,205억원이며, 연도중 구상권 회수액은 3,156억원으로, 구상권 발생액 대비 회수율은 18.34%임.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관리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위변제		15,703	13,594	12,111	11,509	17,205
누계(A)[1]		412,791	426,385	438,496	450,005	467,210
구상권 발생액(B)		15,703	13,594	12,111	11,509	17,205
회수	연도중(C)	4,138	3,993	4,266	3,625	3,156
	누계(D)	134,360	138,353	142,619	146,244	149,400
구상권 잔액		114,466	105,279	94,237	82,962	76,344
대위변제 대비 회수율[2] (D/A)		32.55	32.45	32.52	32.50	31.98
구상권 발생액 대비 회수율(C/B)		**26.35**	**29.37**	**35.22**	**31.50**	**18.34**

주1) 누계액 중 95년 이전 자료는 확인 가능한 통계수치로 작성
주2) 구상채권 회수율=구상(특수, 포기 포함) 채권 회수 누계액/대위변제 누계액 ×100

(자료: 신용보증기금)

Ⅱ. 검토의견

1. 기타경상이전수입[164]: 팩토링 매출채권의 자금 회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연례적 과다계상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구상채권 회수금, 선급법인세 환수, 공탁금반환 등 각종 반환금 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2023년도 징수결정액 12조 5,591억 5,500만원 중 6,691억 7,000만원이 수납(수납률 5.3%)되고, 불납결손액 1조 6,487억 9,600만원, 미수납액 10조 2,411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기타경상이전수입	637,151	637,151	637,151	12,559,155	669,170	10,241,189	1,648,796	761,325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99,375	99,375	99,375	73,225	73,225	-	-	149,456

(자료: 금융위원회)

164) 수입목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는 매출채권 만기일에 팩토링[165] 매출채권 구매기업으로부터의 대금 회수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2023년도 징수결정액 732억 2,500만원 전액이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

<팩토링금융 지원 요건>

구분	구매기업	판매기업
대상채권	결제기일이 30~90일인 매출채권	
대상기업	신용등급 보통 이상인 상장법인 또는 외부감사의견 ‘적정’ 등급 중소·중견기업	구매기업과 6개월 이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
매입한도	최고 30억원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한도 상이)	최고 100억원 (매출액 규모별, 구매기업 신용도별 한도 상이)

(자료: 신용보증기금)

165) <팩토링 서비스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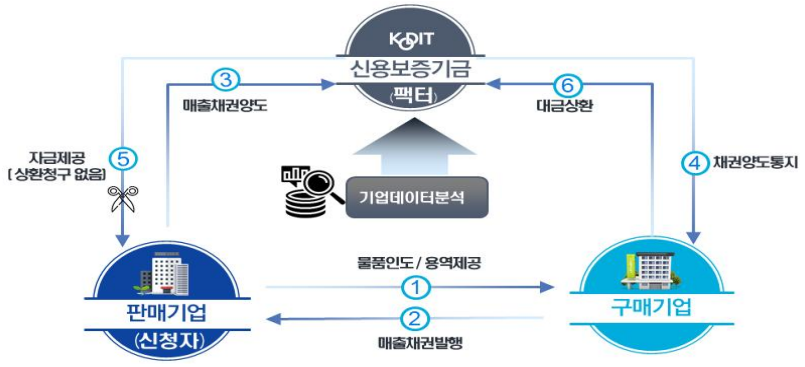

(자료: 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팩토링 매출채권 결제기일 소요에 따른 회수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타경상이전수입을 과다계상하여 매년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차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편성 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반영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팩토링금융' 사업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3년도 '팩토링금융' 사업 지출계획액(수정계획액 기준)은 1회 매출채권 매입규모 225억원을 4회전하는 것을 전제로 9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상응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의 대금 회수분이 반영되어 있음.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계획액>

수입계획액	지출계획액[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팩토링금융 매출채권 상환	팩토링금융(2431-314)
993억 7,500만원	900억원
[250억원(1회 매입액)×4회전] - [250억원×2.5%(年부실률)]	225억원(1회 매입액)×4회전(평균 만기 90일 기준)

주1) 수정계획액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최근 3년(2021~2023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팩토링금융 매출채권 상환' 항목의 계획액 대비 수납률을 보면, 2021년 34.2%, 2022년 72.8%, 2023년 73.7%로 매년 저조함.[166]

<최근 3년(2021~2023년)간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2021년	39,750	13,592	13,592	34.2
2022년	79,500	57,890	57,890	72.8
2023년	99,375	73,225	73,225	73.7

(자료: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는 팩토링 매출채권의 평균 결제기일이 69일로 매입 채권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회수되기 때문으로, 부실액·사고 발생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전액이 만기 미도래액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수입계획안 편성 시 자금 회전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예상 채권 회수액을 산정함에 따라 매년 수입계획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매년 팩토링 공급금액이 동일할 경우 자금 회전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수입계획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나, 최근 팩토링 공급금액이 증가 추세임[167]에 따라 매년 만기미도래 채권

166) 2021년의 경우 사업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2022~2023년에 비해 수납률이 낮음.
167) 팩토링금융 집행액: ('21년) 202억 4,000만원, ('22년) 595억 6,800만원, ('23년) 899억 8,000만원, ('24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점에서 반복적으로 수입결손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차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편성 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반영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계획액) 1,500억 4,900만원

2. 이차보전지원[168]: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실적 부진에 따른 과도한 사업개편 부적절 및 사후관리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630억 200만원 중 568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2%)되고, 62억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이차보전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이차보전지원	63,002	63,002	-	63,002	56,802	-	6,200	44,893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2차연장)	27,003	27,003	-	27,003	21,788	-	5,215	50
-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35,999	35,999	-	35,999	35,014	-	985	44,843

(자료: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부터 이차보전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 프로그램, 코로나19 긴급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운용하였음.

168) 세부사업: 이차보전지원(2431-313)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에 대한 신규 대출공급은 2020년 12월에 종료되었고, 2023년에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2차 연장분 및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이 추진되었음.

<이차보전지원 사업개요>

구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희망플러스 이차보전1)
	최초	1차 연장	2차 연장	
지원대상	코로나19 직·간접피해를 입은 매출액 5억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기 활용중인 소상공인 전체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
대상 대출자금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경우 신용 및 대환대출			
대출한도	3,000만원			3,000만원
지원내용	초저금리대출(1.5%) 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대출금리-1.5%)의 80%를 보전	초저금리대출(1.5%) 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대출금리-1.5%)의 70%를 보전	초저금리대출(2.5%) 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대출금리-2.5%)의 70%를 보전	평균 산출금리(6.3%)와 대출 적용금리(3.3%) 간 차액의 70%를 보전
지원기간	1년	1년	1년	2년
운용기간	'20.4.1.~ '21.12.31.	'21.4.1.~ '22.12.31.	'22.4.1.~ '23.12.31.	'22.1.24.~재원 소진 시
지원한도	3.5조원	-	-	2.4조원
이차보전 재원	603.75억원	484.18억원	341.52억원	1,000억원

주1)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2차 개편(2023.1.25.)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1)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실적 부진에 따른 과도한 사업개편 부적절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은 당초 계획 대비 대출공급 실적이 부진하자 사업개시 이후 두 차례 사업을 개편하면서 공급목표를 감축하였는데, 지원대상·지원기간의 잦은 변경은 적절하지 못하며 기존 이차보전 사업의 일부 불용을 야기하였으므로,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은 정부가 2022년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패키지[169]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이차보전지원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임. 총 4조 8,000억원의 대출공급을 전제로 2022년에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로부터 1,000억원의 이차보전 재원을 출연 받았으며 2022년 1월 24일 사업이 개시되었음.

○ 그러나 희망플러스 대출 공급실적 및 이차보전 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 말 기준 4조 8,000억원 중 1조 4,439억원의 대출만이 실행되어 한도소진율이 30.1%, 이차보전은 1,000억원 중 54억원만이 집행되어 한도소진율이 5.4%로 부진하였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두 차례 사업을 개편하였는데, 1차 개편

169) 고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4.8조원, 신용보증기금)'을,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3.8조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대출(1.4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급하여 총 10조원을 지원하고자 함.

(2022년 8월) 시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였고, 2차 개편(2023년 1월) 시 지원대상자 추가 확대 및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음. 특히 2차 개편 시에는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대출 공급목표를 4.8조원에서 2.4조원으로 감축하였음.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사업 개요>

구분	최초(2022.1.24.)	1차 개편(2022.8.8.)	2차 개편(2023.1.25.)
지원대상	○ (최초)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 ○ (1차)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상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 ○ (2차)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상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		
대출한도	1,000만원	3,000만원	
지원내용	○ (최초) 이자차액 [평균산출금리(4.5%)-대출적용금리(1.5%)]의 70%(2.1%) 보전 ○ (1차) 이자차액 [평균산출금리(4.5%)-대출적용금리(1.5%)]의 70%(2.1%) 보전 ○ (2차) 이자차액 [평균산출금리(6.3%)-대출적용금리(3.3%)]의 70%(2.1%) 보전		
지원기간	1년		2년
운용기간	'22.1.24. ~ 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한도	4.8조원		2.4조원[1]
이차보전 재원	1,000억원		

주1) 지원기간 연장(1년→2년)에 따라 지원한도 하향조정(4.8조원→2.4조원)

(자료: 금융위원회)

□ 감축된 대출 공급목표를 기준으로는 2023년 말 기준 2조 4,000억원 중 2조 2,177억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한도소진율이 92.4%, 이차보전은 1,000억원 중 404억원이 집행되어 한도소진율이 40.4%로 제고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이차보전지원 사업 집행현황(2023년 말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지원한도	지원액	한도소진율	잔여재원[1]
영세 소상공인	대출	35,000	29,032	82.9	-
	이차보전(최초)	604	506	83.8	98[2]
	이차보전(1차 연장)	484	417	86.2	63
	이차보전(2차 연장)	342	119	34.8	-
희망플러스[3]	대출	24,000	22,177	92.4	-
	이차보전	1,000	404	40.4	-

주1) '잔여재원'은 이차보전 사업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작성
2)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최초)의 잔여재원(98억원)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1차 연장)의 재원으로 사용됨
3)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은 2차 개편 기준으로 작성

(자료: 신용보증기금)

□ 먼저, 저조한 사업수요에 따라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을 위한 1,000억원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의 수가 48만명에서 8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당초 사업설계 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여 실수요에 비해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대규모 불용 방지를 위한 잦은 사업변경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음.

○ 구체적으로, 당초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에는 '희망대출플러스' 패키지에 따라 총 4.8조원의 대출을 공급하여 약 48만명(4.8조원÷대출한도 1,000만원)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저조한 사업수요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대출한도 확대로 총 2.4조원의 대출을 약 8만명(2.4조원÷대출한도 3,000만원)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조정하여 사업 수혜범위가 축소되었음.

□ 다음으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2차 연장분은 계획액 대비 불용률이 19.3%에 달하는데, 이는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지원대상에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旣이용자를 포함하도록 개편한 점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2차 연장분은 2023년도 계획액 270억 300만원 중 217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52억 1,500만원이 불용(불용률 19.3%)되었음.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조기상환 등 중도해지 증가로 지원대상 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실제로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잔액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 1조 9,280억원에서 10월 3,147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1조 6,133억원의 중도해지가 발생하였음.

<2023년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감소 추이>

(단위: 억원)

구분[1]	1월('22.4분기)	4월('23.1분기)	7월('23.2분기)	10월('23.3분기)	계
이차보전 대출잔액	19,280	18,787	10,539	3,147	-
중도해지	-	493	8,248	7,392	16,133
희망플러스 전환해지[2]	-	25	3,189	1,650	4,864

주1) 분기별 사후정산 방식임에 따라 해당 분기 익월 예산집행
주2) 직전 분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상 중 당해 분기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명세에 포함된 기업의 대출잔액을 전환 해지분으로 추정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조기상환 금액이 크게 나타난 사유를 살펴보면,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사업개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사업 2차 개편('23.1월) 시 지원대상을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에 더하여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로 확대하였음. 다만, 지원대상이 된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기이용자의 경우,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상환을 전제로 하는 대환 방식으로 제한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직전 분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상 중 당해 분기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명세에 포함된 기업의 대출잔액을 전환 해지분으로 추정할 경우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중도해지액 1조 6,133억원 중 4,864억원(30.1%)이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으로의 전환에서 기인한 금액임.

○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은 지원기간이 2년으로 길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대환의 유인이 있는데, 당초 2023년도 계획안 편성 시부터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사업개편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조기상환을 반영했더라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의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2)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산출금리의 적정성, 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의 실제 부담률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출금리와 평균 산출금리를 대조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실제 대출금리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해 개산급 형태로 지급한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지원금의 실제 정산을 수행하고, 정산 결과 평균 대출금리가 5.4% 미만일 경우 금융기관의 이차보전금 수취 분만큼을 국고로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평균 산출금리와 대출 적용금리의 차이의 70%를 부담하고, 금융기관이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음. 2차 개편 전까지는 평균 산출금리가 4.5%, 대출 적용금리가 1.5%로, 2차 개편 후부터는 평균 산출금리가 6.3%, 대출 적용금리가 3.3%로 산출[170]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율은 2.1%였음.

□ 그런데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지원내역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별 융자실시액, 이차보전율 및 지원기간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액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실제 평균 산출금리 실적치를 관리하지 않고 있음.

170)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평균 산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신용등급 1등급 예상금리 등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은행권이 추정하였음.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금융기관별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 일)

구분		융자실시액 (A)	실제 대출금리 평균[1]	이차보전 지원금리(B)[2]	지원기간 (C)[3]	실제 이차보전 지원액 (A*B*C/365)
2차 개편 전까지의 신규대출분	SC제일은행	5,823	4.50	2.10	312.91	105
	경남은행	64,222	4.50	2.10	332.17	1,227
	광주은행	12,508	4.50	2.10	332.37	239
	국민은행	134,134	4.50	2.10	338.69	2,614
	기업은행	351,756	4.50	2.10	355.24	7,189
	농협은행	102,688	4.50	2.10	328.80	1,943
	대구은행	41,424	4.50	2.10	339.49	809
	부산은행	70,192	4.50	2.10	342.94	1,385
	수협은행	447	4.97	2.10	299.35	8
	신한은행	162,098	4.50	2.10	338.35	3,155
	우리은행	169,270	4.67	2.10	324.28	3,158
	전북은행	10,150	4.50	2.10	318.34	186
	제주은행	17,141	4.50	2.10	324.37	320
	하나은행	328,049	4.50	2.10	342.80	6,470
	합계					28,808
2차 개편 후의 신규대출분	SC제일은행	3,624	6.30	2.10	119.01	25
	경남은행	37,207	6.30	2.10	170.30	364
	광주은행	4,811	6.30	2.10	110.47	31
	국민은행	132,611	6.30	2.10	159.62	1,218
	기업은행	62,611	6.30	2.10	170.36	614
	농협은행	28,445	6.30	2.10	183.28	300
	대구은행	24,432	6.30	2.10	150.27	211
	부산은행	3,842	6.30	2.10	169.97	37
	수협은행	2,165	6.92	2.10	86.09	11
	신한은행	48,629	6.34	2.10	151.14	423
	우리은행	192,149	6.57	2.10	160.43	1,774
	전북은행	3,562	6.30	2.10	166.20	34
	제주은행	11,504	6.30	2.10	143.03	95
	하나은행	115,671	6.30	2.10	160.70	1,069
	합계					6,206

주1) 각 차주별 실제 대출금리를 차주별 지원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수치로,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함

주2) 이차보전지원금리(B): 지원금리(이차보전율)을 업체별 지원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주3) 지원기간(C): 이차보전 평균 지원기간

(자료: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대상 실제 대출금리가 계획액 편성 시의 평균 산출금리(4.5%, 6.3%)보다 높을 경우 소상공인별 적용금리를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평균 산출금리로 모든 차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실제 대출금리가 평균 산출금리보다 낮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로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대출공급 결과 실제 대출금리가 평균 산출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기관별 실제 대출금리 평균치가 평균 산출금리와 동일한 4.5%(2차 개편 전), 6.3%(2차 개편 후)로 나타났다고 설명함.

○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 산출된 실제 대출금리를 파악한 후 실제 대출금리와 평균 산출금리를 대조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기준 금융기관별 심사 결과 산출된 실제 대출금리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기관별 실제 대출금리의 진위 여부 및 계획액 편성 시 반영되었던 평균 산출금리가 적정 수준이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2차 개편 후를 기준으로 볼 때,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적용금리(3.3%)와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율(2.1%)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균 산출금리인 6.3%에 비해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 산출된 실제 금리가 6.3% 미만일 경우, 은행의 실제 부담률은 30% 미만으로 낮아짐.

- 특히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2023년도 평균 산출금리 실적치가 5.61%임[171]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사업의 평균 산출금리 실적치 역시 6.3%를 하회할 개연성이 있음.[172]

- 더구나 실제 평균 대출금리가 5.4%[173] 미만일 경우 은행은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보다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더 높은 금리를 수취할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수행을 통해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됨.

171) <2023년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금융기관별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 일)

구분		융자실시액 (A)	실제 대출금리 평균[1]	이차보전 지원금리(B)[2]	지원기간 (C)[3]	실제 이차보전 지원액 (A*B*C/365)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2023년)	SC제일은행	6,222	3.80	0.91	283.64	44
	경남은행	60,671	4.31	1.27	282.80	597
	광주은행	6,894	7.07	3.20	282.92	171
	국민은행	138,489	6.23	2.61	282.44	2,797
	기업은행	145,659	5.74	2.27	282.49	2,559
	농협은행	61,582	4.63	1.49	282.03	709
	대구은행	116,091	4.47	1.38	282.28	1,239
	부산은행	3,607	6.84	3.04	282.94	85
	수협은행	264,519	5.90	2.38	282.41	4,871
	신한은행	3,275	5.57	2.15	279.92	54
	우리은행	193,967	5.93	2.40	282.42	3,602
	전북은행	7,319	5.21	1.90	280.85	107
	제주은행	3,308	6.10	2.52	284.60	65
	하나은행	282,209	5.70	2.24	282.23	4,888
	합계					21,788

주1) 각 차주별 실제 대출금리를 차주별 지원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수치
주2) 이차보전지원금리(B): 지원금리(이차보전율)을 업체별 지원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주3) 지원기간(C): 이차보전 평균 지원기간

(자료: 금융위원회)

172)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평균산출금리(6.3%)는 당시 금리인상 기조 및 역마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은행권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별도로 실제 산출금리를 관리하는 우리은행·수협은행·신한은행의 경우 금리가 6.3%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입장이나,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행 간 대출금리의 차이가 3.27%p(광주은행 7.07% - SC제일은행 3.80%)까지 나타날 수 있고, 실제 정산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평균산출금리가 적정 수준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73) 3.3%(대출 적용금리) + 2.1%(이차보전율) = 5.4%

○ 이처럼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산출금리(6.3%)의 적정성, 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의 실제 부담률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개산급 형태로 이차보전 소요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한 후라도 실제 대출금리를 파악하여 재정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해 개산급 형태로 지급한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지원금의 실제 정산을 수행하고, 정산 결과 실제 평균 대출금리가 5.4% 미만일 경우 금융기관의 이차보전금 수취 분만큼을 국고로 환수할 필요가 있음.

3. 경영지도[174]: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의 사업수요 저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영지도”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잡매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기업연수, 경영정보 제공 등 다양한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160억 8,200만원 중 159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1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경영지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경영지도	16,082	16,082	-	16,082	15,952	-	130	18,71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계획 대비 수요가 저조함에도 매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향후 실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만이 반영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위기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174) 세부사업: 경영지도(2431-307)

프로그램' 또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 비용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함.

□ 동 사업은 2022년 신규로 반영된 후 매년 42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과 2023년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컨설팅 실적이 부진함.

○ 두 해 모두 4,750건의 컨설팅을 목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에는 2,976건(62.7%), 2023년에는 3,308건(69.6%)의 컨설팅만을 제공하였으며, 2024년에도 7월 말 기준 2,168건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계획 대비 소상공인의 수요가 저조한 상황임.

<2022~2023년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제공 건수>

(단위: 건, %)

구분	계획(A)	신청	실적	달성률(B/A)
2022년	4,750	3,088	2,976	62.7
2023년	4,750	3,938	3,308	69.6

주: '계획' 건수는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 산출 시의 건수임

(자료: 금융위원회)

○ 당초 계획 대비 수요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①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의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위탁보증 및 대환보증 프로그램 이용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데, 동 프로그램의 보증해지 등으로 지원대상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② 해당 프로그램은 수탁은행을 통해 보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직접적인 사업 안내에 어려움이 있으며,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유사

사업(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으로 시장수요가 분산되는 측면이 있으나, 향후 홍보채널 확대 등을 통해 수요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그럼에도 2024년 계획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데, 2022년 이후 소상공인위탁보증의 신규 공급이 없으며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경우에도 2024년까지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원대상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신용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범위[175]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감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에는 계획액 42억 7,500만원 중 37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에도 당초 계획액은 42억 7,500만원이었으나, 연도 중 계획액을 38억원으로 수정한 후 수정 계획액 전액을 집행하였음.

175)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22~2024년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22년	4,275	4,275	4,275	3,711	-	564
2023년	4,275	3,800	3,800	3,800	-	-
'24.7월말	4,275	4,275	4,275	1,078		-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2년간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의 수요가 저조하자, 2023년에 해당 내역의 계획액을 다른 내역으로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컨설팅 단가를 인상(90만원→120만원)하였음.

- 경영지도 사업의 예결산 내역을 보면, 2023년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계획액(42억 7,500만원) 중 11.1%인 4억 7,500만원이 위탁보증 수수료, 경영·특화 컨설팅 등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는데, 실수요에 비해 예산을 과다편성한 후 잔여재원이 다른 사업에 활용된 것으로 보임.

<2022~2023년 경영지도 사업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A)	결산(B)	차이(B-A)	예산(C)	결산(D)	차이(D-C)	예산
컨설팅 용역비	5,875	5,512	△363	5,875	5,570	△305	5,875
경영·특화 컨설팅	1,600	1,801	201	1,600	1,770	170	1,600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4,275	3,711	△564	4,275	3,800	△475	4,275
신용카드,위탁보증 수수료	7,311	5,219	△2,092	7,473	7,858	385	10,061
신용카드 수수료	3,002	1,907	△1,095	3,164	1,705	△1,459	3,660
위탁보증 수수료	4,309	3,312	△997	4,309	6,153	1,844	6,401
창업종합지원 등	2,734	3,229	495	2,734	2,524	△210	2,774
계	15,920	13,960	△1,960	16,082	15,952	△130	18,710

주: '예산'은 국회 의결된 해당연도의 당초 계획액임

(자료: 금융위원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의 실수요를 면밀히 점검하여 그에 맞는 예산만을 반영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일반회계전입금[176]: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실적 저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일반회계전입금"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등에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전입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액 및 징수결정액 837억원 전액이 수납(수납률 100.0%) 되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일반회계전입금	83,700	83,700	83,700	83,700	83,700	-	-	80,000
-소상공인 대환보증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	-

(자료: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보증부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2년 9월 말 사업이 개시되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6,800억원, 2023년도 본예산으로 800억원의 출연을 받았음.

176) 수입목명: 일반회계전입금(91-911)

<소상공인 대환보증 출연금 산출근거>

구분	2022년도 제2회 추경	2023년도 예산
출연금	6,800억원	800억원
산출근거	8조 5,000억원÷12.5배	1조원÷12.5배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한 당초 취지와 달리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2023년 말 기준 보증 공급목표의 13.7%만을 공급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실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만을 반영하는 한편, 연말까지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추이를 고려하여 출연금 반납을 검토하거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전체 출연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감액편성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출연받은 재원(6,800억원)을 활용해 2022년 말까지 6조 7,500억원을, 2023년 말까지 8조 5,000억원(누계)의 보증을 공급하고자 하였음. 2023년도 본예산으로 출연받은 재원(800억원)으로는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 2024년 말까지 1조원을 추가 공급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실적을 보면, 2022년 말 기준 보증공급 규모는 2,320억 8,500만원으로 공급목표(6조 7,500억원)의

3.4%이고, 2023년 말 기준 보증공급 규모는 1조 1,653억 7,300만원으로 공급목표(8조 5,000억원)의 13.7%로 매우 부진함.

<소상공인 대환보증 분기별 공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보증공급 건수	분기별 대환대출 공급규모	보증비율	분기별 대환보증 공급실적	대환보증 공급실적(누계)*
2022년	4분기	7,170	257,872	90%	232,085	232,085
2023년	1분기	4,152	203,582		183,224	415,309
	2분기	5,712	369,716		332,744	748,053
	3분기	4,824	324,570		292,113	1,040,166
	4분기	2,590	139,119		125,207	1,165,373
2024년	1분기	2,038	115,326		103,793	1,269,166
	2분기	4,134	212,086		190,877	1,460,043

주: 보증서 발급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보증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유사 대환프로그램을 출시하여 대환대출의 수요가 분산되었고, 당초 사업구조상 짧은 상환기간(거치기간 2년 도과 시 3년간 분할상환)에 대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2023년 3월, 8월, 2024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공급실적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4년 말까지의 공급목표 9.5조원 중 2분기까지 15.4%(1.46조원)만을 공급한 점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당초	2023.3월	2023.8월	2024.3월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환대상 채무	'22.5.31.까지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22.5.31.까지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및 사업목적 가계대출	'23.5.31.까지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및 사업목적 가계대출
접수기한	2023년 말	2024년 말		
총량한도	8.5조원	9.5조원		
상환구조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10년(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개인기업) 5천만원, (법인기업) 1억원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보증료율	연 1% 고정보증료율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최초 1년간 보증료 0.7% 추가 감면 (은행 출연)
보증비율	90%			
보증방식	위탁보증(15개 은행*에 업무 위탁)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현, 부산, iM뱅크(舊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자료: 금융위원회)

○ 더구나 당초 소상공인 대환보증을 2022년 2차 추경으로 신설한 취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당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었으나, 사업 개편과정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변경한 것은 과도한 사업 확대로 보임.

□ 아울러,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을 위한 출연금 총 7,600억원은 운용배수 12.5배를 기준으로 2024년까지 9.5조원(= 7,600억원 × 운용배수 12.5배) 공급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공급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2024

년 6월 말 기준 대환보증 계정의 운용배수는 2.0배에 불과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 계정 보증공급 및 부실 현황>

(단위: 억원, %, 배)

계정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6월말
저금리 대환보증	보증잔액(A)	2,316	11,276	13,544
	신규보증액	2,321	9,333	2,947
	부실잔액	2	362	480
	부실순증액(B)	2	602	644
	부실률(B/A)	0.1	5.3	9.5
	대위변제액(C)	-	248	538
	대위변제율(C/A)	-	2.2	8.0
	기본재산(D)	6,730	7,159	6,810
	운용배수(A/D)	0.3	1.6	2.0

(자료: 금융위원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실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만을 반영하는 한편, 연말까지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추이를 고려하여 출연금 반납을 검토하거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전체 출연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감액편성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국회 시정요구사항으로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을 지양할 것(시정)' 및 '금융위원회는 향후 소상공인 대환보증과 유사한 지원사업 추진 시 과도한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집행 실적을 추후 출연금 산정에 반영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이 의결된 바 있음.

제7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Ⅰ. 개 요

1. 수입 · 지출 결산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은 「예금자보호법」[177]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기금관리주체)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를 정리하고,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예금보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운용을 개시하였음.[178]

□ 상환기금은 「예금자보호법」[179]에 따라 2027년 말 청산 예정이며, 그 자산 및 부채는 공적자금상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가 정해짐.

---

177)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178) 이와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에는 2003년 1월 1일 통상적인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이 신설되었음.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2002. 12. 26)」부칙 제9조 (상환기금의 계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제외한다)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환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계정은 2010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하고, 같은 날 그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로 이관한다.

179)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 2023년도 상환기금 수입실적은 계획금액 3조 4,630억원 대비 41.6% 증가한 4조 9,046억원임.

<2023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A)	2023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자체수입	3,232,579	2,750,391	2,750,391	2,963,109	107.7	△8.3
정부출자수입	248,100	156,451	156,451	277,801	177.6	12.0
이자·재산수입	50,529	55,085	55,085	107,902	195.9	113.5
법정부담금 등	2,374,964	2,323,213	2,323,213	2,497,406	107.5	5.2
재고자산매각대	558,986	215,642	215,642	80,000	37.1	△85.7
여유자금회수	1,113,103	712,628	712,628	1,941,526	272.4	74.4
합계	4,345,682	3,463,019	3,463,019	4,904,634	141.6	12.9

(자료: 예금보험공사)

○ 자체수입 2조 9,631억원은 보유주식 매각 등에 따른 재고자산매각대 800억원, 정부 출자금융회사의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입인 정부출자수입이 2,778억원, 이자·재산수입 1,079억원, 부보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인 법정부담금 등 2조 4,974억원으로 구성됨.

○ 여유자금회수는 2022년도 기금운용 결과에 따른 기초보유자금 1조 9,415억원임.

□ 2023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은 계획금액 3조 4,630억원 대비 41.6% 증가한 4조 9,046억원임.

<2023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A)	2023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사업비 (금융구조조정지원)	751	87,940	87,940	277	0.3	△63.1
정부내부지출(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4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100.0	8.3
기금운영비	3,405	3,448	3,448	3,563	103.3	4.6
여유자금운용	1,941,526	771,631	771,631	2,300,794	298.2	18.5
합계	**4,345,682**	**3,463,019**	**3,463,019**	**4,904,634**	**141.6**	**12.8**

(자료: 예금보험공사)

○ 사업비는 2억 7,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법적절차비 2억 2,000만원, 기타정리자문경비 5,700만원으로, 소송종결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집행률은 0.3%임.

○ 정부내부지출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180]한 것으로 2023년도에 2조 6,000억원을 전출함.

○ 기금운영비는 35억 6,300만원으로, 인건비 29억 3,000만원, 기금관리비 6억 3,300만원(전년도이월예산 3억 5,300만원 집행분 포함)이 포함됨.

○ 2023년도 기금운용 결과에 따른 기말보유자금인 여유자금운용은 2조 3,008억원임.

180) 상환기금은 2021년 8월에 공적자금 부채(82.4조원)를 전액 상환 완료하였고, 부채상환 완료 이후 법정부담금(금융회사 특별기여금) 수입 등 여유재원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고 있음.

2. 재무제표

□ 2023년말 현재 자산총액은 3조 6,997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291억원 (9.8%) 증가하였음.

○ 만기 도래 국공채의 원금 회수 등으로 투자자산 등이 359억원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말보유자금 증가로 유동자산이 3,650억원 증가한데 기인함.

□ 2023년말 현재 부채총액은 0원으로, 전년말 대비 변동사항 없음.

□ 2023년말 현재 순자산총액은 3조 6,997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291억원 (9.8%) 증가하였음.

○ 이는 재정운영결과 2조 8,994억원 흑자(+요인)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조 6,000억원(-요인)에 주로 기인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2,409,177	2,044,183	364,994	17.9
	투자자산	1,286,830	1,319,058	△32,228	△2.4
	기타비유동자산	3,730	7,373	△3,643	△49.4
	자산계	**3,699,737**	**3,370,614**	**329,123**	**9.8**
부 채	유동부채	-	-	-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부채계	**-**	**-**	**-**	**-**
순자산	기본순자산	52,306,380	52,306,380	-	-
	적립금 및 잉여금	△48,468,288	△48,767,641	299,353	0.6
	순자산조정	△138,354	△168,125	29,771	17.7
	순자산계	**3,699,737**	**3,370,614**	**329,123**	**9.8**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3년 재정운영결과는 △2조 8,994억원(흑자)으로 특별기여금수익(2조 4,929억원) 및 배당금수익(2,778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음.

□ 프로그램순원가는 대손충당금 전입 등 프로그램비용(3억원)에서 배당금수익, 지원자산 처분이익 등 프로그램수익(3,179억원)을 차감한 결과 △3,175억원이 발생하였음.

□ 재정운영순원가는 관리운영비(35억원)와 운용자산 이자수익(925억원) 등을 반영한 결과 △4,065억원이 발생하였음.

□ 비교환수익은 부담금수익 등으로 공사의 경우 특별기여금수익이 해당되며 2조 4,929억원이 발생하였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프로그램 순원가	△317,534	△359,707	42,173	11.7
Ⅱ. 관리운영비	3,473	3,319	154	4.6
Ⅲ. 비배분비용	55	2	53	2,650.0
Ⅳ. 비배분수익	92,494	42,061	50,433	119.9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406,500	△398,447	△8,053	△2.0
Ⅵ. 비교환수익 등	2,492,853	2,377,324	115,529	4.9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2,899,353**	**△2,775,771**	**△123,582**	**△4.5**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3년말 순자산총액은 3조 6,997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기초 순자산에 재정운영결과 2조 8,994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조 6,000억원, 보유주식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이익 298억원을 반영한 것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기초순자산	3,370,614	3,147,412	223,202	7.1
Ⅱ.재정운영결과	△2,899,353	△2,775,771	△123,582	△4.5
Ⅲ.조정항목	△2,570,230	△2,552,569	△17,661	△0.7
Ⅳ.기말순자산 (Ⅰ-Ⅱ+Ⅲ)	**3,699,737**	**3,370,614**	**329,123**	**9.8**

(자료: 예금보험공사)

Ⅱ. 검토의견

1. 기타경상이전수입[181]: 임차보증금 환입급 등 수입내역 적시 반영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환입한 금액 등을 반영한 것임.

□ 2023년도에는 당초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은 없었으나, 예금보험공사 임차보증금 환입분, 소송 비용 환입분 등이 발생하여 46억 8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3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 수입 실적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계획
	계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	4,608	-	-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의 임차보증금 감액분 환입분 40억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환입분[182] 5억 6,000만원 등임.

181) 세부사업: 법정부담금(59-593)

182)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 승소에 따라 기 지출한 소송 관련 비용(변호사 보수 등)을 소송상대방인 BNK 금융지주에게 청구하여 5억원 환입

2) 검토의견

(1) 임차보증금 환입금 등 수입내역 적시 반영 필요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 간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상환기금의 수입 내역을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상환기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2023년도에 총 40억원을 수납했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① 2010년 보증금 감액분 7억 3,300만원, 2020년 보증금 감액분 27억 6,700만원 등 과거 보증금 등 감액분의 재정산에 따른 38억 7,000만원과 ② 2023년도 임차계약 변경에 따른 보증금 감액분 1억 2,000만원임.

< 임차보증금 등 환입 세부내역 >

(단위: 억원)

<table>
<tr><th>구분</th><th>환입금액</th></tr>
<tr><td>(과거) 보증금 등 감액분 재정산</td><td>38.7 (원금 35.2, 기간이자 3.5)
<table>
<tr><th>구 분</th><th>2010년 감액분</th><th>2011년 감액분</th><th>2020년 감액분</th><th>2021년 감액분</th><th>합 계</th></tr>
<tr><td>사옥 임차보증금</td><td>7.3</td><td></td><td>27.7</td><td>0.01</td><td>35.01</td></tr>
<tr><td>전신전화 보증금</td><td></td><td>0.2</td><td></td><td></td><td>0.2</td></tr>
<tr><td>합 계</td><td>7.3</td><td>0.2</td><td>27.7</td><td>0.01</td><td>35.21</td></tr>
</table></td></tr>
<tr><td>(당해)보증금감액</td><td>1.2</td></tr>
<tr><td>합 계</td><td>39.9</td></tr>
</table>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공사는 상환기금으로 환입되어야 하는

공사 임차보증금 감액분이 예금보험기금으로 잘못 환입된 사실을 인지하고, 잘못 환입된 과거 임차보증금 등 감액분 35억 2,000만원과 이자 3억 5,000만원[183]을 재정산하여 상환기금으로 환입하였음.

□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1996년도에 설치되었고, 상환기금은 2002년 말까지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 상환을 위해 2003년 1월 1일 종전 예금보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여 운용을 개시하였음. 이와 동시에 통상적인 예금보험기능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은 새로이 적립을 시작함.

<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비교 >

구 분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설치연도	'96. 6. 1('03. 1. 1 새로 적립 시작)	'03. 1. 1
근거법률	예금자보호법 제24조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설치 목적	보험금 지급 등으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舊예금보험기금('02년말 이전)의 채무 상환
주요 조성재원	보험료, 출연금, 차입금, 채권 발행, 회수자금 등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상환기금채권 발행, 특별기여금, 회수자금 등
자금지원 대상	'03.1.1. 이후 보험사고 등이 발생한 금융회사	'02.12.31.이전 보험사고 등이 발생한 부실금융회사

(자료: 예금보험공사)

□ 상환기금은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기금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했기 때문에 당시 예금보험공사의 임차보증금 67억 7,600만원을 전액 부담하였음.

183) 연도별 예금보험기금 누적 운용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 따라서, 공사의 임차보증금 등이 감액된 경우 당연히 상환기금으로 환입했어야 함에도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으로 잘못 환입함에 따라 이 수입내역이 상환기금에 적시 반영되지 못하였음.

□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예금자보호법」은 두 기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84]

□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 간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상환기금의 수입내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 간 운영경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공사 임차보증금 분담 필요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운영경비를 전담인력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으나, 공사 임차보증금 분담과 관련하여 상환기금의 분담비율이 적정 분담비율 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이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 청산 전에 그 분담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은 예금보험공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185] 이에 따라 두 기금은 예금보

184)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①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제26조의4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이라 한다)은 상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85)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4.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③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험공사의 임차보증금도 분담하고 있음.

□ 2023년 말 기준 예금보험공사의 임차보증금은 37억 3,700만원인데, 이 중 상환기금은 31억 5,400만원을, 예금보험기금은 5억 8,200만원을 부담하여 상환기금 대 예금보험기금의 분담비율은 84.4 : 15.6 상태임.

< 운영경비 분담 비율 및 임차보증금 부담 비율>

구분	운영경비 분담 비율	사옥 임차보증금		
		사옥 임차보증금	기금 간 부담 금액	기금 간 부담 비율
상환기금	3%	37억 3,700만원	31억 5,400만원	84.4%
예금보험기금	97%		5억 8,200만원	15.6%

(자료: 예금보험공사)

□ 두 기금의 운영경비 분담비율은 예금보험공사의「운영경비배분규정」(예금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상환기금의 분담비율은 동 규정에 따라 상환기금의 전담인력 비율에 연동함.[186)]

○ 2023년도 상환기금 전담인력은 25명이고, 예금보험공사 총정원은 839명이므로, 상환기금의 운영경비 분담비율은 약 3%임.

□ 운영경비에 대한 상환기금의 분담비율이 3%이므로, 임차보증금에 대

---

5.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186) 「운영경비배분규정」(예금보험공사 내부규정) 제7조 (기금별 배분)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예산을 기금별로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은 상환기금에 배분하고 그 외의 비용은 예금보험기금에 배분한다.

1. 회계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중 상환기금 전담인력 관련 인건비

2. 회계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금 전담인력 비율에 연동하여 소요되는 경비

3. 회계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로서 상환기금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경비

제8조 (상환기금 전담인력 비율) ① 상환기금 전담인력 비율은 당해연도 상환기금 전담인력 정원수를 총 정원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상환기금 전담인력 비율의 소숫점 첫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한 분담비율 역시 3%가 되어야 함에도 현재 상환기금이 공사 임차보증금의 84.4%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187]

□ 상환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은 45.7조원과 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예금평잔의 0.1%) 등으로 현재 부채 상환을 완료한 상태이나, 20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을 때 체결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간 약정[188]에 따라 상환기금의 여유재원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을 위해 전출하고 있음.[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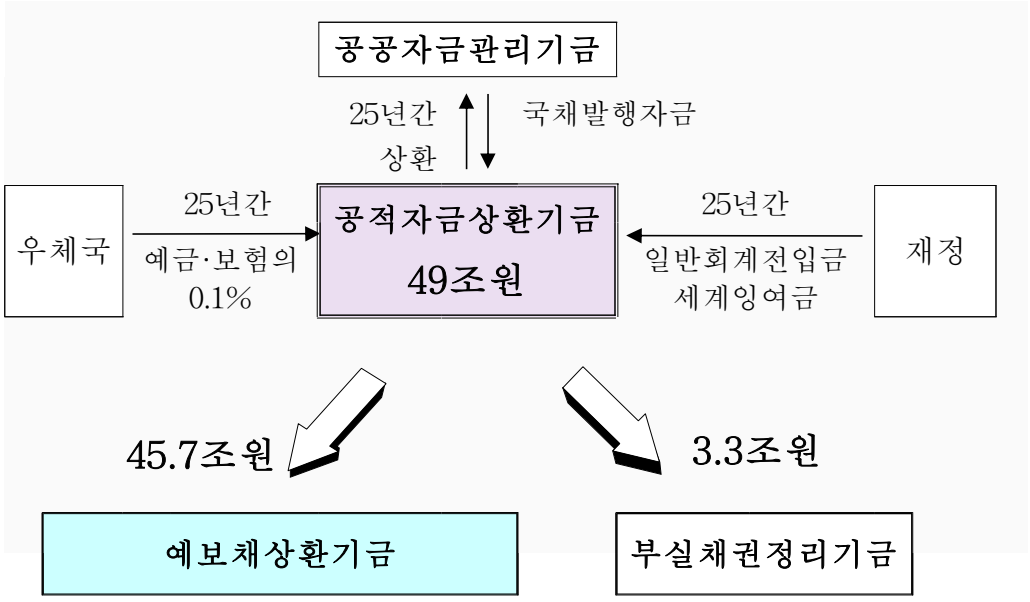

187)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2003년 이후 발생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이 전액 부담하고 있음을 설명함.

188)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의 정산에 관한 약정」2003, 제2조(출연금의 반환) 상환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계산(이하 "재계산"이라 한다) 후 또는 기금의 부채 상환과 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한 후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분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출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189)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 따라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안정적인 전출 재원 확보 및 여유 재원의 정확한 추계를 위하여 상환기금의 보유 자산을 명확히 하고, 예금보험기금 회계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임차보증금의 성격상 운영경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즉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상환기금의 2027년 말 청산 전까지 그 자산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임차보증금 분담비율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8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1. 수입 · 지출 결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금융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8년 1월부터 설치·운용되었음.

○ 동 기금은 정부[190]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신용보증료, 구상권회수금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신용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구상권 관리 등의 운용에 지출하였음.

○ 동 기금의 운용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고, 감독 및 검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 동 기금은 개인의 전세자금보증 등과 사업자의 건설자금보증 등을 수행하는 주택신용보증계정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운영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음.[191]

□ 2023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수입실적은 4조 8,252억 6,300만원으로 계획금액 대비 1.4% 감소하였음.

---

190) 주신보계정은 1988년~2007년 정부로부터 총 1조 4,820억원을 출연받은 바 있으나, 2016년~2022년 정부출연금을 회수하는 조치로 총 1조 4,8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2023년말 현재 잔여 정부출연금은 0원임.

19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 동 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와 제5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으며, 2023년에는 해당 수입으로 1조 1,615억 9,400만원을 수납하였음.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192]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 등으로 2023년에는 1,718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음.

○ 면허료 및 수수료는 기금으로부터 주택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보증료로 2023년에는 3,156억 4,700만원을 수납하였음.

<2023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 실적(총괄)>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A)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수납률 (D/C)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676,515	4,892,360	4,892,360	4,825,263	98.6	31.2
○ 자체수입	1,552,904	1,605,035	1,605,035	1,793,733	111.8	15.5
- 이자수입	65,216	90,541	90,541	144,570	159.7	121.7
- 위약금	70	134	134	77	57.7	10.0
- 금융기관출연금	1,082,414	1,015,293	1,015,293	1,161,594	114.4	7.3
- 기타경상이전수입	138,420	170,463	170,463	171,845	100.8	24.1
- 면허료 및 수수료	266,784	328,604	328,604	315,647	96.1	18.3
○ 정부내부수입	5,556	532,986	532,986	532,957	100.0	9,492.5
○ 여유자금회수	2,118,055	2,754,339	2,754,339	2,498,573	90.7	18.0

19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2023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 실적(계정별)>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A)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수납률 (D/C)	
▢ 주택신용보증계정	3,282,564	4,421,483	4,421,483	4,348,486	98.3	32.5
○ 자체수입	1,296,765	1,325,858	1,325,858	1,503,135	113.4	15.9
- 이자수입	61,922	85,125	85,125	133,848	157.2	116.2
- 위약금	70	134	134	77	57.5	10.0
- 금융기관출연금	1,003,537	930,175	930,175	1,074,015	115.5	7.0
- 기타경상이전수입	124,922	145,612	145,612	143,348	98.4	14.8
- 면허료 및 수수료	106,314	164,812	164,812	151,847	92.1	42.8
○ 정부내부수입	5,556	532,986	532,986	532,957	100.0	9,492.5
○ 여유자금회수	1,980,243	2,562,639	2,562,639	2,312,394	90.2	16.8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393,951	470,877	470,877	476,776	101.3	21.0
○ 자체수입	256,139	279,177	279,177	290,598	104.1	13.5
- 이자수입	3,294	5,416	5,416	10,722	198.0	225.5
- 위약금	-	-	-	-	-	-
- 금융기관출연금	78,877	85,118	85,118	87,579	102.9	10.0
- 기타경상이전수입	13,498	24,851	24,851	28,498	114.7	111.1
- 면허료 및 수수료	160,470	163,792	163,792	163,799	100.0	2.1
○ 정부내부수입	-	-	-	-	-	-
○ 여유자금회수	137,812	191,700	191,700	186,178	97.1	35.1
합계	3,676,515	4,892,360	4,892,360	4,825,263	98.6	31.2

(자료: 금융위원회)

□ 2023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지출실적은 4조 8,252억 6,300만원으로 계획금액 대비 1.4% 감소하였음.

○ 사업비는 주택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6,356억 3,900만원, 구상권관리비 212억 2,300만원, 보증료환급 232억 6,800만원, 사업수수료 110억 1,700만원, 담보설정비용 24억 2,400만원, 주신보·주연보IT운영 60억 2,300만원 등 총 6,995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음.

○ 기금운영비는 인건비 419억 7,500만원, 기금관리비 139억 2,600만원, 법인세 169억 3,700만원 등 총 728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23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 실적(총괄)>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A)	2023년도 최초계획 (B)	2023년도 변경계획 (C)	2023년도 결산 (D)	2023년도 집행률 (D/C)	전년 대비 증감률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676,515	4,892,360	4,892,360	4,825,263	98.6	31.2
○ 사업비	395,021	395,904	721,100	699,594	97.0	77.1
구상권관리비	11,994	12,556	23,219	21,223	91.4	76.9
보증료환급	26,997	32,188	27,327	23,268	85.1	△13.8
대위변제	337,493	330,890	649,621	635,639	97.8	88.3
사업수수료	10,413	11,021	11,984	11,017	91.9	5.8
담보설정비용	2,653	3,427	3,127	2,424	77.5	△8.6
주신보·주연보IT운영	5,471	5,822	5,822	6,023	103.5	10.1
○ 기금운영비	62,798	63,747	75,384	72,838	96.6	16.0
인건비	40,796	43,480	43,480	41,975	96.5	2.9
기금관리비	14,076	14,586	14,586	13,926	95.5	△1.1
법인세	7,926	5,681	17,318	16,937	97.8	113.7
○ 정부내부지출	232,000	-	-	-	-	순감
공자기금예탁	-	-	-	-	-	-
일반회계전출	232,000	-	-	-	-	순감
○ 여유자금운용	2,986,696	4,432,709	4,095,876	4,052,831	98.9	35.7

<2023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 실적(계정별)>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A)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집행률 (D/C)	
▢ 주택신용보증계정	3,282,564	4,421,483	4,421,483	4,348,486	98.3	32.5
○ 사업비	367,984	359,325	655,107	643,710	98.2	74.9
구상권관리비	11,241	11,766	21,776	19,920	91.5	77.2
보증료환급	26,805	27,613	23,952	20,351	85.0	△24.1
대위변제	316,767	306,100	594,445	589,067	99.1	86.0
사업수수료	9,909	9,834	10,922	10,270	94.0	3.6
주신보IT운영	3,262	4,012	4,012	4,102	102.2	25.8
○ 기금운영비	45,966	45,167	55,935	53,784	96.2	17.0
인건비	28,904	30,355	30,355	29,223	96.3	1.1
기금관리비	9,298	9,383	9,383	8,737	93.1	△6.0
법인세	7,764	5,429	16,197	15,824	97.7	103.8
○ 정부내부지출	232,000	-	-	-	-	순감
공자기금예탁	-	-	-	-	-	-
일반회계전출	232,000	-	-	-	-	순감
○ 여유자금운용	2,636,614	4,016,991	3,710,441	3,650,992	98.4	38.5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393,951	470,877	470,877	476,776	101.3	21.0
○ 사업비	27,037	36,579	65,993	55,884	84.7	106.7
구상권관리비	753	790	1,443	1,303	90.3	73.0
보증료환급	192	4,575	3,375	2,917	86.4	1,419.3
대위변제	20,726	24,790	55,176	46,572	84.4	124.7
사업수수료	504	1,187	1,062	747	70.3	48.2
담보설정비용	2,653	3,427	3,127	2,424	77.5	△8.6
주연보IT운영	2,209	1,810	1,810	1,921	106.1	△13.0
○ 기금운영비	16,832	18,580	19,449	19,054	98.0	13.2
인건비	11,892	13,125	13,125	12,753	97.2	7.2
기금관리비	4,778	5,203	5,203	5,189	99.7	8.6
법인세	162	252	1,121	1,112	99.2	586.4
○ 여유자금운용	350,082	415,718	385,435	401,838	104.3	14.8
합계	3,676,515	4,892,360	4,892,360	4,825,263	98.6	31.2

(자료: 금융위원회)

2. 재무제표

□ 2023년 말 기준 기금의 자산은 12조 1,612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하였고, 부채는 1조 1,231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1%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11조 381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9,697,273	8,559,094	1,138,179	13.3
	투자자산	2,081,386	1,503,852	577,534	38.4
	일반유형자산	1	1	-	-
	무형자산	4,134	5,728	△1,594	△27.8
	기타비유동자산	378,454	279,216	99,238	35.5
	자산계	**12,161,248**	**10,347,891**	**1,813,357**	**17.5**
부 채	유동부채	93,251	80,792	12,459	15.4
	장기충당부채	955,243	542,257	412,986	76.2
	기타비유동부채	74,650	41,150	33,500	81.4
	부채계	**1,123,144**	**664,199**	**458,945**	**69.1**
순자산	기본순자산	3,226,921	3,226,921	-	-
	적립금 및 잉여금	7,463,609	6,744,466	719,143	10.7
	순자산조정	347,574	△287,695	635,269	220.8
	순자산계	**11,038,104**	**9,683,692**	**1,354,412**	**14.0**

(자료: 금융위원회)

□ 2023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7,191억원 4,300만원 흑자로 전년도 재정운영결과인 6,982억원 1,000만원 흑자 대비 209억 3,300만원 증가함.

○ 동 기금의 재정운영결과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금융기관출연금(수익)이 전년 대비 792억원 증가한 데 기인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프로그램 순원가	608,831	215,562	393,269	182.4
1. 프로그램 총원가	869,053	486,076	382,977	78.8
2. 프로그램 수익	260,222	270,514	△10,292	△3.8
Ⅱ. 관리운영비	24,287	25,244	△957	△3.8
Ⅲ. 비배분비용	613	6,052	△5,439	△89.9
Ⅳ. 비배분수익	191,280	94,654	96,626	102.1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442,451	152,204	290,247	190.7
Ⅵ. 비교환수익 등	1,161,594	850,414	311,180	36.6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719,143**	**△698,210**	**△20,933**	**3.0**

(자료: 금융위원회)

□ 2023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기말 순자산은 11조 381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기말 순자산 9조 6,836억 9,200만원 대비 1조 3,544억 1,200만원 증가하였음.

○ 동 기금의 기말 순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23년 재정운영 결과를 7,191억 4,300만원 시현한 것에 기인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기초순자산	9,683,692	9,314,868	368,824	4.0
1. 기본순자산	3,226,921	3,226,921	-	-
2. 적립금 및 잉여금	6,744,466	6,046,256	698,210	11.5
3. 순자산조정	△287,695	41,691	△329,386	△790.1
Ⅱ. 재정운영결과	△719,143	△698,210	△20,933	△3.0
Ⅲ. 조정항목	635,270	△329,386	964,656	292.9
Ⅴ. 기말순자산(Ⅰ-Ⅱ+Ⅲ)	**11,038,105**	**9,683,692**	**1,354,412**	**14.0**

(자료: 금융위원회)

Ⅱ. 검토의견

1. 대위변제(주신보 · 주연보)[193]: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 강구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위변제” 사업은 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주택신용보증계정(이하 “주신보계정”)은 2023년 계획현액 5,944억 4,500만원 중 5,890억 6,700만원(99.1%)이 집행되고 53억 7,8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계정”)은 2023년 계획현액 551억 7,600만원 중 465억 7,200만원(84.4%)이 집행되고 86억 4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위변제(주신보)	306,100	594,445	-	594,445	589,067	-	5,379	669,400
대위변제(주연보)	24,790	55,176	-	55,176	46,572	-	8,604	31,450

(자료: 금융위원회)

193) 세부사업: 주신보운영 대위변제(2631-303), 주연보운영 대위변제(2631-303)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신보계정과 주연보계정으로 나뉘는데, 주신보계정은 개인이 주택을 건축·구입·임차·개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거나(개인보증), 사업자가 주택의 건설·임대를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거나(사업자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반환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함.

<개인보증 구조>

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림에서 “보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 구조>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연보계정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 형태로 대출(이른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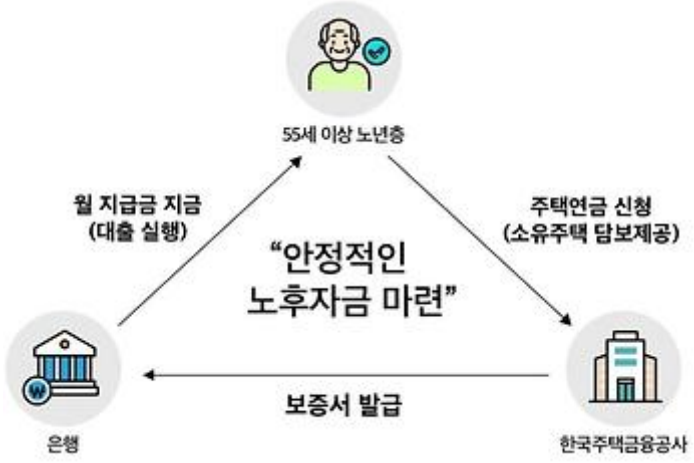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주신보계정과 주연보계정의 보증상품을 살펴보면, 먼저 주신보계정의 보증상품은 크게 개인보증, 사업자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나뉘

는데, 2023년말 기준 보증잔액은 개인보증 108조 7,086억원(83.1%),[194] 사업자보증 12조 4,586억원(9.5%), 반환보증 9조 6,557억원(7.4%)으로 개인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주연보계정은 주택연금보증 단일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말 기준 보증잔액은 22조 5,016억원임.

2) 검토의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위변제 후에도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기금재산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금융기관의 출연금, 보증료 등의 수입으로 기금재산을 조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정보증한도인 기금재산의 30배 내에서 신용보증을 수행하고,[195][196]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는 한편 기금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됨.

194) 개인보증은 다시 각 보증은 다시 전세자금보증(88조 11억원), 중도금보증(11조 4,369억원), 구입자금보증(9조 827억원) 등으로 나뉨.
195) 신용보증총액(주연보계정 제외)의 한도는 기금 기본재산과 기금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 이내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 법 시행령 제28조).
196) 2024년 3월말 기준 보증배수는 주신보계정 12.0배(적정보증배수 16.3배), 주연보계정 9.4배(적정보증배수 15.4배) 수준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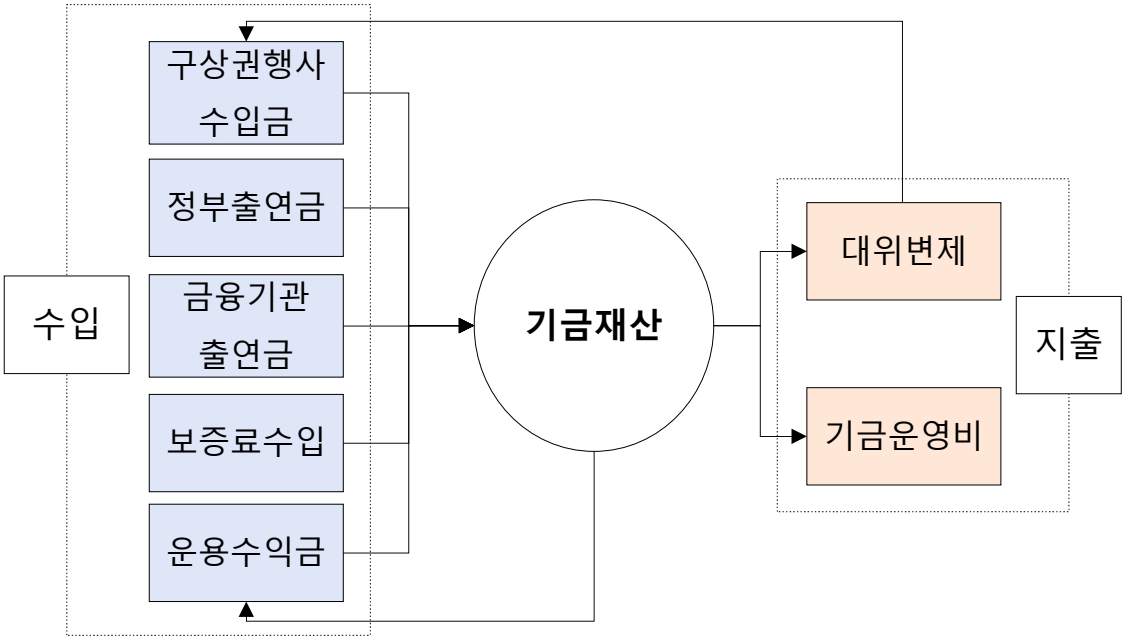

○ 이러한 구조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증가하게 되면 기금지출이 증가하여 기금재산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총액의 한도가 감소하여 신용보증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고,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우려가 있음.

□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신용보증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특성상, 기금의 최대 지출항목(여유자금운용 제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위변제로, 실제 2023회계연도에도 주신보계정의 지출액 6,974억 9,400만원 중 대위변제가 5,890억 6,700만원으로 84.5%를 차지하였고, 주연보계정의 지출액 730억 1,700만원 중 대위변제가 465억 7,200만원으로 63.8%를 차지하였음.

□ 특히, 2023회계연도에는 주택경기 위축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위변제 소요가 증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신보계정 대위변제 사업 지출액을 당초 3,061억원에서 5,944억 4,500만원(94.2% 증가)으로 조정[197]하여 그 중 99.1%인 5,890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연보계정 대위변제 사업 지출액을 당초 247억 9,000만원에서 551억 7,600만원(122.6% 증가)으로 조정하여 그 중 84.4%인 465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대위변제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증실적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보증의 대위변제액(2022년 3,053억원 → 2023년 4,983억원/+1,930억원(+63.2%))과 대위변제율(0.34%→0.57%/+0.23%p)이 크게 증가·상승하여 전체적인 대위변제액·율의 증가·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출시된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율(61억원→ 840억원/+779억원(+1,277%), 0.15%→0.87%/+0.62%p) 역시 빠르게 증가·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197) 참고로, 2022회계연도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대위변제 사업 지출 계획액을 당초 2,912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중 3,167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음.

<주신보계정 연도별 · 사업별 대위변제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위변제액	전체		2,150	1,870	1,784	2,488	2,286	3,168	5,891
	개인보증		1,840	1,864	1,781	2,461	2,242	3,099	5,035
		전세	1,789	1,813	1,689	2,386	2,166	3,053	4,983
		중도금	27	24	67	21	8	7	18
		구입등	25	27	25	55	68	40	35
	반환보증		-	-	-	-	-	61	840
	사업자보증		310	6	3	27	56	7	16
		PF	-	-	-	-	-	-	-
		건설등	310	6	3	27	45	7	16
대위변제율	전체		0.30%	0.24%	0.20%	0.24%	0.20%	0.26%	0.45%
	개인보증		0.27%	0.25%	0.21%	0.25%	0.21%	0.28%	0.46%
		전세	0.46%	0.36%	0.26%	0.30%	0.25%	0.34%	0.57%
		중도금	0.01%	0.01%	0.04%	0.01%	0.00%	0.00%	0.02%
		구입등	0.06%	0.05%	0.04%	0.09%	0.11%	0.06%	0.04%
	반환보증		-	-	-	0.00%	0.00%	0.15%	0.87%
	사업자보증		1.07%	0.02%	0.01%	0.05%	0.06%	0.01%	0.01%
		PF	-	-	-	-	-	-	0.00%
		건설등	2.15%	0.03%	0.01%	0.10%	0.11%	0.01%	0.02%

(자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또한, 대위변제에 선행하는 보증사고액·율 역시 빠르게 증가·상승하여 향후 대위변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2023년 보증사고액·율은 전 상품에 걸쳐 2022년에 비하여 2배 가량으로 증가·상승한 상황이고, 특히 PF보증과 건설등보증 등 사업자보증의 보증사고의 증가가 특징적임.

<주신보계정 연도별 · 사업별 보증사고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증사고액	전체		2,902	3,564	4,001	3,829	3,631	5,452	10,594
	개인보증		2,851	3,340	3,998	3,593	3,596	5,287	7,790
		전세	2,505	2,621	2,936	3,061	3,244	4,909	7,100
		중도금	183	491	770	219	134	212	386
		구입등	163	227	292	313	217	166	303
	반환보증		-	-	-	-	-	111	1,013
	사업자보증		51	224	3	237	35	55	1,791
		PF	-	-	-	-	-	-	360
		건설등	51	224	3	237	35	55	1,431
보증사고율	전체		0.41%	0.46%	0.45%	0.36%	0.31%	0.44%	0.81%
	개인보증		0.41%	0.45%	0.47%	0.36%	0.33%	0.48%	0.72%
		전세	0.64%	0.52%	0.46%	0.39%	0.38%	0.55%	0.81%
		중도금	0.07%	0.26%	0.50%	0.15%	0.09%	0.14%	0.34%
		구입등	0.36%	0.45%	0.53%	0.50%	0.34%	0.26%	0.33%
	반환보증		-	-	-	-	-	0.26%	1.05%
	사업자보증		0.18%	0.65%	0.01%	0.40%	0.04%	0.06%	1.44%
		PF	-	-	-	-	-	-	0.61%
		건설등	0.36%	1.28%	0.01%	0.88%	0.09%	0.10%	2.19%

(자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의 증가는 기금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기금의 보증배수를 높이고, 이로 인하여 기금의 기능인 신용보증 업무가 제약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금재산의 확충을 위하여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198]에서 금리인상, 주택경기 위축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2회계연도에도 보증잔액 증가와 금리 상승

198) 실제로, 정부는 과거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1조 4,820억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바 있음.(단, 기존의 정부출연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조 4,820억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현재 잔여 정부출연금은 없음.)

등의 영향으로 대위변제 집행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신보 계정의 대위변제 사업 지출액을 당초 2,912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23회계연도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총 3회에 걸쳐 2,883억원을 상향조정하는 등 당초 예상한 집행소요와 실제 지출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계정 및 주연보계정의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대위변제 후에도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기금재산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